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수 산 업 법 시 행 령 전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2020년 8월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추진(2022년 1월 11일 공포)하였음.

이에 따라 재정비된 「수산업법」의 변경된 조문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의 어업관리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관리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의 세부 이행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수산업법」 전부개정시 반영된 어구관리 제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어구실명제, 어구일제회수 등 “어구관리제도”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안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1) 기존 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구실명제가 법제화 됨에 따라 어구 실명제가 필요한 어업의 종류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46조)

* 기존 부령(허가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어구실명제 대상 업종과 동일하게 적용

2) 어구일제회수 제도 이행을 위해 어구 수거 해역과 수거기간 등을 지정하고, 지정시 어업인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명시(안 제47조)

3) 폐어구와 유실어구 소유자의 부담을 어구의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로 한정하고,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부담액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48조)

4) 폐어구의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을 폐어구 수거 처리, 재활용, 수매 사업으로 지정(안 제49조)

5) 어구 실태조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과 수협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받은 기관에서 업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업무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50조)

나.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이행절차 마련(안 제51조)

1) 어획한도량 준수, 위치발신장치 작동 등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단체가 준수해야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 기존 부령(허가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어구실명제 대상 업종과 동일하게 적용

다. 어획량 규제를 기반으로한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추진(안 제52조)

1) 수산업법 전부개정 내용 중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지자체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 자율적 어업자원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과 총허용어획량 수립 등

라.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과 민원처리 결과를 반영(안 제26조)

1) 나잠어업은 수산업법에서 규정하는 관리선과 허가어선만 사용가능하며, 맨손어업은 보트나 어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

2)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도구의 개발·변형시, 지자체 자율로 사용 도구와 조업시기를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개발계획기본지침을 작성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하고, 시·도지사는 개발계획 수립연도 1월 31일까지 개발계획세부지침을 작성해서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계획수립관청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계획수립관청의 장은 관할 수면(水面)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 그 결과를 계획수립관청의 장에게 보내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계획수립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해당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수면에 대하여 다시 어업면허를 하려는 경우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 계획수립관청의 장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이나 협의를 요청해야 하고,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면의 개발에 대한 의견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⑥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체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수면을 추가로 개발하려는 경우
2. 어업분쟁의 해소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⑦ 계획수립관청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해당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법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하는 협의요청서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으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인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공동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대표자를 덧붙여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나 신고서에 덧붙여 적은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일, 허가일 또는

신고수리일 전까지 대표자 선정신고서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서에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청하거나 신고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 어업의 면허일·허가일 또는 신고수리일 전까지 지분 변경신고서에 신청인의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2장 면허어업

제5조(면허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한다)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한다)

4.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5.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95조에 따른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어업면허를 할 수면별로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적격성 및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1인이면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우선순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을 통지서에 적어 그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제3항의 제출기간에 해당 어장구역마다 어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어업면허를 해야 한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최초

동의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가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한다.

제6조(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정치망어업: 10헥타르 이상의 구획된 수면에 낙망류(落網類), 승망류, 죽방렴,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定置性) 어구(이하 이 조에서 “정치성 어구”라 한다) 등을 설치해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해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소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해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제7조(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어업의 면허를 하려면 어업조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장의 수심 한계 안의 수면을 실측하여 구획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의 수심 한계 안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먼 거리에 위치한 외딴섬 또는 무인도와 서로 맞닿은 수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마을어업의 면허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의 기준) ①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0헥타르를 말한다. 다만, 어촌계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거나 어업조정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어장 면적의 범위에서 어업별·품종별로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 면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어장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어장 면적을 포함하고, 개인 어업권의 어장 면적은 면허신청인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취득한 어장 면적과 그 면허신청인이 이미

취득한 어장 면적에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어장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면허의 금지 요청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어업면허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법 제11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금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어업면허의 금지기간
3.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사유 등 어업면허 금지의 요청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요청받은 사항에 관해서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해당 수면에 대한 어업면허를 금지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어업면허를 금지하는 수면의 위치와 어업면허의 금지기간 등을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의 어업면허 금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일부의 어업권이 취소되고, 어업면허 금지기간 중에 그 취소된 어업권 외의 다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수면에서 새로 그 다른 어업권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수산기술자)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어업생산관리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수산양식기능사 또는 어로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직 공무원이나 수산 분야 연구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수산계열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수산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술교육을 마친 사람

제11조(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단축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으로 고시된 수면의 경우
2.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산란·성

육(成育) 등 수산자원의 번식을 보호하고 수산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공고한 보호수면의 경우

제12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20조 본문에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그 성명 또는 주소
2. 어업권의 공유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그 대표자
3. 선박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선박명칭

제13조(어업권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어업권의 공유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려는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시설방법
3. 공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기간 및 방법

제14조(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

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어장의 관리 효율성과 어장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어선 중 마을어장형망선 또는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마을어장형망선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해야 하며, 자원관리채취선은 이미 마을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과 그 어선을 대체하는 마을어장의 관리선으로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제15조(어업의 시작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정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법 제34조제6호(법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 어업면허

의 취소를 요청하는 사유와 범위

2.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및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3. 해당 조치가 필요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 해당 조치가 어업에 미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어업권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청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어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의 결정기준과 이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방의 필요에 의한 어업제한 등의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군사훈련,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상이나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경우

2. 해상이나 해안에 위치한 주요 군사기지를 보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안에서 적의 침투를 막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어선의 피랍 방지 등 어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략적 및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경우

제18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거나, 면허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면허사항 또는 처분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으로서 지구별수협이 그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중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자로서 그 어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3.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외의 조합원이 해당 어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거나 어업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구별수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제20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법 제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을 위

반해 입어의 자격, 어업권 행사의 자격, 어업권 취득의 자격 또는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사람

2. 법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어장에 대하여 입어 또는 어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사람
3. 법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21조(근해어업의 종류)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底引網)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을 포획하는 어업
3.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해서 수산동물(멸치는 제외

한다)을 포획하는 어업

6. 대형트롤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 그물을 펼치기 위해 그물의 양 옆줄에 하나씩 달려 있는 방패모양의 판을 말한다)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동해구중형트롤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대형선망어업: 총톤수 50톤 이상인 1척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소형선망어업: 총톤수 30톤 미만인 1척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근해채낚기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1. 근해자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2. 근해안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의 힘으로 어군(漁群)이 자루그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강제 함정어구를 말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3. 근해봉수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봉수망(棒受網)·초망 또는 들망(자리돔들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

업

14. 근해자리돔들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자리돔들망을 사용하여 자리돔을 포획하는 어업
15. 근해장어통발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장어통발을 사용해서 장어류를 포획하는 어업
16. 근해문어단지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문어류를 포획하는 어업
17. 근해통발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통발(장어통발과 문어단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8. 근해연승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9. 근해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20. 기선권현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
21. 잠수기어업: 1척의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제22조(연안어업의 종류)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개량안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류 어망(주목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연안선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연안통발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연안조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젓새우를 제외한다)를 포획하는 어업

5. 연안선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도만 해당한다)

6. 연안자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연안들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연안복합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업

가. 낚시어업: 주낙·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나. 문어단지어업: 문어단지를 사용해서 문어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도는 제외한다)

다. 손꽂치어업: 손으로 꽂치를 포획하는 어업

라. 패류껍질어업: 소라·피뿔고둥 등 패류껍질, 토기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패류 껍질 모양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마. 패류미끼망어업: 그물로 만든 주머니에 미끼를 넣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의 목포시·영광군·함평군·무안군·신안군의 해안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제23조(구획어업의 종류) ① 법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간망어업: 건간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건망어업: 건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들망어업: 들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선인망어업: 선인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승망류어업: 호망·승망·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장망류어업: 주목망·장망·낭장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지인망어업: 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해선망어업: 해선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새우조망어업: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

를 포획하는 어업

11.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

12. 패류형망어업: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제24조(혼획이 허용되는 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混獲)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4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획량”이란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제25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4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제26조(신고어업)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잠어업(裸潛漁業): 법 제27조제1항 및 제40조에 따른 어선 또는 도보로 이동하여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낚·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2. 맨손어업: 도보로 이동하면서 손으로 낚·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② 법 제4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한 조업수역이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6조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이나 조업의 허용 또는 제한을 말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업신고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

⑤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도구, 조업시기와 조업구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7조(준용규정) ①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해서는 이 영 제9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해서는 이 영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장 어획물운반업

제28조(어획물운반업의 등록)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야 한다.

1.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신청인과 등록하려는 어선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인과 등록하려는 어선이 법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 제5항(법 제34조제1호·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장 어업조정 등

제29조(위생관리기준의 설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밑바닥 퇴적물(저질) 등 어장 환경과 수산동식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0조(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행정관청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9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수역이나 수산동식물로서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제한·금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하는 경우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제한·금지를 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종류, 제한·금지의 기간 및 수역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31조(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및 국제법규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제한이나 금지를 할 수 있다.

1. 특정해역에서의 조업의 제한이나 금지
2. 어종별 총어획량과 어획시기의 제한이나 금지
3.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 양륙(선박의 수산물 및 화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옮겨 싣는 것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4. 외국의 관할 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의 조업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5.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어업자에 대한 어업의 제한이나 금지
6. 민간차원의 어업에 관한 협력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제32조(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 품목별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
2. 제1호 외의 포장 또는 용기 사용의 제한
3.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에 관한 검사
4. 포장 및 용기의 사용 및 판매에 관한 제한

제33조(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개설된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일부를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명칭 및 관리자
2.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소재지, 규모 및 시설 명세

제34조(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양륙실적 또는 매매실적이 없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5조(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 ① 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등에 따라 특정어업이 금지되어 그 특정어업에 종사하던 자를 다른 어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2. 외국의 관할 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입어가 허용되는 경우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납북자로서 어선과 함께 납북된 후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하여 그 납북자가 허가받은 근해어업이 폐업된 경우로서 그 납북자가 납북된 날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다른 남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남북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간에 합의하여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종전의 폐업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이하 “특수임무유공자”라 한다)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간에 합의하여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았었던 종전의 폐업된 근해어업과 같은 종류의 근해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 특수임무유공자가 어선을 사용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던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을 것
나. 가목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가 사용한 어선이 폐선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할 것

다.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은 근해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라. 특수임무유공자가 가목에 따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등과 어업조정(어선감척 등 어업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해 필요하거나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해어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6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조업수역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조정요청 사유서
2. 해당 수면의 위치와 조정구역도
3. 해당 수면의 어업실태조사서
4.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관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의 사이 또는 관계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와의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업수역의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치고, 시·도지사는 같은 조에 따른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37조(어선의 선복량 제한)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부속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선복량의

한계는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개조하거나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이미 허가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별표 6에 따른 선복량의 한계(이하 “선복량의 한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복량보다 개조 또는 대체하는 어선의 선복량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어선의 개조 또는 대체로 증가하는 선복량만큼 같은 종류의 어업 허가를 받은 다른 어선을 폐선하는 경우
2.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두 척 이상의 같은 종류의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을 다른 어선으로 개조하거나 대체하여 그 선복량의 합계가 이미 허가 받은 어선의 선복량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존 어선의 선복량 합계를 초과하는 선복량만큼 같은 종류의 어업 허가를 받은 다른 어선을 폐선하는 경우
3.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잠수기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늘리는 경우
4.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총톤수 3톤 미만의 어선을 총톤수 3톤까지 선복량을 늘리거나 이미 같은 종류의 어업 허가를 받은 총톤수 3톤

이내의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5.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 중 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늘리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어선이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패류형망어업 외의 다른 어업은 폐업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어선을 건조하여 대체하는 경우 어선의 선복량 증가 판정에 대해서는 「어선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오차허용범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오차허용범위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어선의 선복량은 선복량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③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 규격의 제한은 별표 8과 같다.

④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주체가 그 어업의 종류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 등”이라 한다)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2. 시·도지사는 법 제40조 제2항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제39조(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자 등에 대한 어구의 규모등 제한) ①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를 따로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내용
2. 제1호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에 대한 제한의 적용을 받는 어업자 또
는 어업인의 명단과 해당 어선의 명칭
3. 제2호에 따른 어업자 또는 어업인과 해당 어선이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1호에 따른 어구의 규
모등에 대한 제한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내용
4. 그 밖에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적용과 관련해 수
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명단이 고시된 어업자 또는 어업
인과 해당 어선이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어업자 또는 어업인의 명단과 해당 어선의 명칭을 고시해

야 한다.

제40조(어구의 규모 등의 확인기관)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국립수산물과학원을 말한다.

제41조(유어장의 지정 등)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을 말한다.

제42조(표지의 설치)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어장 등의 표지 설치 명령을 받은 어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장의 기점, 어장구역 및 어선·어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 중 어장의 기점 및 어장구역에 관한 표지의 규격·형태·설치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어선 및 어구에 관한 표지의 규격·형태·설치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수산업자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행정관청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어업인, 어획물운반업자, 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어업인, 어획물운반업자, 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 대한 교육
2. 수산시설물, 어획물운반업시설물 및 수산물가공업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지도(指導)
3. 수산물의 유통체계에 대한 지도

4. 어선의 해상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유지
5. 고용조건 개선에 대한 지도
6. 수산계열 학교의 교사 및 학생의 실습을 위한 승선 등의 협조
7. 수산에 관한 해외취업 및 해외훈련의 조정·지도
8. 해외어장 개발에 대한 지도
9. 외국으로부터 해외수역 입어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인에 대한 조정·지도

제44조(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어업감독 공무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호를 받은 사람은 즉시 어선을 정선(停船)시켜야 하고,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에 의한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즉시 따라야 한다.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계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 뱃고동 또는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에 사용되는 선박에는 다른 어선이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거나 깃발을 달아야 한다.
- ③ 제1항에서 “장음” 또는 “장광”이란 3초 동안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 동안 소리를 울리거나

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표지·깃발의 종류·형태 및 그 설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①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2.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제46조(어구실명제 대상 어업인)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어구실명 대상 어업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1조에서 정하는 근해어업 중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을 경영하는 자
2. 영 제22조에서 정하는 연안어업 중 연안자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통발어업을 경영하는 자
3. 영 제23조에서 정하는 구획어업 중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자

제47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지정 등) ①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75조에 따른 어구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어구 수거의 필요성이 강한 해역
2. 해당 해역의 어업·양식업 실태, 어획·양식생산 시기 등 지역 어업·양식업 활동에 영향이 적은 시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구 수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구 수거 대상 해역의 어구가 동시에 수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어구 수역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지정하여 공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어구 수거 해역 지정 사유
2. 어구 수거 해역 지정 기간
3. 어구 수거 해역의 범위 및 면적
4. 어구 수거 해가 실시되는 해역 현황(어업 종류, 어장면적, 어업 허가·면허 번호, 어업 허가·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 등)
5. 어구 수거 기간 중에 어업·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가 처리해야 할 사항

제48조(폐어구 및 유실어구 소유자 부담) ①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 소유자 부담은 해당 어구의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부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어구인 경우 해당 폐어구의 수거·처리·보관 비용의 전부
2. 유실어구인 경우 해당 유실어구의 수거·처리·보관 비용의 일부

② 전쟁 등 불가항력 또는 제3자의 고의만으로 폐어구 및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을 소유자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제49조(폐어구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 법 제80조에 따른 폐어구의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어구 수거사업
2. 폐어구 수매사업

제50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이사장 또는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어구집하장 등의 설치 또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폐어구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 등의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이사장,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 및 해당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항을 처리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및 한국어촌어

항공단 이사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처리 결과를 위임 또는 위탁 기관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51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참여 요건) ①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어업의 종류 또는 지역을 단위로 하는 공동체일 것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할 것
3.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것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할 것
5. 그 밖에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구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법 제8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체중을 말한다.

제52조(시·도의 연안자원관리)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자원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서 정한 총허용어획량 설정대상 어종이 아닌 어종에 대한 지역어획량의 설정·준수
3. 국립수산과학원 자원평가결과 미흡 시 지자체 부담을 상향조정한 어선·어구 감척의 시행 등

제8장 보상·보조 및 재결

제53조(보상의 청구)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면허·허가·신고 번호 또는 법 제 69조제2항에 따라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2. 처분사항과 그 날짜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조사·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서를 해당 보상신청인과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수익자에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요청했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한 자가 포함된다.

제54조(보상금액 등의 결정과 통지) ① 행정관청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법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액과 부담금액(수익자가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손실액의 산출을 위해 용역조사를 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별표 10에 따라 조사하는 기간은 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과 부담금액을 결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상신청인, 수익자 및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어업의 표시
3. 처분일
4. 보상금액 또는 부담금액

제55조(보상금의 지급 등) ① 제5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은 그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행정관청(다른 행정관청이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요청한 행정관청을 말한다)이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하되, 보상을 받을 자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을 신청한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시설물 등에 대한 보상을 신청받은 행정관청은 그 시설물 등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移轉)이 끝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10분의 30의 범위에서 보상금의 지급을 미룰 수 있다.

⑤ 시설물 등을 인도 또는 이전받은 수익자가 그 시설물 등을 해체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행정관청에 그 해체 또는 폐기를 대행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대행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행정관청이 시설물 등의 해체 또는 폐기를 대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시설물 등의 해체 또는 폐기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제56조(손실액의 산출) 법 제88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은 별표 10과 같다.

제57조(재결신청) ① 법 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라 입어 또는 어장구역

등에 대한 재결(裁決)을 받으려는 자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항에 따른 협의서 사본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협의서 사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이 협의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8조(재결)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같은 조 제3항의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결을 하면 신청인에게는 재결서를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재결서 등본을 보내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보조 대상사업) 법 제93조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2. 수산경영 지원사업
3. 수산단체의 육성
4. 수산물 처리·가공·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5. 수산종자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량사업
6. 어선 및 어구의 개량·도입 및 보급
7. 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
8.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 지원사업
9. 어장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10. 어항시설사업
11. 연안자원 조성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관리사업
12. 정부 간 어업협정에 따른 민간어업협력사업
13.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
14.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이용하기 위한 사업
1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16.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관리사업
17. 수산정보화사업

제9장 수산조정위원회

제60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또는 집행간부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3.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지역어업인 중 시·도지사가 해당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하는 사람 11명 이내

② 시·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위원 중에서 위원이 호선(互選)으로 선출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시·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물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전문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1명
2. 후계어업경영인 대표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3.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

는 사람 2명

4.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6명
5.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장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다만, 시·도지사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과 위원에서 선출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군·구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및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어업인을 대표하는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2. 국립수산물과학원 소속 관계 공무원 중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후계어업경영인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어촌계장 중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5. 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6.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제1항제2호·제3호,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과 1명 이상의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해양수산부,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지명한다.

⑥ 각 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1조(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에 중앙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합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도에 지역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지역합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중앙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 관련 업무담당 이사 또는 집행간부 1명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명
3.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 중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④ 지역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7명
2.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이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어업조정이 끝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⑥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에 간사 1명과 1명 이상의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각각 지명한다.

제62조(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97조제5항에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이하 “어업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구역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1. 동해어업관리단의 관할 구역: 동해어업조정위원회
2. 서해어업관리단의 관할 구역: 서해어업조정위원회
3. 남해어업관리단의 관할 구역: 남해어업조정위원회

②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및 남해어업조정위원회는 각각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동해어업관리단장과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서해어업관리단장과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남해어업관리단장과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⑥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및 남해어업조정위원회

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양수산부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국립수산물과학원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관계 시·도에서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6명 이내
4. 어업과 관련된 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어업·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3명 이내

⑦ 제6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및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업조정위원회별로 각각 간사 1명과 1명 이상의 서기를 둔다.

1.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동해어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2.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서해어업조정위원회 공동위원

장이 지명하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3.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남해어업조정위원회 공동위원

장이 지명하는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제63조(위원장의 직무) ①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시·군·구위원회, 중앙합동위원회, 지역합동위원회 및 어업조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회의)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상황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6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등에 관한 심의(이하 “조정 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전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전과 관련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5.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전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 각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각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해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전의 조정 등을 회피할 수 있다.

제66조(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각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7조(위원의 추천 철회 등)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 따라 위원을 추천,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또는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조정 등과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조정 등과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제공받아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조정 등을 하려는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 어느 한쪽에 편파적이거나 조정등을 방해하는 등 공정성 및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본인이 추천·지명의 철회 또는 해촉을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조정 등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8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69조(서류 송달의 공시) 법 제98조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은 관보로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 한다.

제7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제21조제6호에 따른 대형트롤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
2. 제2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 자가 어장구역을 초과하여 어구를 설치한 경우
3. 제2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
 4. 제35조에 따른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5. 제39조제2항에 따른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구역 및 기간을 위반한 경우
 6.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제1호·제3호나목의 2) 및 제4호사목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8.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 금지구역을 위반해 조업한 경우
 9.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어선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10. 같은 위반행위로 그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행정처분(어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11. 같은 위반행위로 그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60일 이상의 행정처분(어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 제7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행정관청이 제70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제72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수납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관청에 알려야 한다.

제72조(과징금의 수납기관)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수산업협동조합,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으로 한다.

제73조(과징금의 용도) ① 행정관청은 법 제99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건조·수리
2.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지도·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지도·단속·수사담당공무원의 지도·단속 근무수당 및 수사비
4.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경비
5. 불법어업지도·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6.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몰수한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의 관리 및 처리 비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관청은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

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비율에 따른다.

1. 제1항제3호의 수당 및 수사비: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2. 제1항제5호의 보조금 중 다른 행정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30

제74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0조에 따라 포상(褒賞)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휴업신고,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 및 어업허가의 취소

3. 법 제103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② 시·도지사는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휴업신고,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 및 어업허가의 취소
 3. 법 제103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처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7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공동신청 또는 공동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부여 및 연장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사무(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에 관한 사무(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무(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법 제33조에 따른 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면허의 제한 등에 관한 사무(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 법 제3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무(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에 관한 사무(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4. 법 제45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15. 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한 사무
16.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사무
17. 법 제52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사무
18. 법 제68조에 따른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에 관한 사무

19. 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무
20. 법 제88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무
21. 법 제91조에 따른 입어에 관한 재결에 관한 사무
22. 법 제92조에 따른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한 재결에 관한 사무
23. 법 제100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제77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법 제10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말한다.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79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 및 별표 4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자격기준 및 등록기준 등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제14조제2항 관련)

어업별	지역별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마을어업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마을어장형망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형망선, 자원관리채취선 또는 형망어업·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비고

1. 마을어장형망선: 형망을 이용하는 동력어선을 말한다.
2. 자원관리채취선: 잠수기를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관련)

I. 일반사항

1. "어구"(漁具)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데에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2. "어법"(漁法)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데에 사용되는 수단과 방법을 말하며, 탐어(探魚)와 집어(集魚) 및 어획의 과정을 포함한다.
3. "어구 겨냥도"란 어구의 모양이나 배치를 알기 쉽게 그린 그림을 말한다.
4. "표준어구 구성도"란 어구를 제작하기 위해 그린 기본적인 도면을 말한다.
5. "조업모식도"란 조업하는 방법을 정리·배열한 그림을 말한다.
6. "뜸" 또는 "부자"(浮子)란 물속에서 어구를 뜨게 하거나 그 형상을 유지시키기 위해 어구에 부착하는 물건을 말하며, 어구에 포함된다.
7. "발돌" 또는 "침자"(沈子)란 물속에서 어구를 가라앉게 하거나 그 형상을 유지시키기 위해 어구에 부착하는 물건을 말하며, 어구에 포함된다.
8. "투망"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해서 주로 그물로 된 어구를 어선에서 물속에 투하하는 것을 말하고, "투승"이란 낚시나 줄을 투망하는 것을 말한다.
9. "예망"(曳網)이란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이 끌고 가는 것을 말한다.
10. "양망"(揚網)이란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 위로 끌어 올리는 것을 말하고, "양승"이란 낚시나 줄을 양망하는 것을 말한다.
11.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운반선, 가공선, 등선(燈船), 어로보조선을 말한다.
12. "경사로"란 저인망 조업에서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선미(船尾) 측을 경사지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

II.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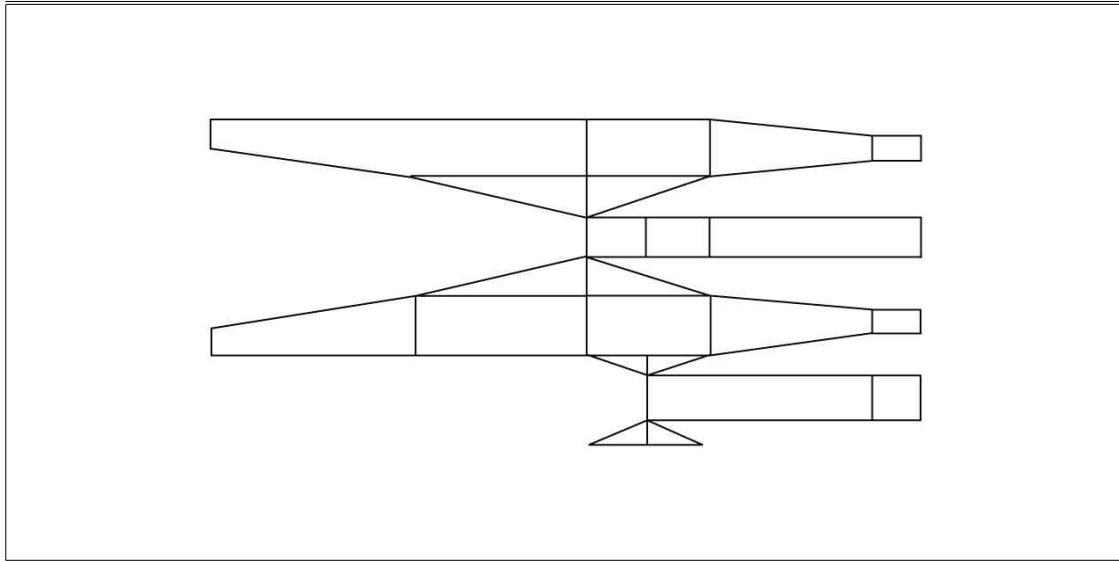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1 및 부도 1-2와 같다.

-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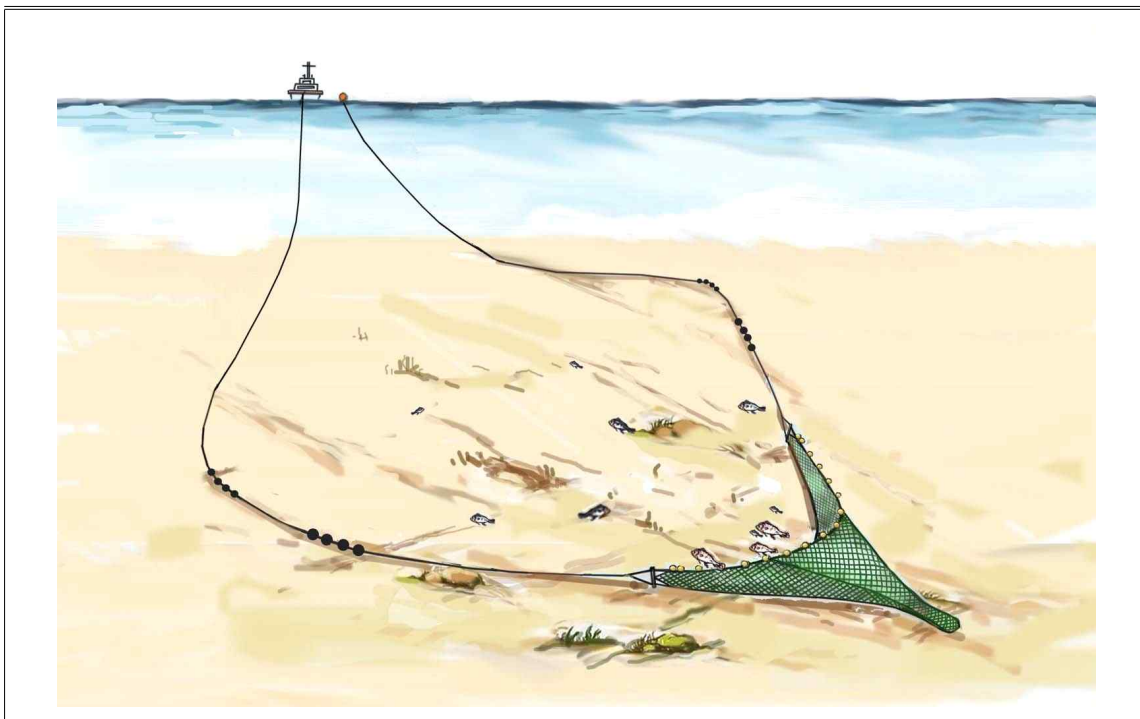
[부도 1-2]

외끌이대형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1-3]

외끌이대형저인망 조업모식도



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2-1 및 부도 2-2와 같다.

-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2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2-3과 같다.

- 1) 주선이 선미(船尾)에서 자루그물, 날개그물 순서로 투망하면 종선은 한쪽 후릿줄의 끝을 주선(主船)에 넘겨주어 날개그물 끝에 연결하도록 하고, 연결이 끝나면 주선과 종선(從船)은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전진하면서 후릿줄과 끌줄을 내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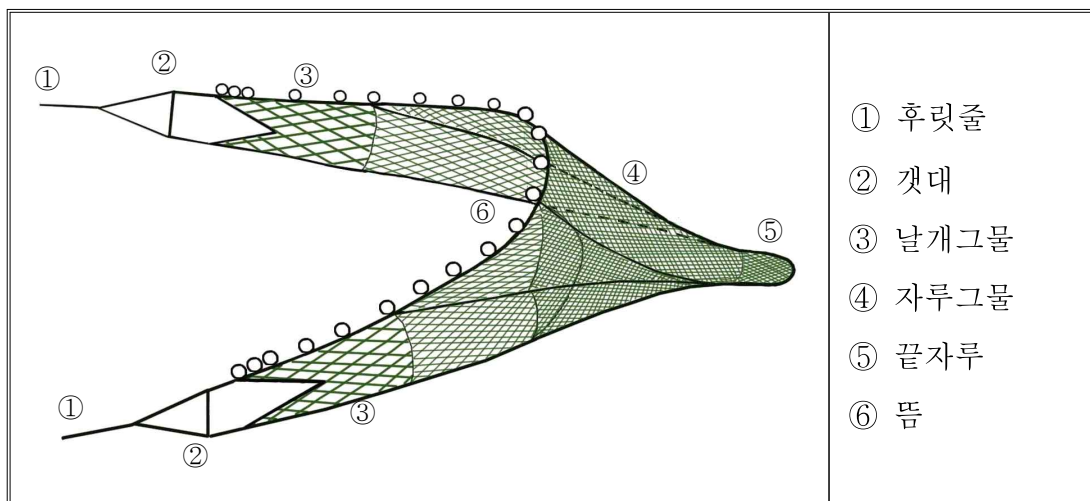
* 주선: 그물을 투망·양망 및 예망하는 그물배

* 종선: 조업 시 주선을 도와 예망하는 보조선

- 2) 투망이 완료되면 주선과 종선은 끌줄 1가닥씩을 잡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저층을 예망한다.
- 3) 예망이 완료되면 주선과 종선은 다시 접근하여 그물을 오므리고, 주선은 종선으로부터 그물의 다른 한쪽과 연결된 줄을 넘겨받아 그물을 양망한다.
- 4)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해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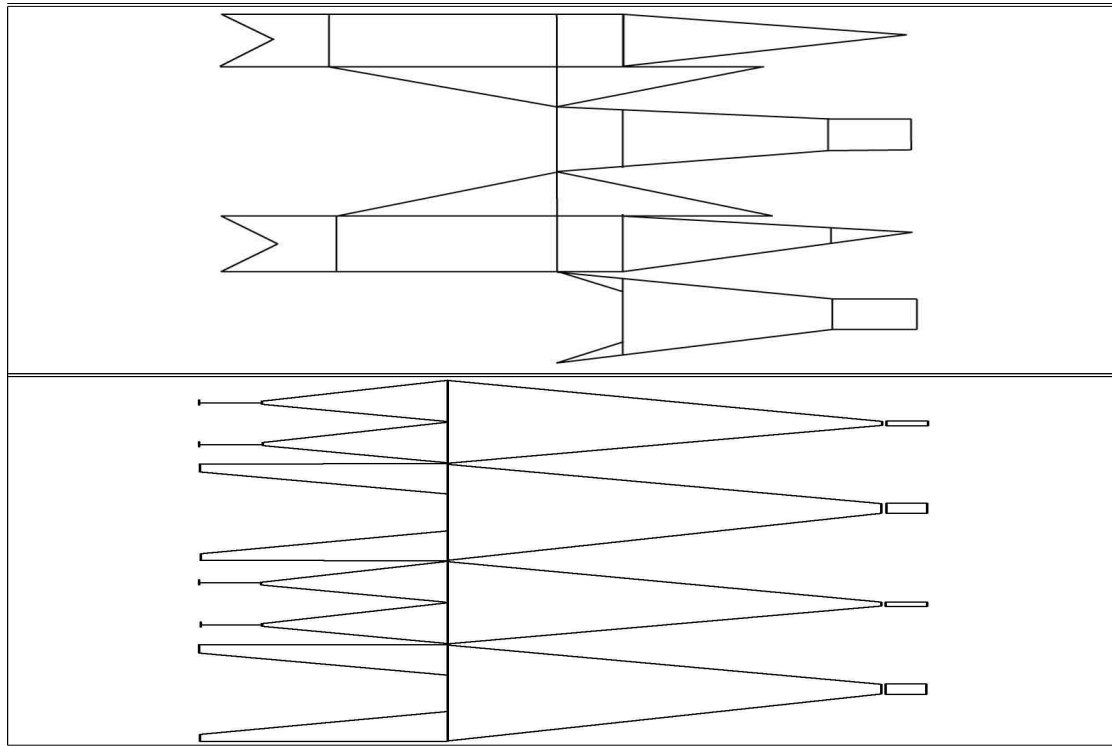
[부도 2-1]

쌍끌이대형저인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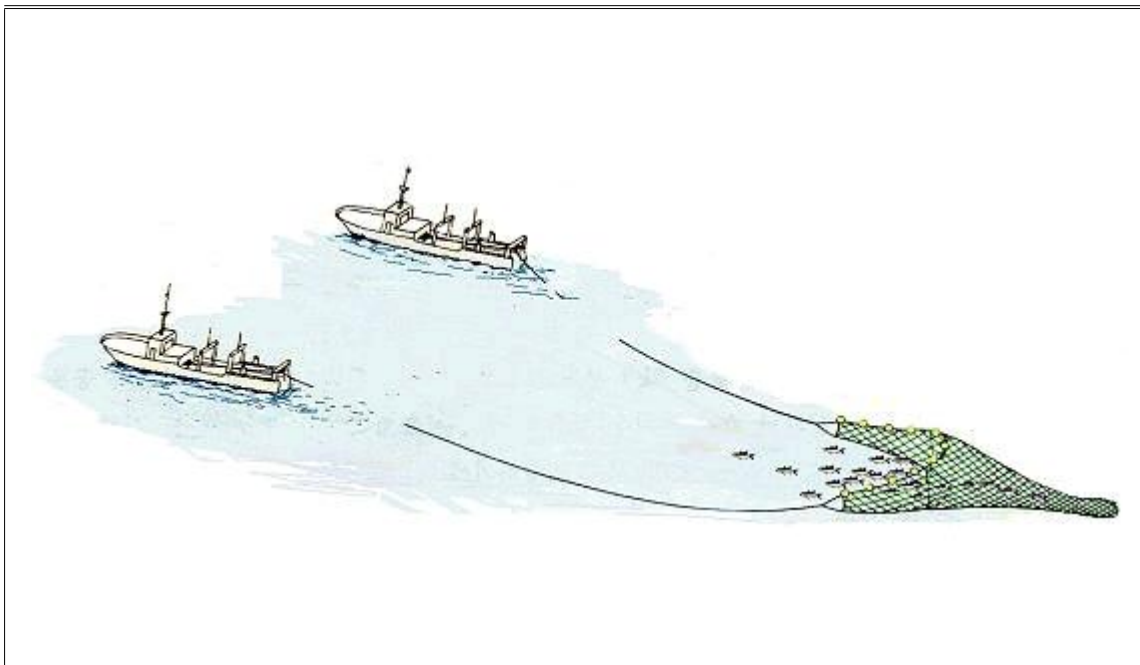
[부도 2-2]

쌍끌이대형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2-3]

쌍끌이대형저인망 조업모식도



3. 동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3-1 및 부도 3-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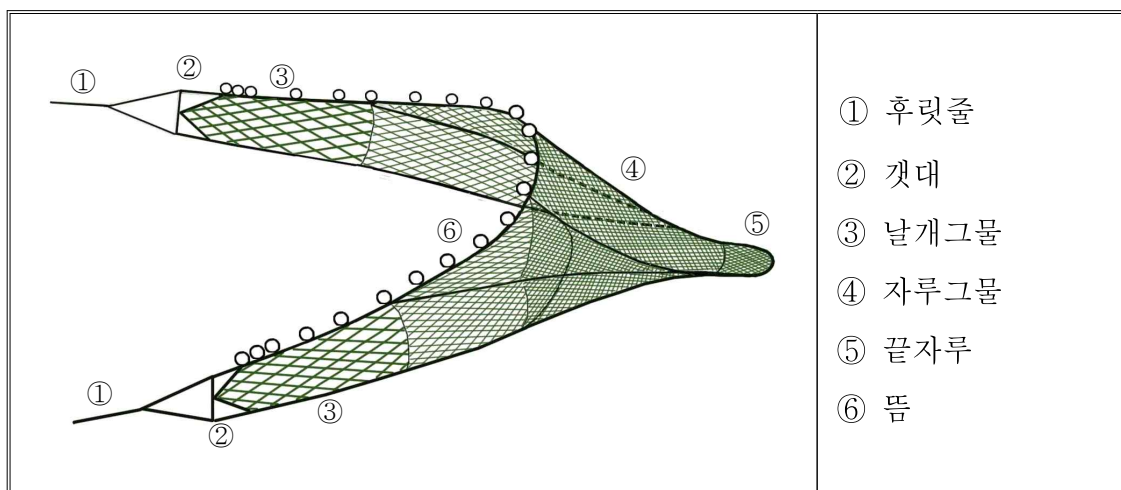
-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3-3과 같다.

- 1) 한쪽 끝줄 끝에 달린 부표를 투하한 후 이를 기점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끌줄, 후릿줄, 그물 및 다른 한쪽의 후릿줄, 끝줄 순서로 투망한 다음 부표를 인양하여 저층을 예망한다.
- 2) 예망 중 양쪽의 끝줄이 나란해지면 끌줄, 후릿줄, 그물 순서로 양망한다.
- 3)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해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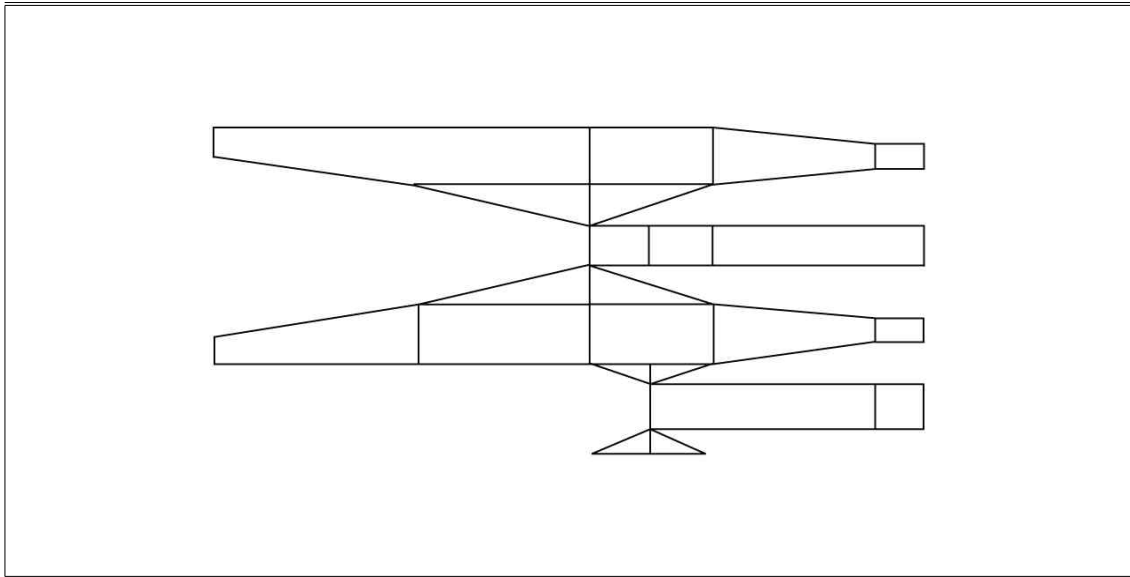
[부도 3-1]

동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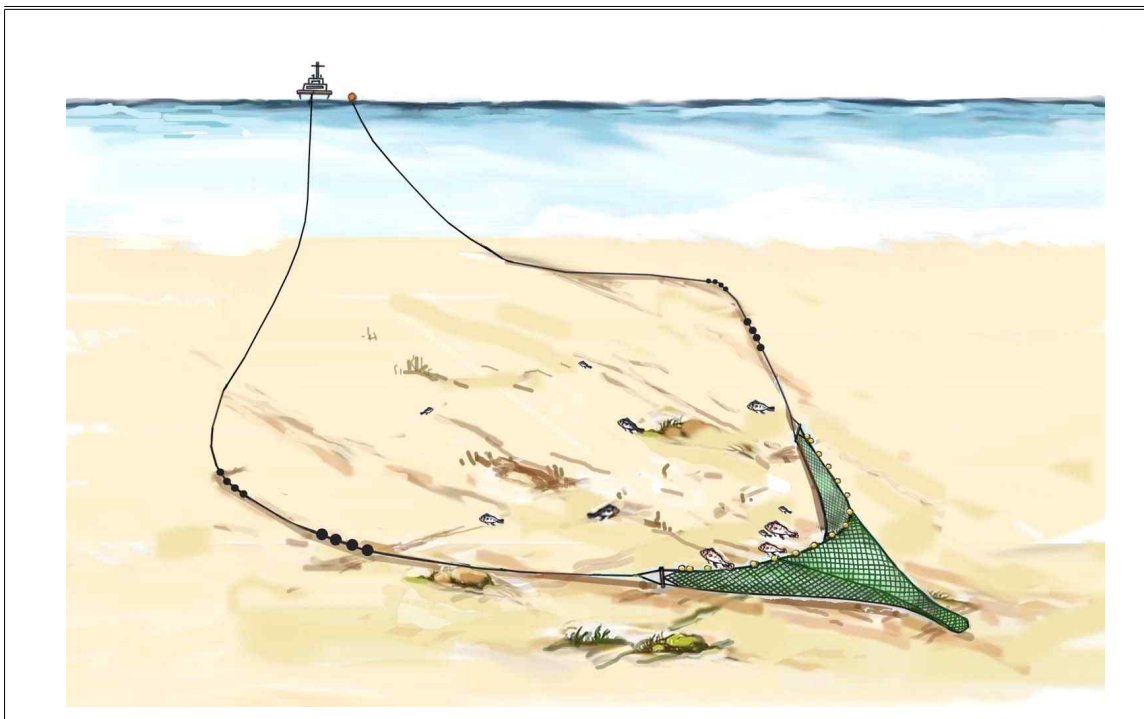
[부도 3-2]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3-3]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조업모식도



4. 서남해구의끝이중형저인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4-1 및 부도 4-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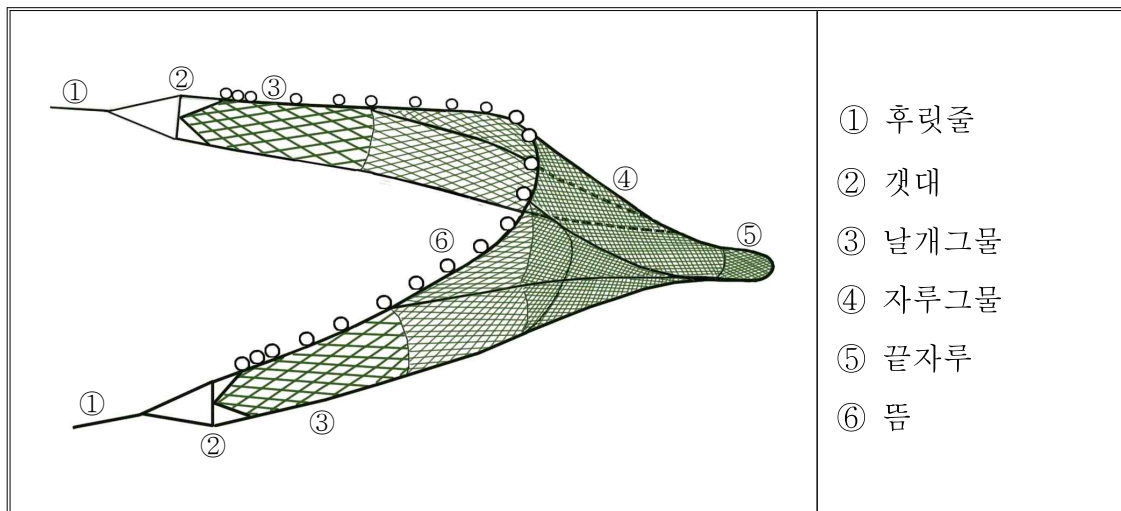
-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4-3과 같다.

- 1) 한쪽 끝줄 끝에 달린 부표를 투하한 후, 이를 기점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끌줄, 후릿줄, 그물 및 다른 한쪽의 후릿줄, 끝줄 순서로 투망한 다음 부표를 인양하여 저층을 예망한다.
- 2) 예망 중 양쪽의 끝줄이 나란해지면 끌줄, 후릿줄, 그물 순서로 양망한다.
- 3)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해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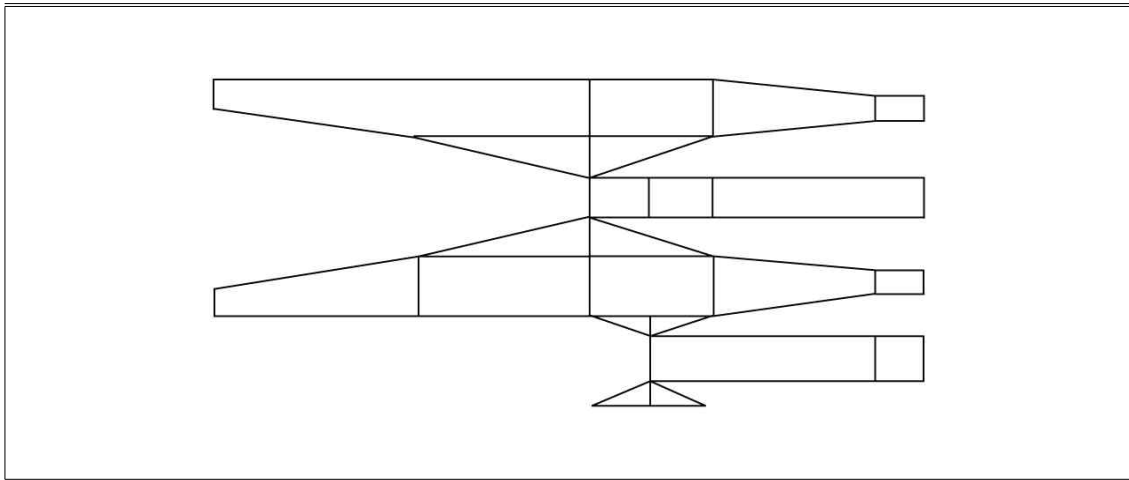
[부도 4-1]

서남해구의끝이중형저인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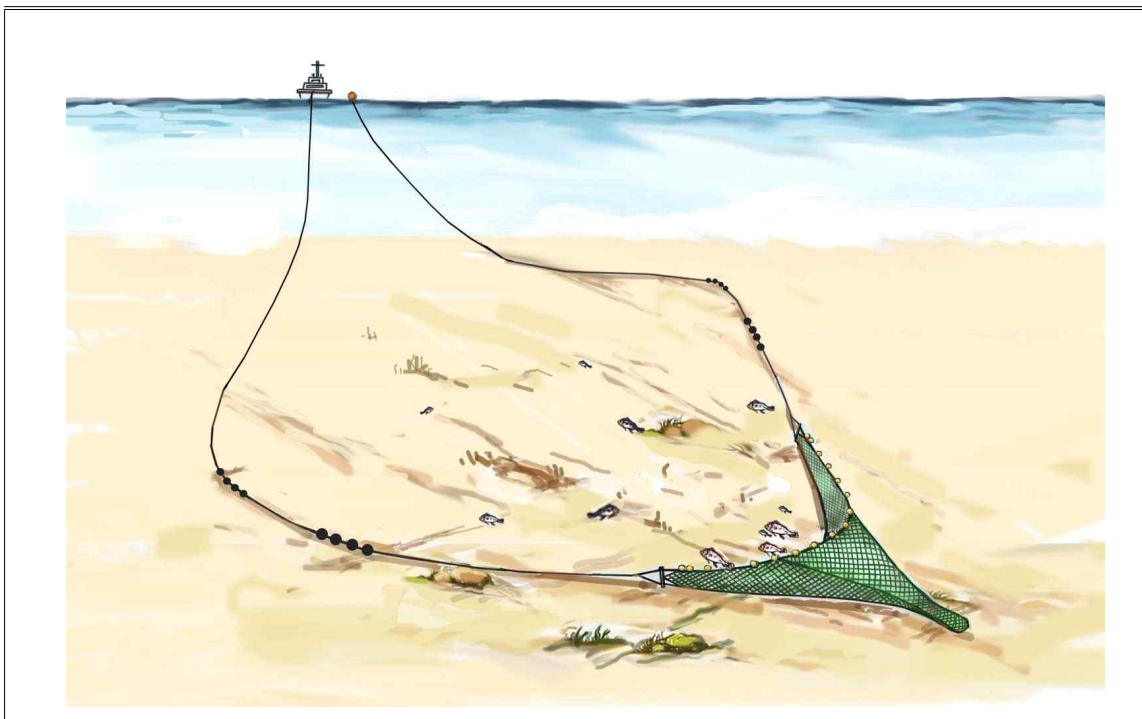
[부도 4-2]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4-3]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조업모식도



5.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5-1 및 부도 5-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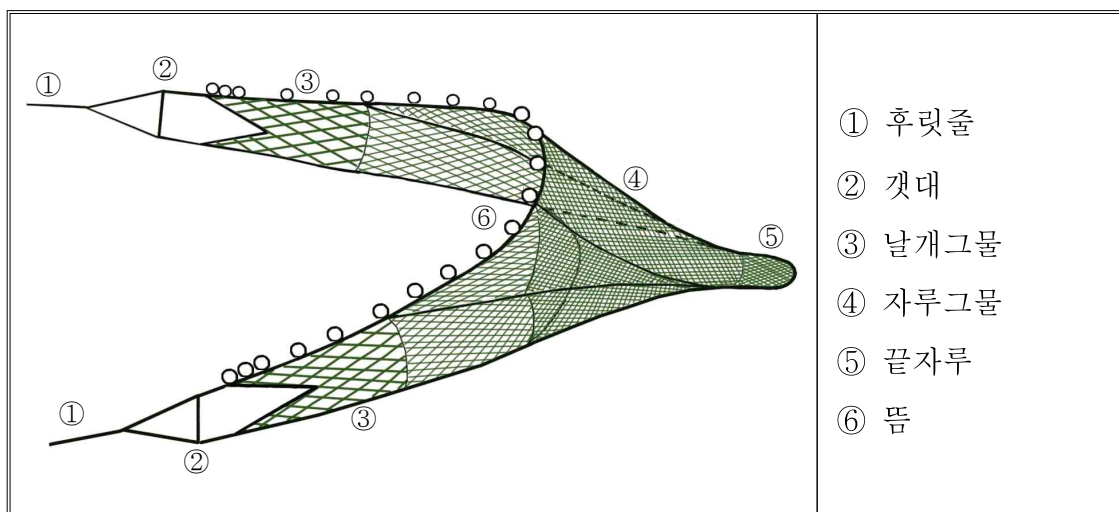
-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2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5-3과 같다.

- 1) 주선이 선미에서 자루그물, 날개그물 순서로 투망하면 종선은 한쪽 후릿줄의 끝을 주선에 넘겨주어 날개그물 끝에 연결하도록 하고, 연결이 끝나면 주선과 종선은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전진하면서 후릿줄과 끌줄을 내어 준다.
- 2) 투망이 완료되면 주선과 종선은 끌줄 1가닥씩을 잡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저층을 예망한다.
- 3) 예망이 완료되면 주선과 종선은 다시 접근하여 그물을 오므리고, 주선은 종선으로부터 그물의 다른 한쪽과 연결된 줄을 넘겨받아 그물을 양망한다.
- 4)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해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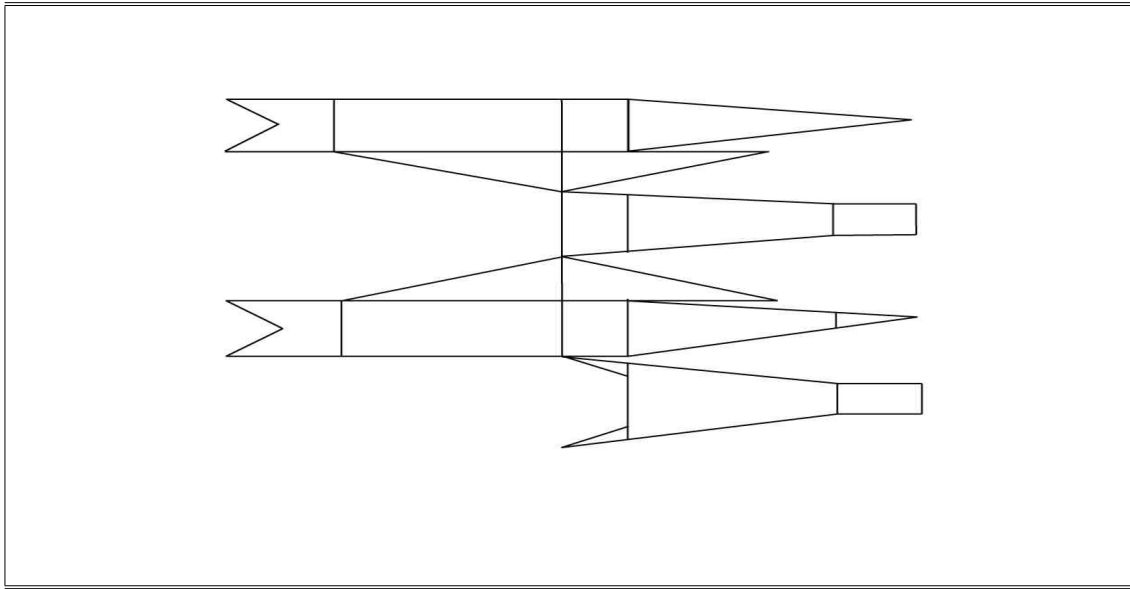
[부도 5-1]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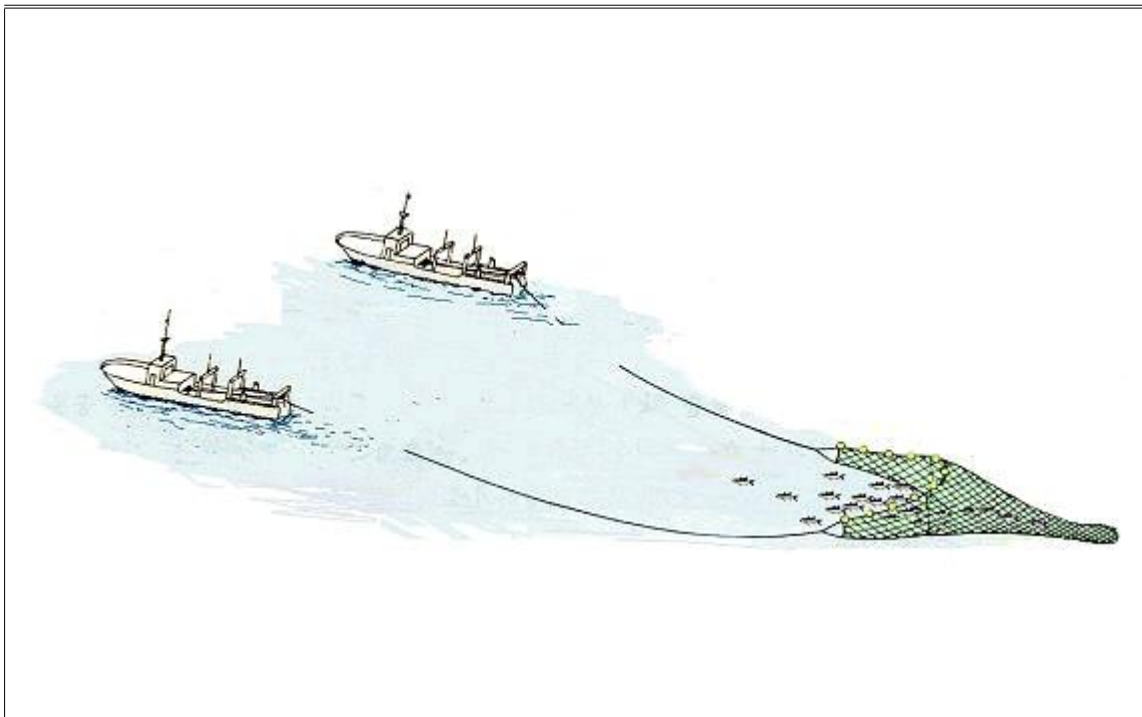
[부도 5-2]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5-3]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조업모식도



6. 대형트롤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6-1 및 부도 6-2와 같다.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다만, 날개그물은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2)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한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6-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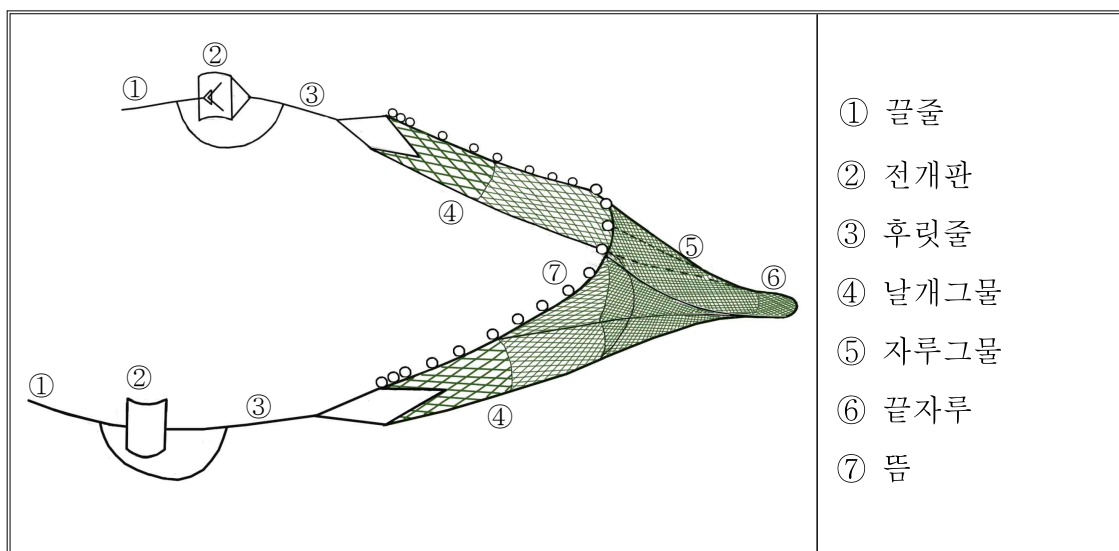
1) 자루그물과 날개그물, 후릿줄, 망구전개판, 끌줄 순서로 선미에서 투망한다.

2) 중층과 저층을 예망하며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과 전개판, 후릿줄, 날개그물, 자루그물 순서로 양망한다.

3)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해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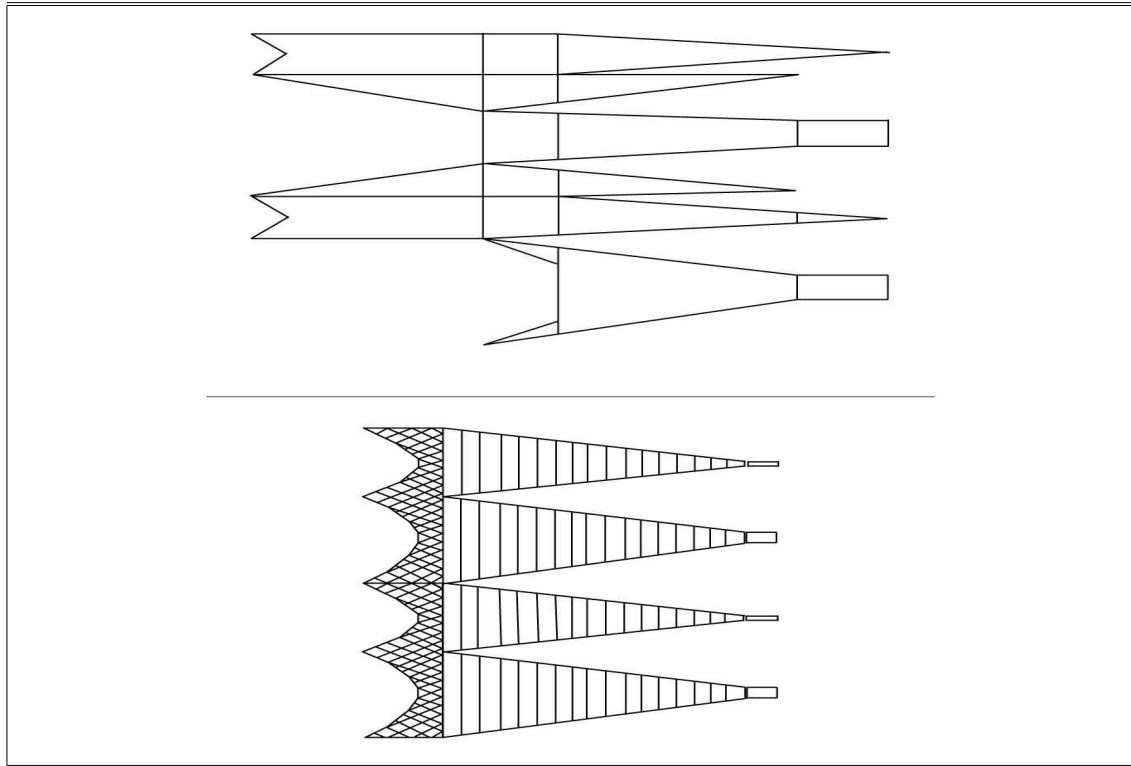
[부도 6-1]

대형트롤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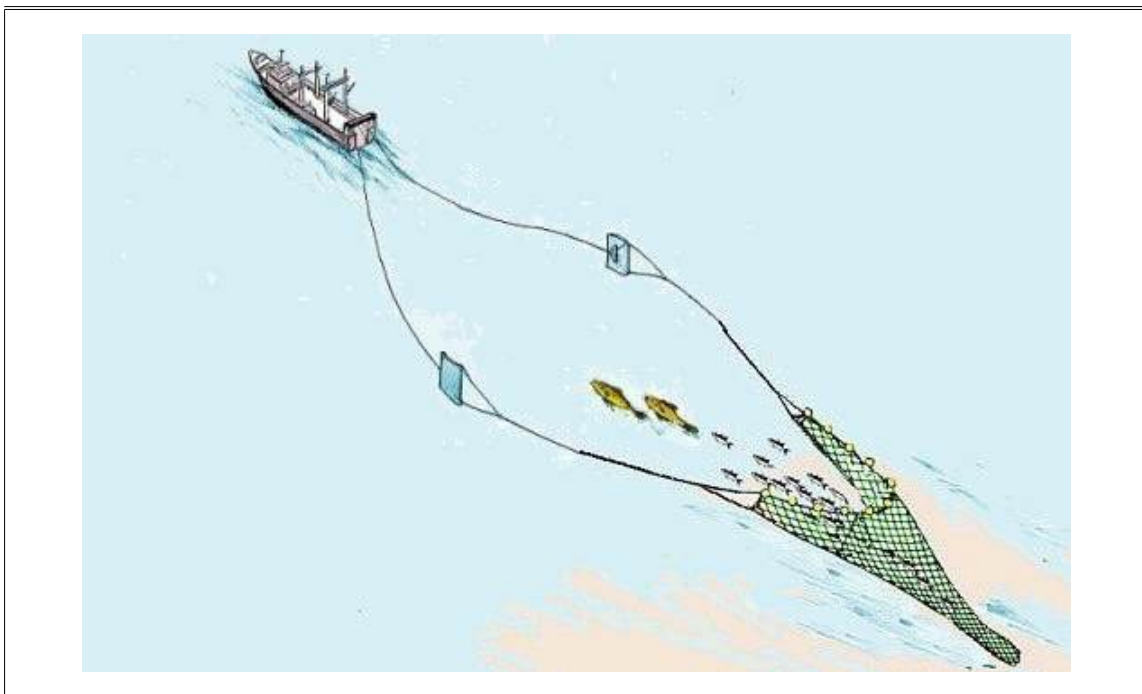
[부도 6-2]

대형트롤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6-3]

대형트롤망 조업모식도



7.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7-1 및 부도 7-2와 같다.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다만, 날개그물은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2)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한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7-3과 같다.

1) 자루그물과 날개그물, 후릿줄, 망구전개판, 끌줄 순서로 허가조건에 따라 현측(舷側)이나 선미에서 투망한다.

* 현측: 어선의 옆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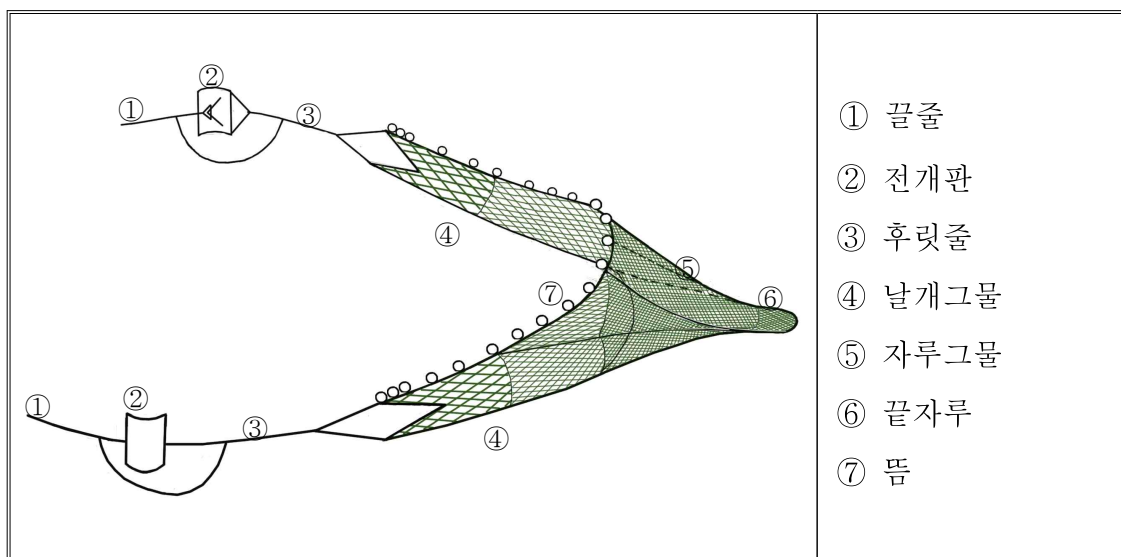
2) 중층과 저층을 예망하며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과 망구전개판, 후릿줄, 날개그물, 자루그물 순서로 양망한다.

3) 어구를 현측에서 투망·양망하는 현측식과 선미에서 투망·양망하는 선미식으로 구분한다.

4)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해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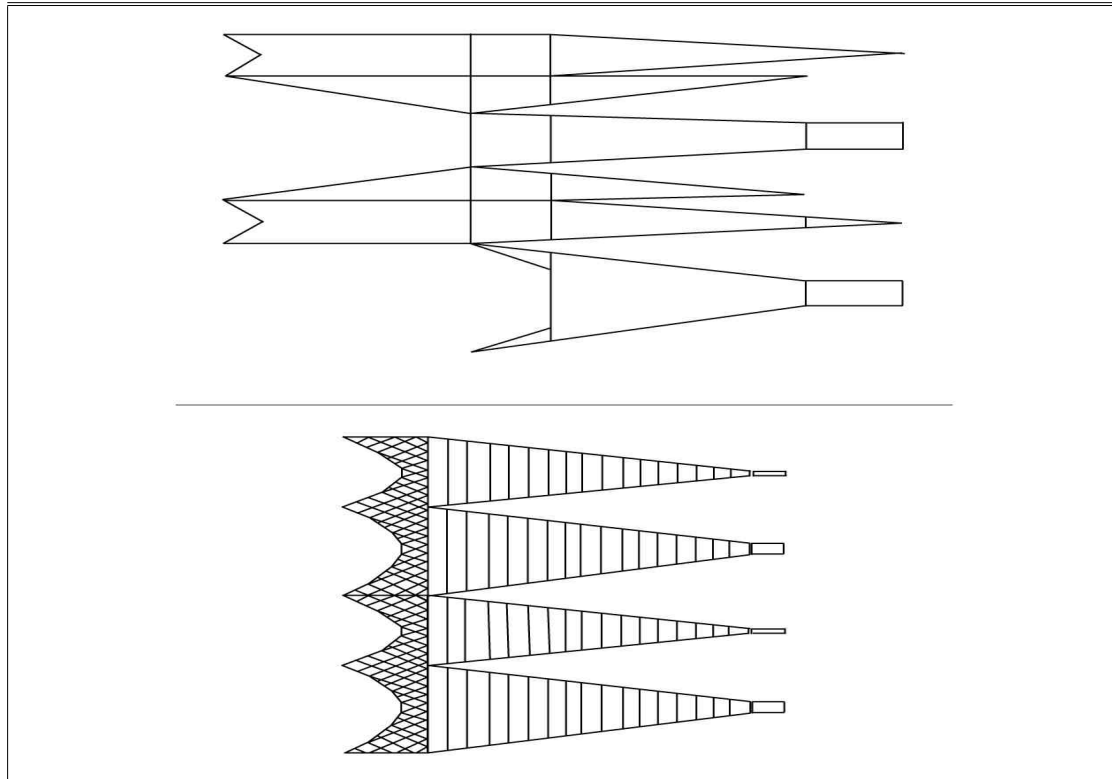
[부도 7-1]

동해구중형트롤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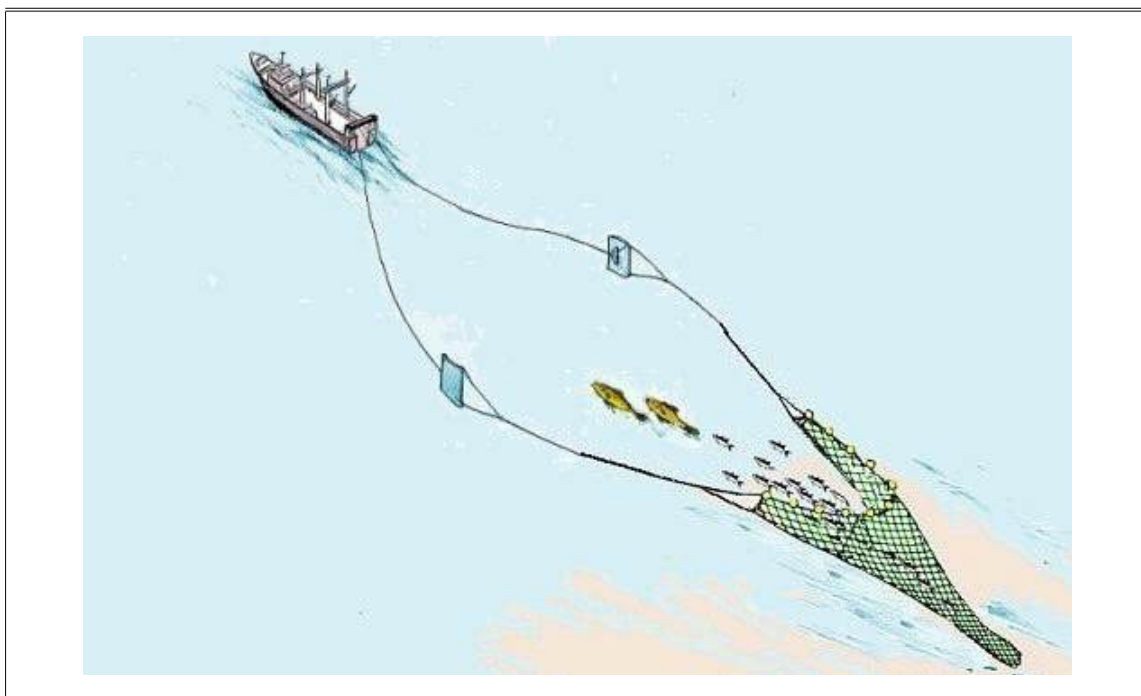
[부도 7-2]

동해구중형트롤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7-3]

동해구중형트롤망 조업모식도



8. 대형선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8-1 및 부도 8-2와 같다.

- 1) 긴 네모꼴 모양으로 쏘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된 어구
- 2)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밧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어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 3) 밧줄에 찢고리와 찢줄을 부착한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 등선, 운반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루어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쳐서(포위하여)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8-3과 같다.

- 1) 본선(本船)은 등선(燈船)에 고삐줄과 찢줄의 끝을 넘겨주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등선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고삐줄과 찢줄을 넘겨받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

* 본선: 어구를 투망·양망하는 그물배

* 등선: 어군(魚群) 탐색, 집어 등을 하는 보조선을 말하며, 어탐선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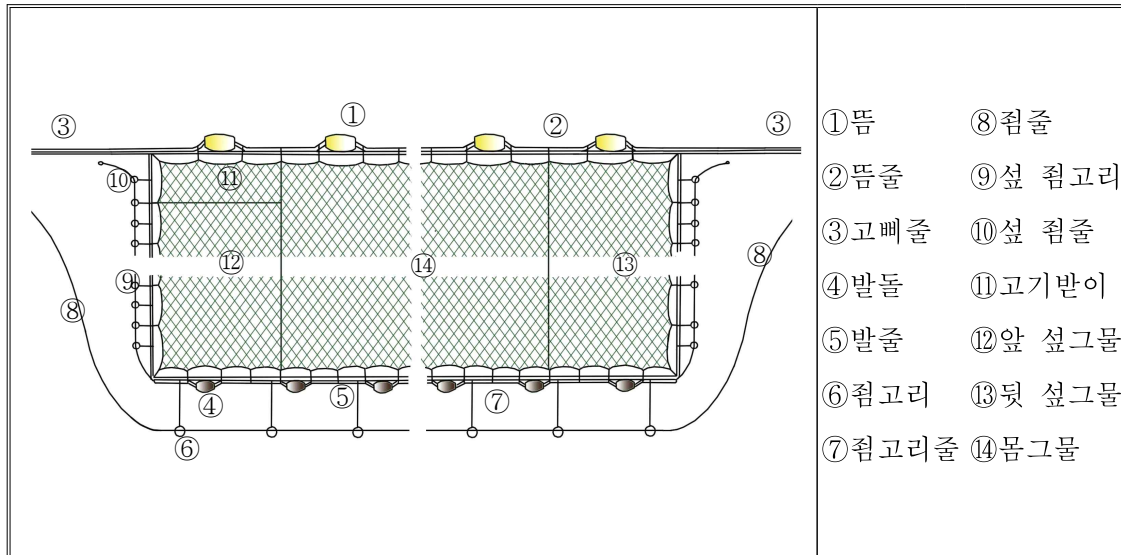
- 2) 1)의 방법 또는 본선에서 고삐줄과 찢줄이 연결된 부표를 투하하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표를 다시 건져 올려 고삐줄과 찢줄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

- 3) 양망 시 등선 1척은 본선이 그물쪽으로 달려 들어가지 않도록 본선의 양망현 반대쪽에서 당겨주기도 하고, 다른 등선 1척은 뜸줄이 엉키지 않도록 뜸줄을 잡아당겨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 4) 어구를 예망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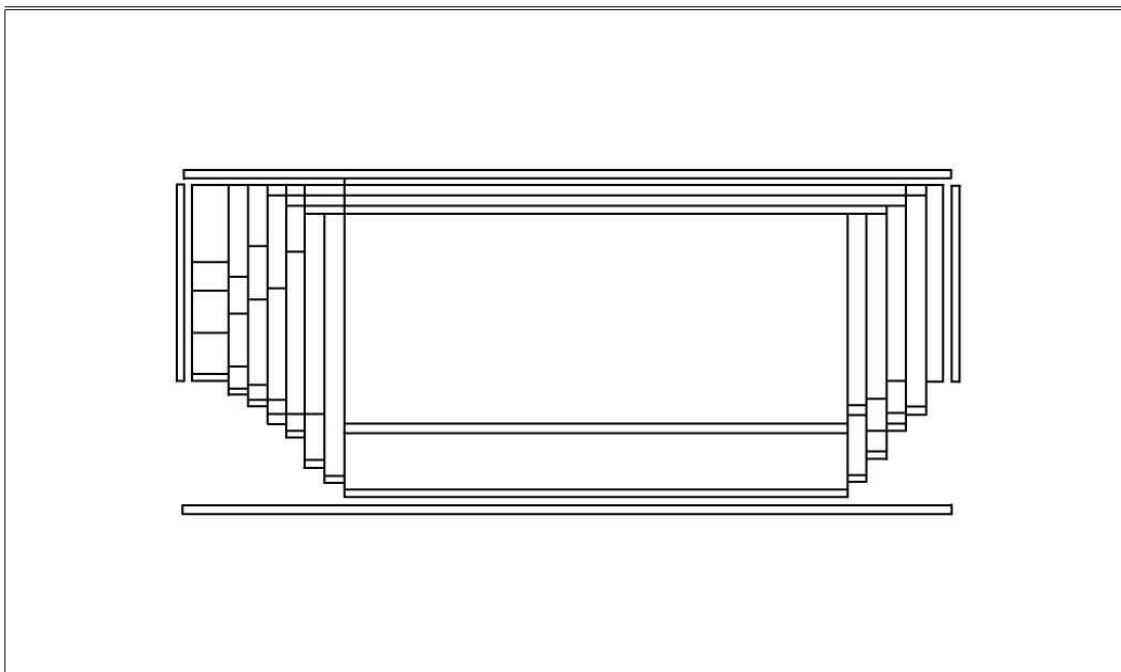
[부도 8-1]

대형선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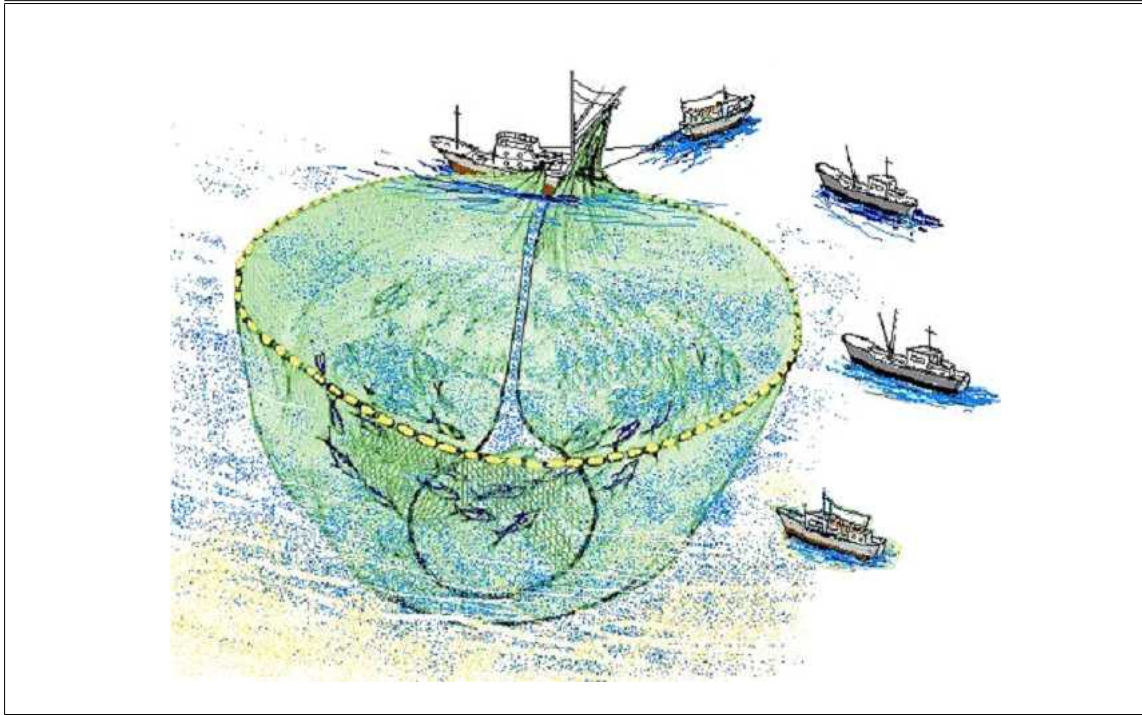
[부도 8-2]

대형선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8-3]

대형선망 조업모식도



9. 소형선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9-1 및 부도 9-2와 같다.

- 1)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섯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된 어구
- 2)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채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채를 달아 어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 3) 발줄에 줍고리와 줍줄을 부착한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 등선, 운반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루어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쳐서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9-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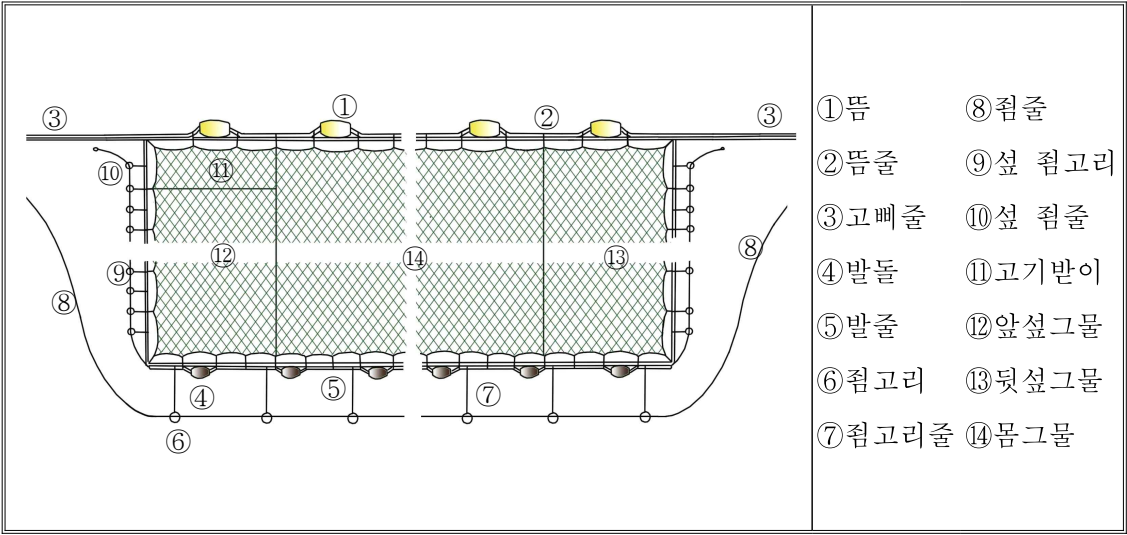
- 1) 본선은 등선에 고삐줄과 줍줄의 끝을 넘겨주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등선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고삐줄과 줍줄을 넘겨받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
- 2) 1)의 방법 또는 본선에서 고삐줄과 줍줄이 연결된 부표를 투하하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표를 다시 건져 올려 고삐줄과 줍줄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
- 3) 등선 또는 운반선은 본선에서 넘겨받은 고삐줄과 줍줄을 잡고 본선의 투망을

보조하다가 본선과 인접하게 되면 본선과 같이 어구의 일부를 양망하는 보조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 4) 사용하려는 어구는 본선에 실어야 하며, 어구를 예망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선에 실은 어구의 파손에 대비하여 예비 어구 1통을 운반선에 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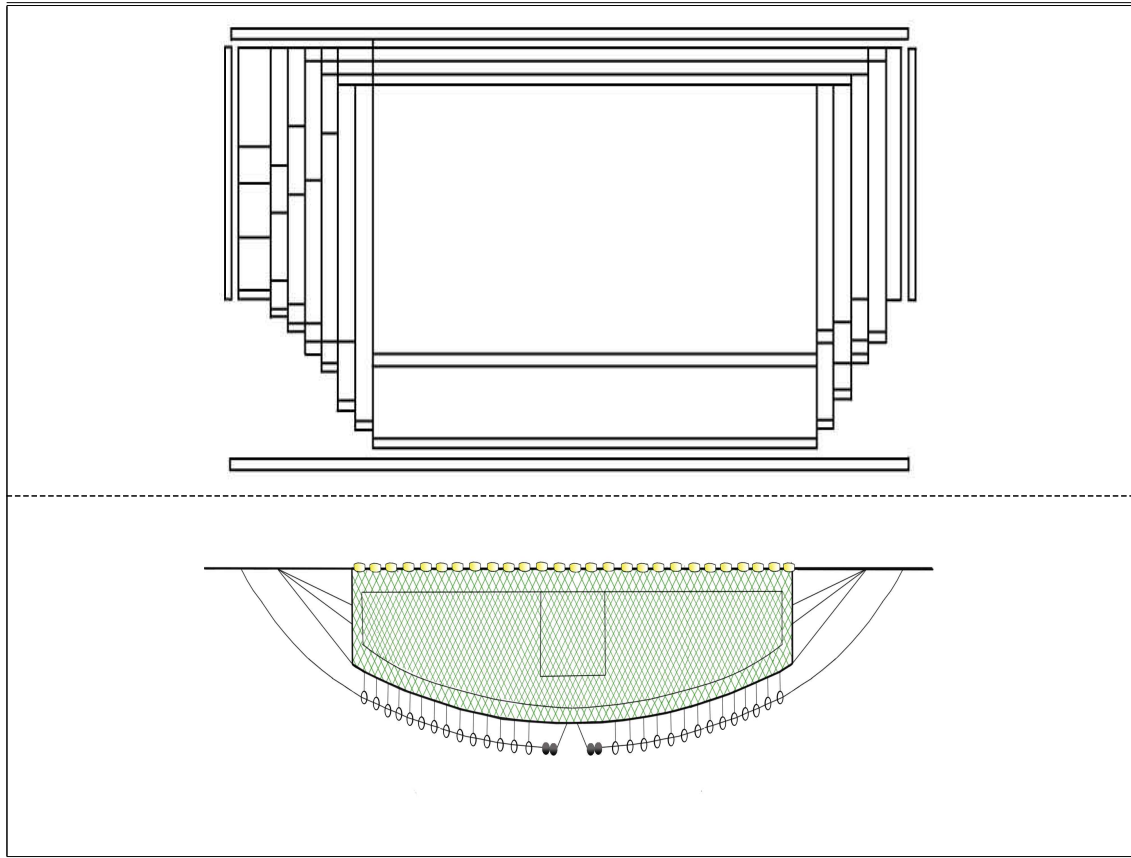
[부도 9-1]

소형선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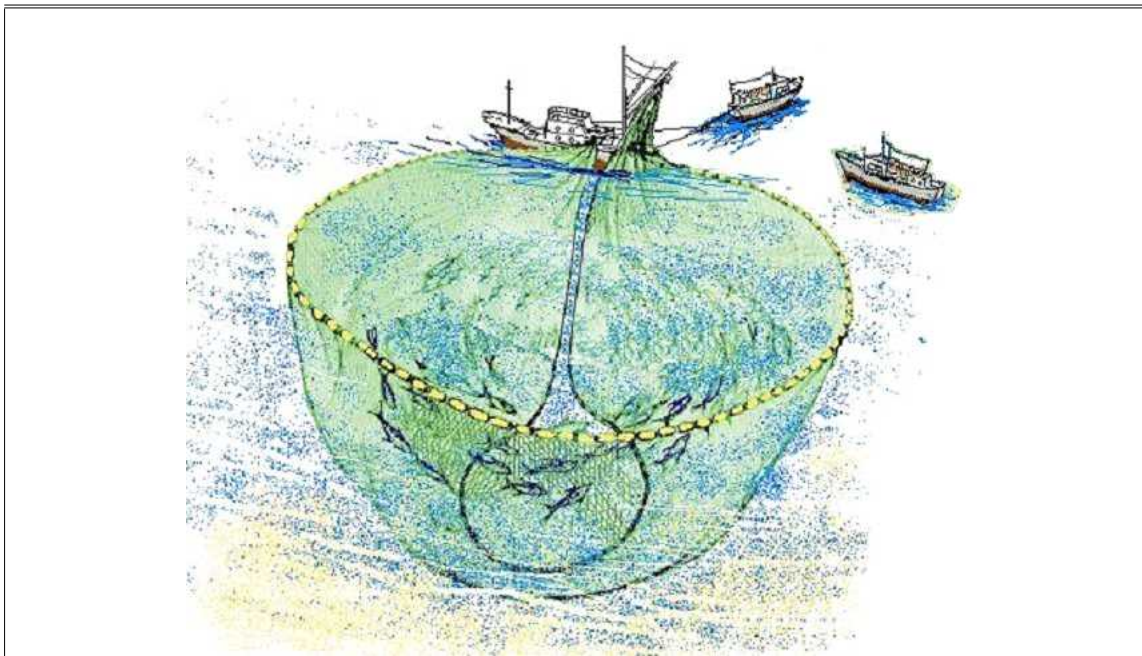
[부도 9-2]

소형선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9-3]

소형선망 조업모식도



10. 근해채낚기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낚싯줄 한 가닥에 낚시 1개 또는 여러 개를 단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0-1 및 부도 10-2와 같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낚거나 채어서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0-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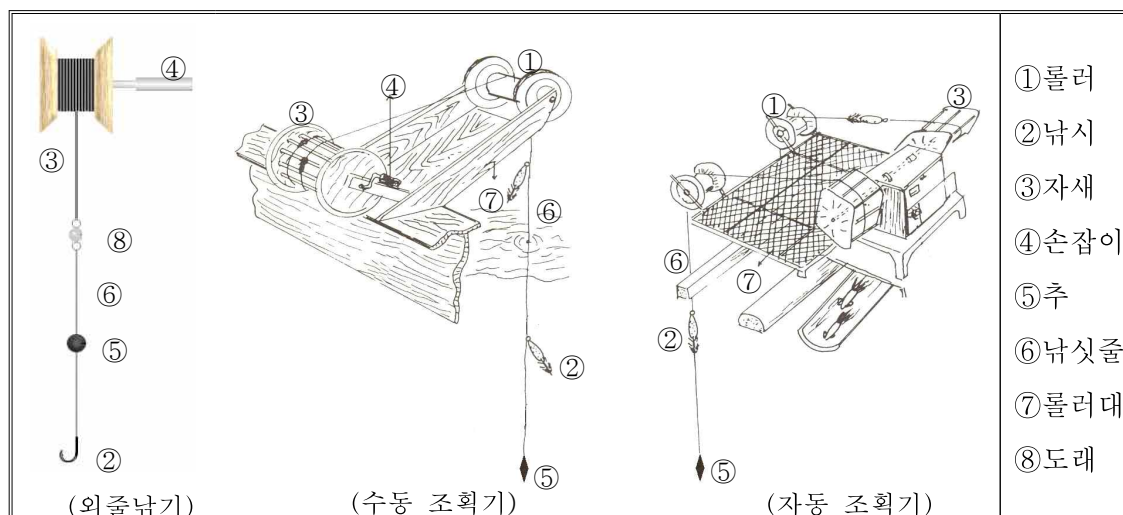
1) 낚시가 달린 줄을 낚싯대, 조획기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낚거나 채어서 포획한다.

2) 집어등, 물뚫(sea - anchor)을 사용할 수 있다.

* 물뚫(sea - anchor): 물속에서 저항을 받아 배가 바람에 의해 떠밀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일론 등의 천을 이용하여 낙하산 모양으로 만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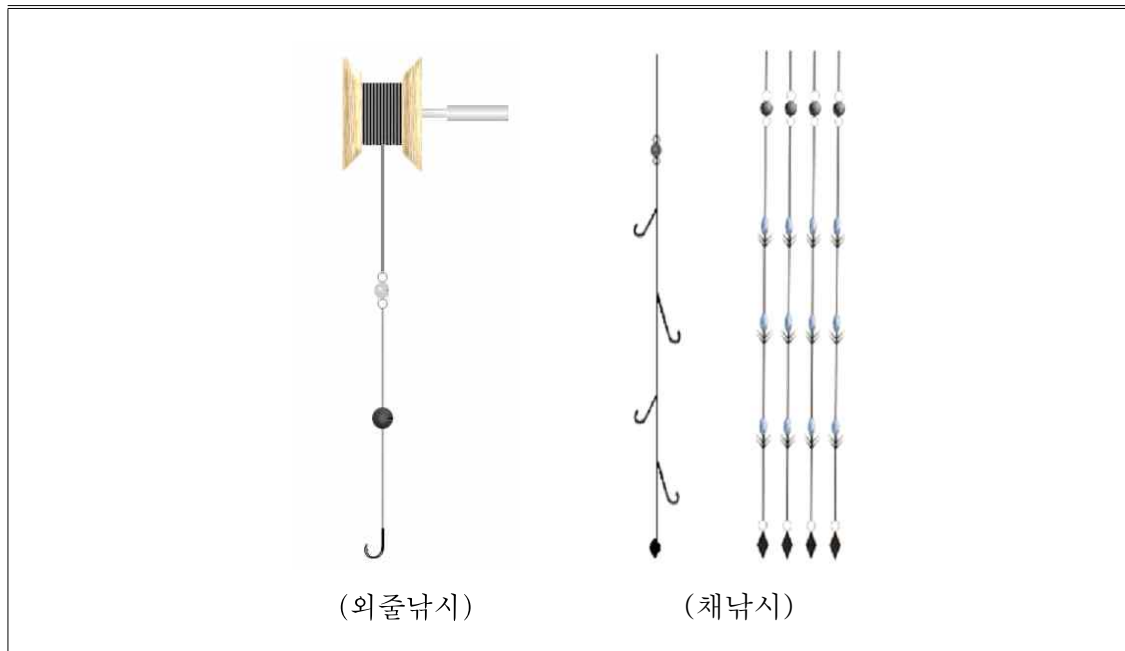
[부도 10-1]

근해채낚기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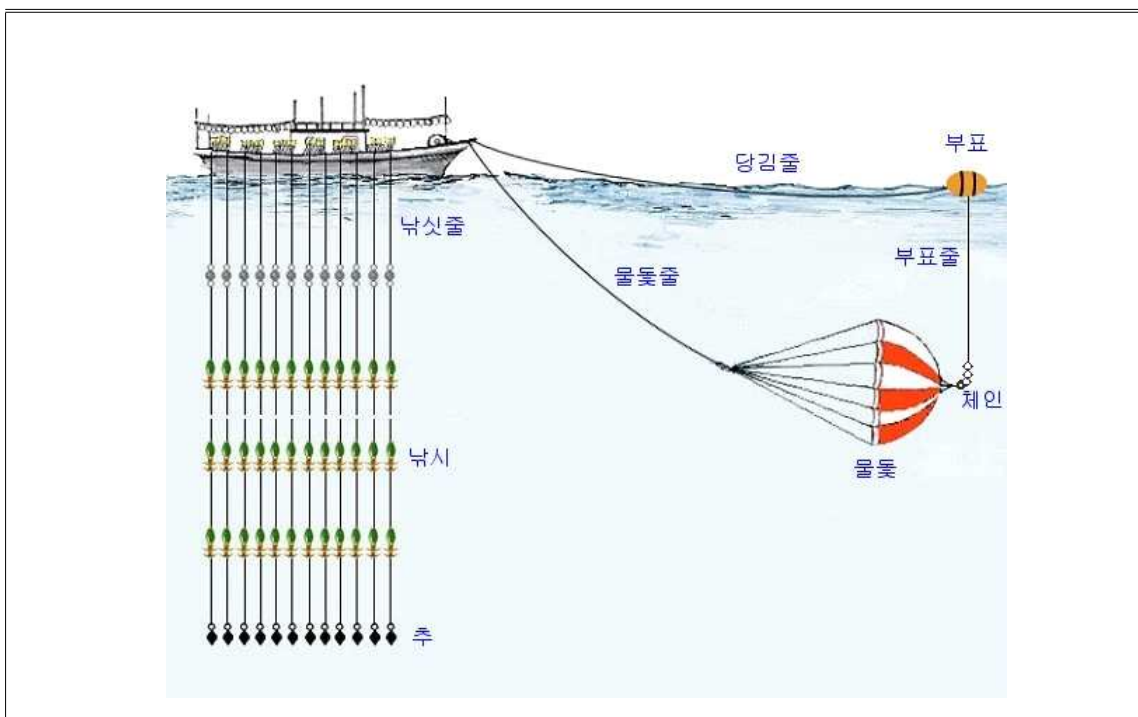
[부도 10-2]

근해채낚기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10-3]

근해채낚기 조업모식도



11. 근해자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1-1 및 부도 11-2와 같다.

- 1) 직사각형의 띠 모양의 그물에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그물이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 2) 홑 그물로 구성된 어구
- 3) 뺨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뺨침대를 뜸줄과 발줄사이에 수직방향으로 부착한 어구
 - * 뺨침대: 자망어구에서 뜸줄과 발줄을 수직방향으로 연결하는 막대
- 4) 허가받은 어선의 선복량별로 다음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어구를 부설한 경우에는 어구의 틀 양쪽 끝으로부터 닻이나 부표까지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어구의 길이는 제외한다)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어선의 자망에 뺨침대를 붙여 사용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어구량 1천 5백미터(인천광역시·경기도 해역에서 꽃게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어선 선복량에 따른 어구량 적용)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하고, 인천광역시·경기도 해역 중 별표 3의3 주17) 바깥 쪽 해역에서 뺨침대를 붙인 자망에 세목망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구량 6백미터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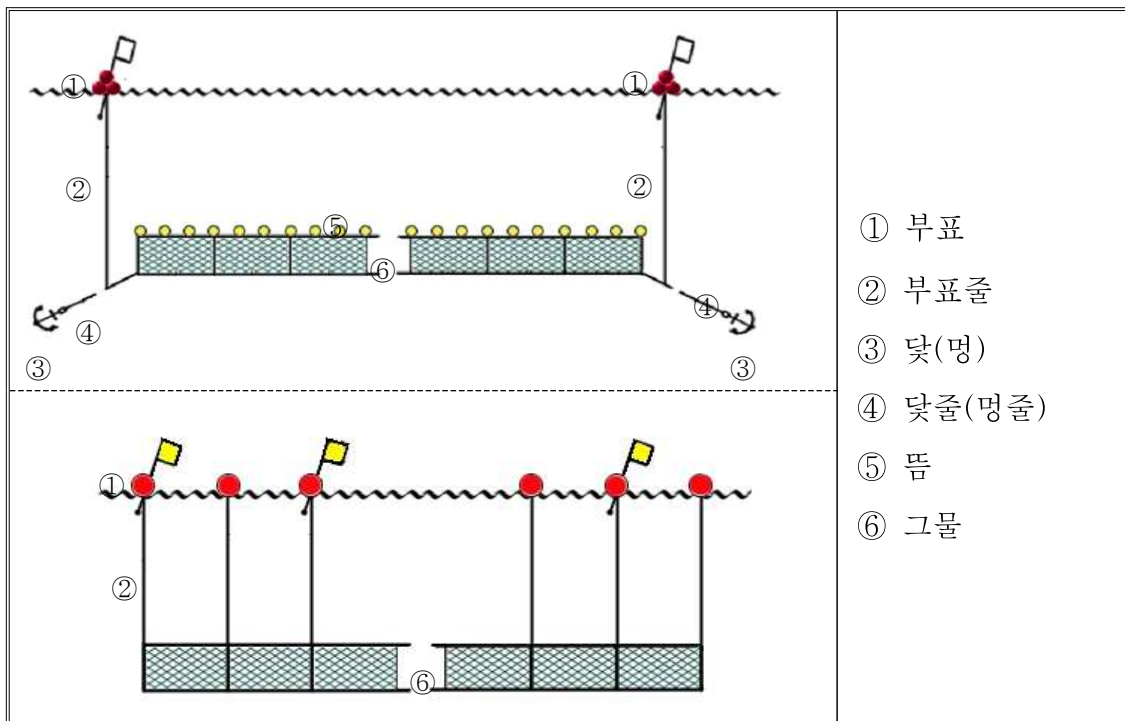
어선 선복량 (총톤수)	어구량
20톤 미만	1만 2천미터[동해안(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0일까지 3만 5천미터]. 다만, 어선에는 3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다.
20톤 이상 40톤 미만	1만 4천미터(동해안에서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0일까지 4만 5천미터). 다만, 어선에는 4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다.
40톤 이상	1만 6천미터(동해안에서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0일까지 7만미터). 다만, 어선에는 5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허가받은 부속선은 사용할 수 있다)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그물에 낚히거나 얹히도록 잡는 것으로 조업모식도는 부도 11-3과 같다. 다만, 수산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뺨침대를 부착한 경우에는 수산동물을 그물에 갇히도록 포획할 수 있다.

- 1) 부표, 닻(명), 그물, 닻(명),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 2)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망한다.
- 3) 표층, 중층, 저층에 고정 부설하거나 해류나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부설한다. 다만, 해류나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어구를 부설할 경우에는 닻(명)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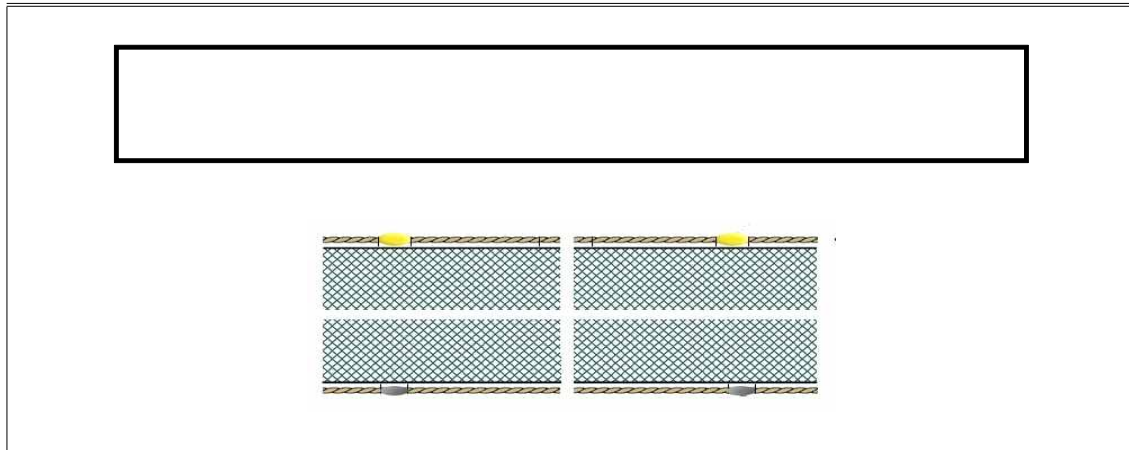
[부도 11-1]

근해자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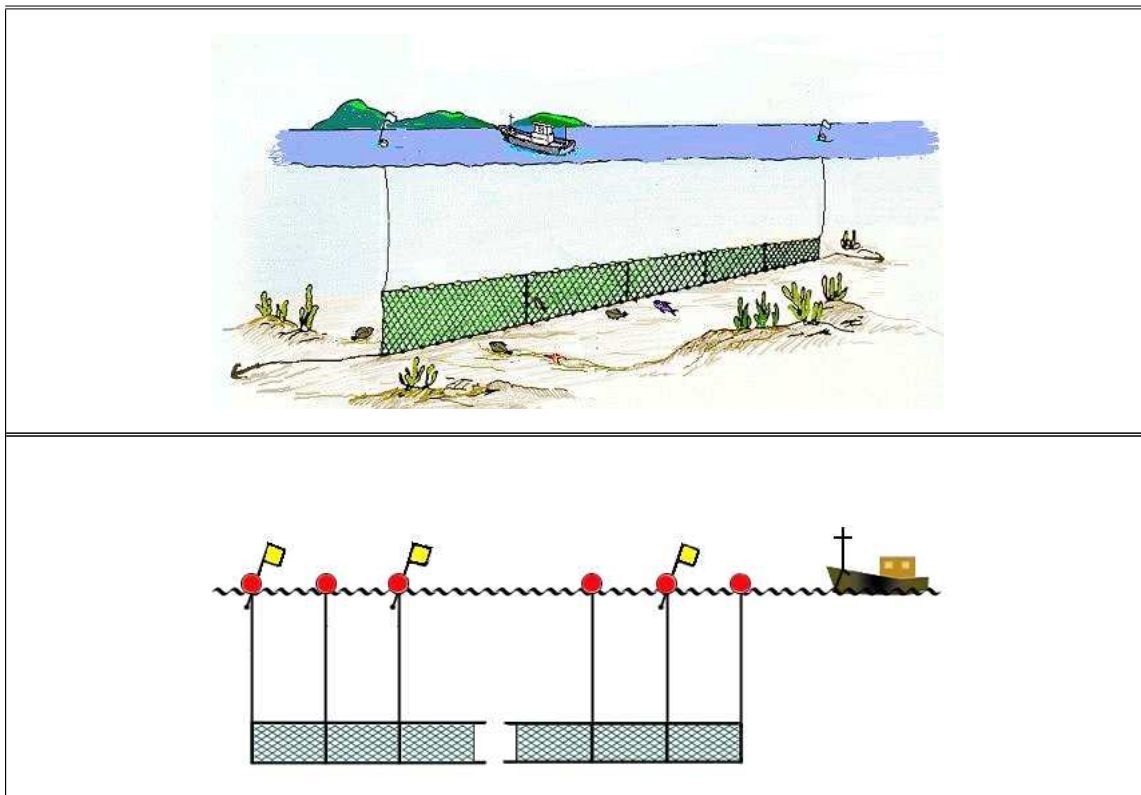
[부도 11-2]

근해자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11-3]

근해자망 조업모식도



12. 근해안강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표준어구 구성도, 어류분류망 구성도는 각각 부도 12-1부터 부도 12-3까지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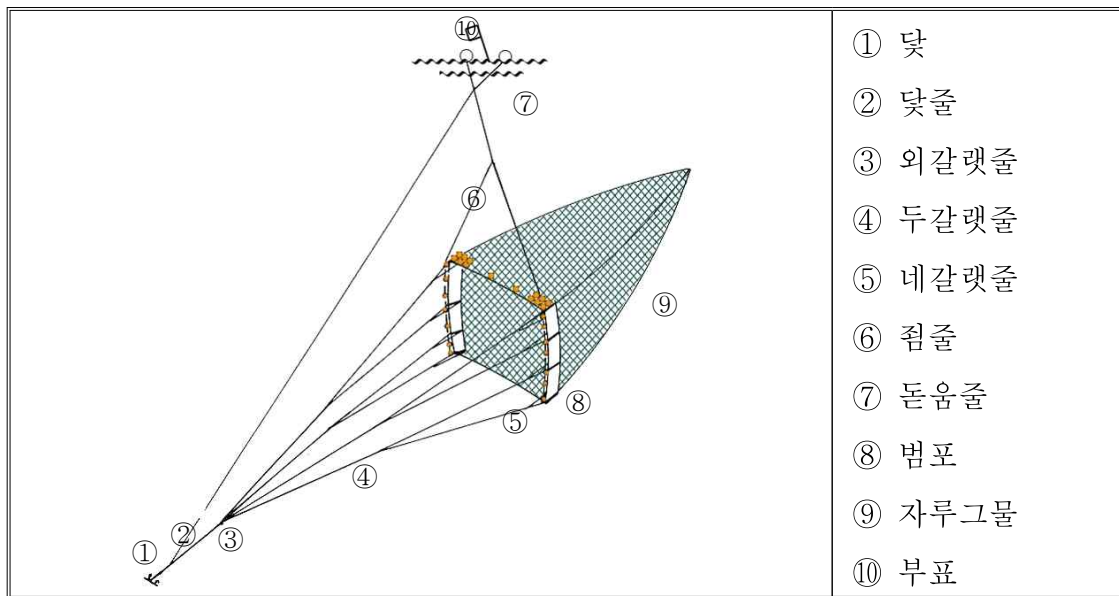
- 1)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며, 양측에는 범포를 달아 그물이 상·하, 좌·우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 3) 세망(細網)으로 된 자루그물 내부에 어류를 분류하는 그물을 여러 개 부착할 경우 부착한 어류 분류망에는 어류 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이때 그물코 크기는 법적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4) 15통 이내의 어구(어구용 닻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경기도 및 충청남도 해역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20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을 수 있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2-4와 같다.

- 1) 자루그물을 해저에 닻으로 고정 부설하여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 2) 어구 고정용 닻, 자루그물, 범포를 투하한 뒤 줍줄, 돛줄,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 3)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투망의 역순으로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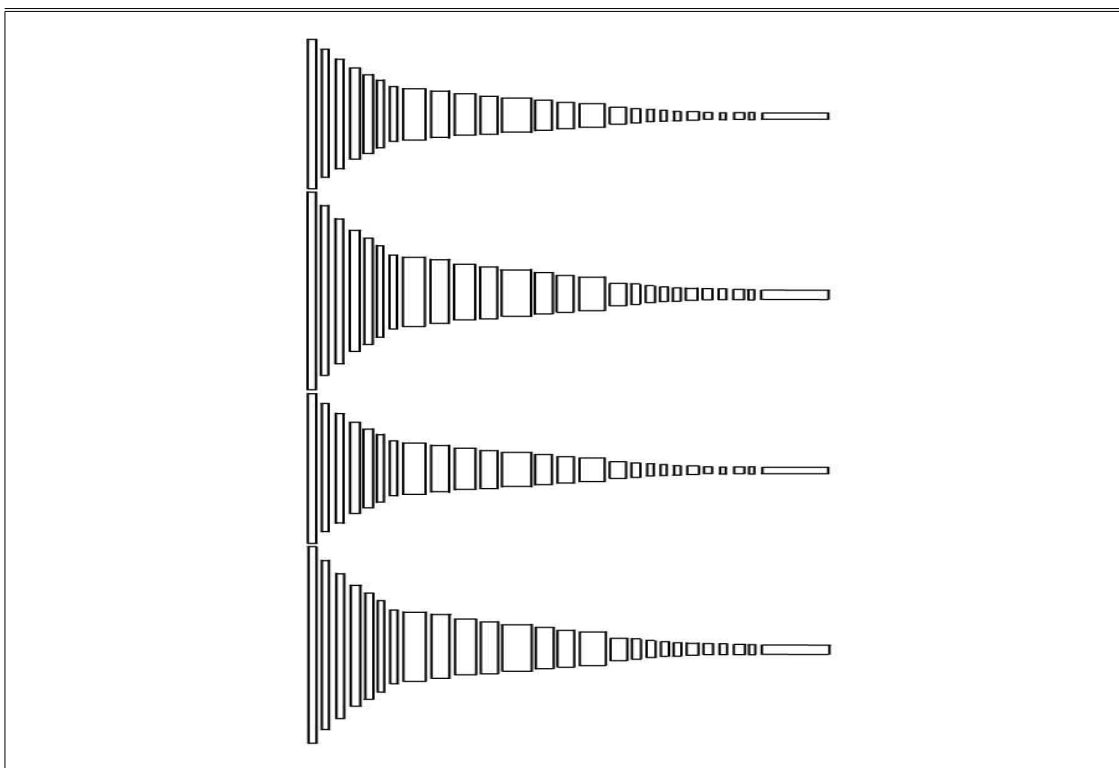
[부도 12-1]

근해안강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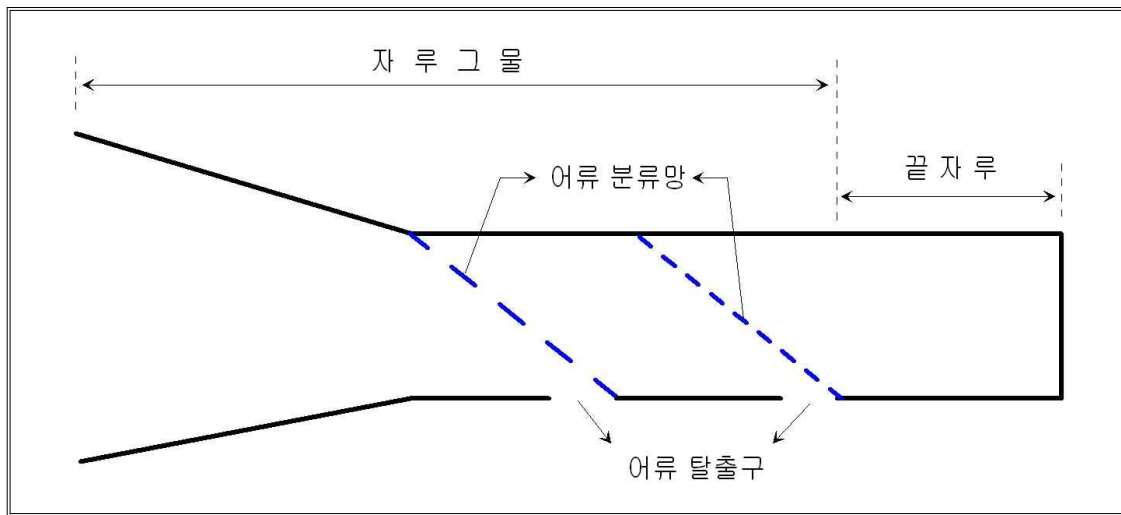
[부도 12-2]

근해안강망 표준어구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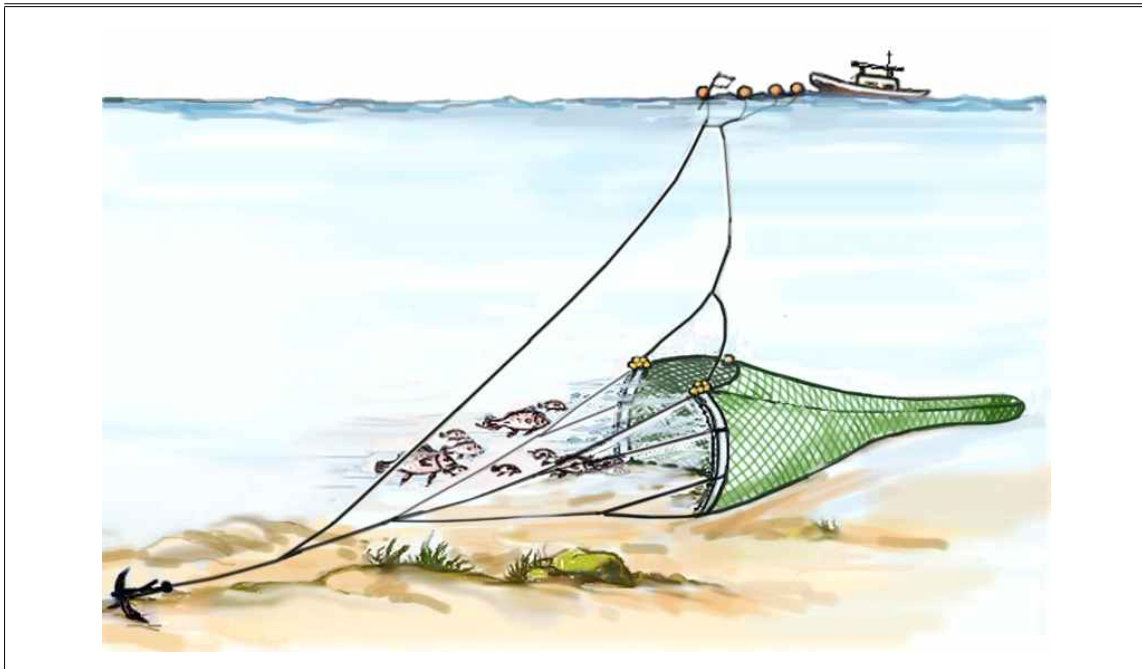
[부도 12-3]

근해안강망 어류분류망 구성도



[부도 12-4]

근해안강망 조업모식도



13. 근해봉수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3-1 및 부도 13-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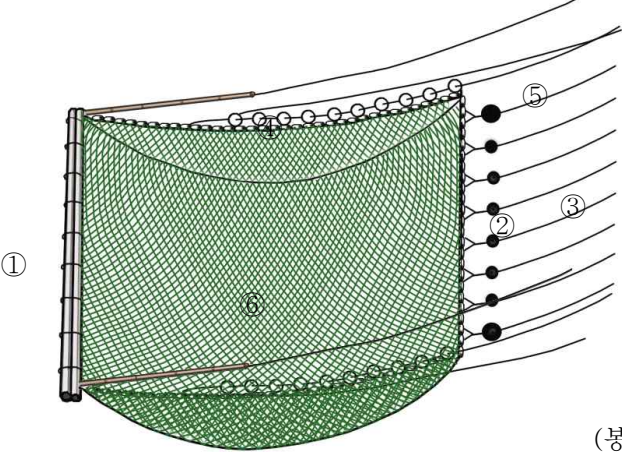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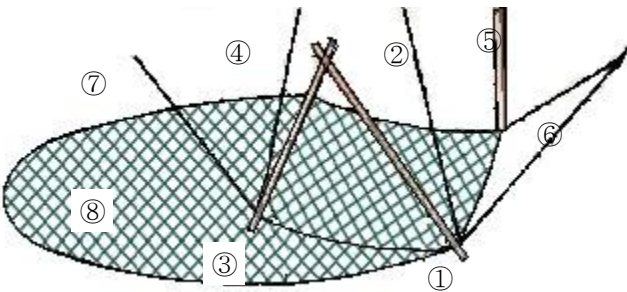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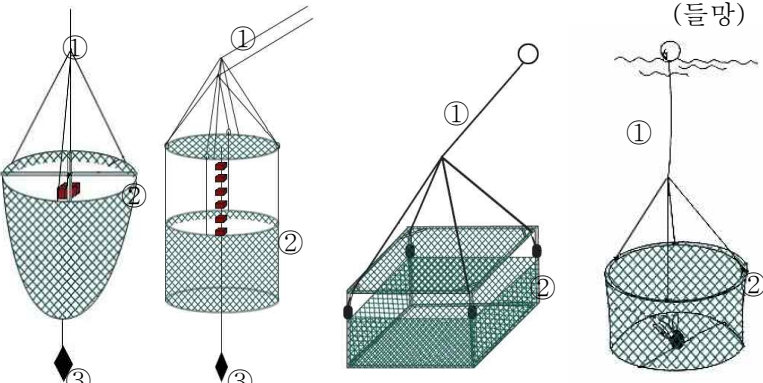
- 1) 사각형 모양의 그물 상부는 뜸대로, 하부는 발돌과 돈옴줄로, 양측은 찢고리와 찢줄로 구성된 어구(봉수망)
- 2) 긴 찢대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초망)
- 3) 그물에 테가 없는 사각형 모양 등의 그물과 돈옴줄로 구성되거나, 그물의 위 언저리에 테가 있는 형태와 돈옴줄로 구성된 어구(들망)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들어 올려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은 부도 13-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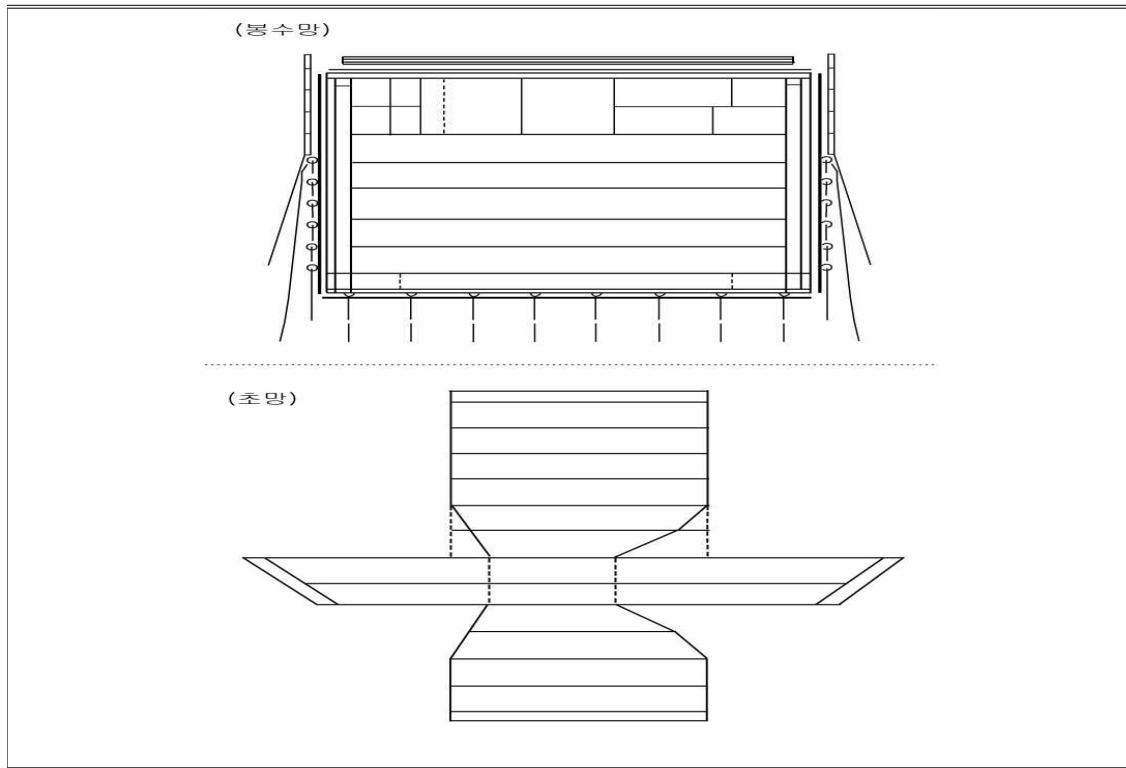
- 1) 물속에 미리 어구를 수평 또는 수직으로 부설하여 수산동물이 어구 위에 오면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 2) 1) 또는 물속에 미리 부설 해 놓은 어구 속으로 수산동물을 유도해서 수산동물이 어구 속으로 들어가면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 3) 집어등을 사용한 조업이 가능하다.

[부도 13-1]

근해봉수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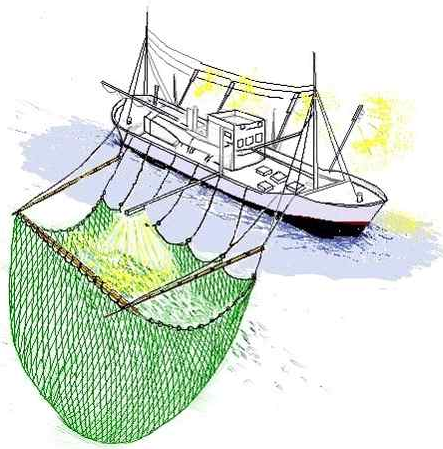
 (붕수망)	① 뜬대 ② 발돌 ③ 돈움줄 ④ 침고리 ⑤ 침줄 ⑥ 그물
 (초망)	① 큰챗대 ② 큰챗대줄 ③ 작은챗대 ④ 작은챗대줄 ⑤ 콧대 ⑥ 앞잡이줄 ⑦ 뒷잡이줄 ⑧ 자루그물
 (들망)	① 돈움줄 ② 고정테 ③ 추

근해붕수망 표준어구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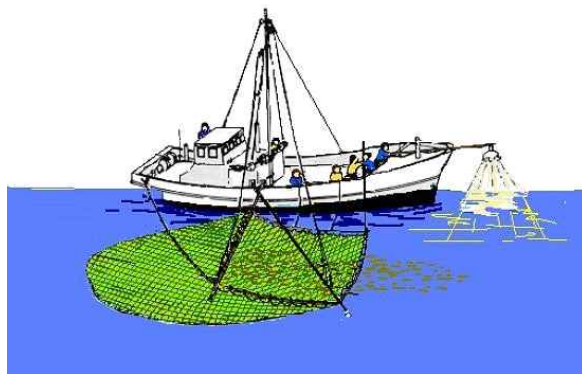


[부도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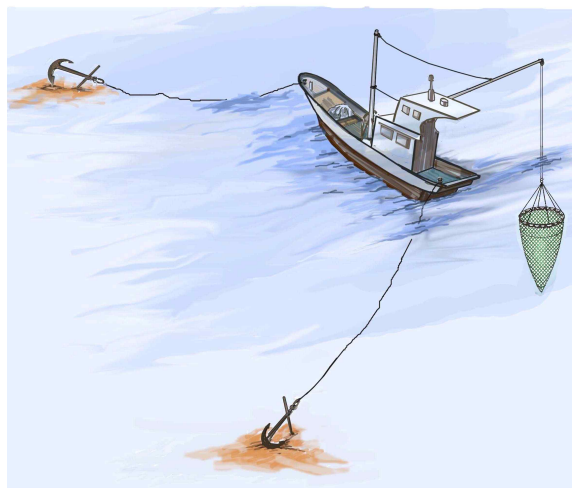
근해붕수망 조업모식도



(봉수망)



(초망)



(들망)

14. 근해자리돔들망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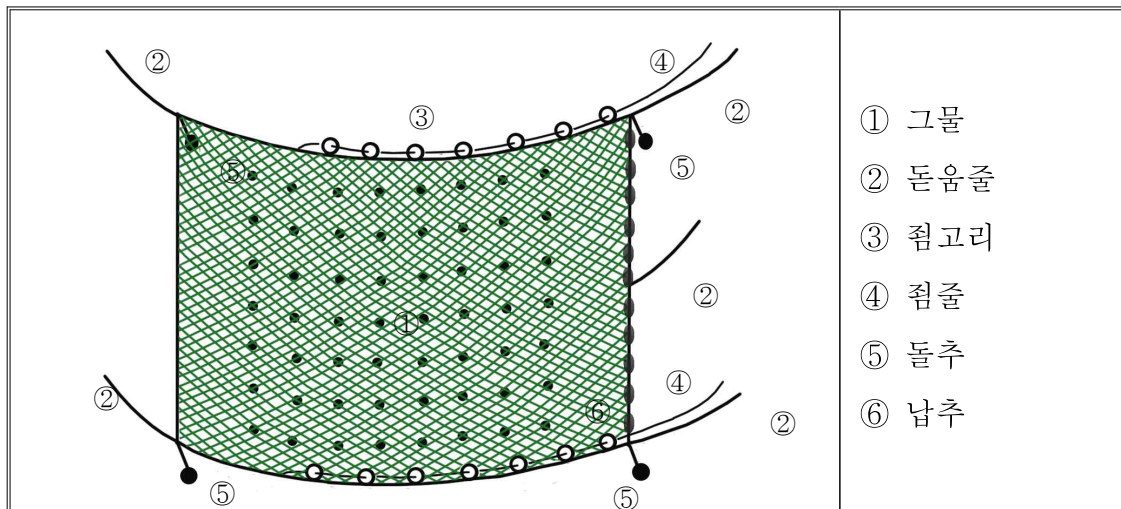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그물에 테가 없는 사각형 모양 등의 그물과 돌움줄로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4-1 및 부도 14-2와 같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과 어로보조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들어 올려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4-3과 같다.

- 1) 물속에 미리 어구를 수평으로 부설하여 대상 수산동물이 어구 위에 오면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 2) 그물의 네 모서리에 닻을 투하하고 돈움줄로 그물을 펼치면서 투망한 후, 그물 위에 대상 수산동물이 모이면 돈움줄을 당기면서 그물을 들어 올려 오목한 주머니 모양을 만들어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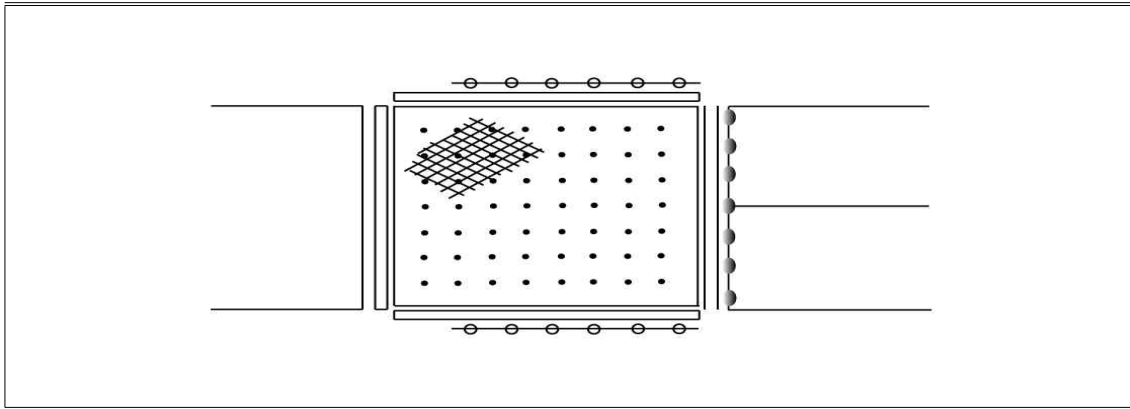
[부도 14-1]

근해자리돔들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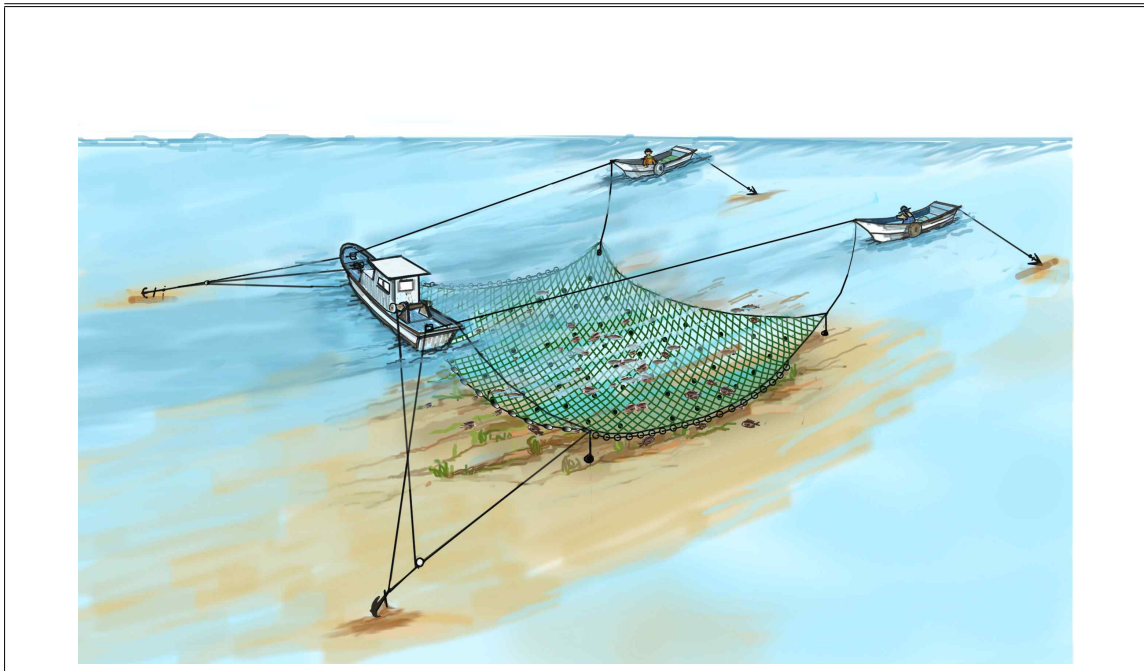
[부도 14-2]

근해자리돔들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14-3]

근해자리돔들망 조업모식도



15. 근해장어통발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는 부도 15-1과 같다.

- 1) 합성수지로 된 긴 원통의 한쪽 또는 양쪽에 깔때기 모양의 입구가 있는 어구
- 2) 허가받은 어선의 규모별로 다음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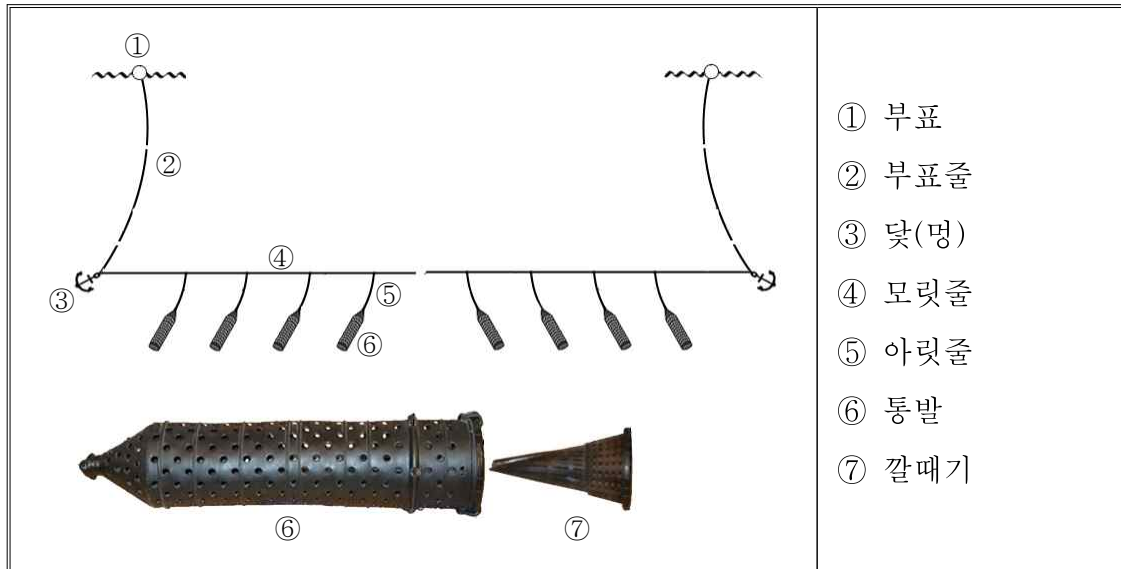
어선 규모 (총톤수)	어구량
8톤 이상 20톤 미만	○ 통발의 개수는 3,200개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20톤 이상 40톤 미만	○ 통발의 개수는 7천개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40톤 이상	○ 통발의 개수는 1만개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발 속으로 들어간 장어를 잡는 것으로서 조업 모식도는 부도 15-2와 같다.

- 1) 부표, 닻(명), 통발이 달린 모릿줄, 닻(명), 부표 순서로 투승한다.
- 2)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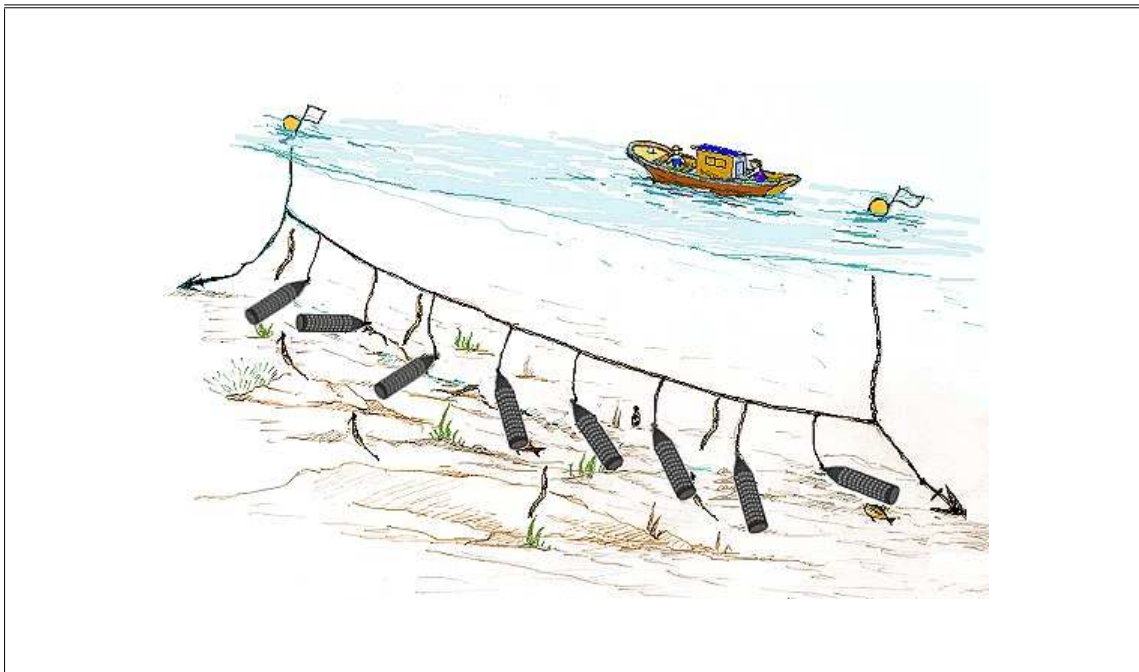
[부도 15-1]

근해장어통발 어구 겨냥도



[부도 15-2]

근해장어통발 조업모식도



16. 근해문어단지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는 부도 16-1과 같다.

- 1) 토기 또는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단지 형태로 제작된 어구
- 2) 허가받은 어선의 규모별로 다음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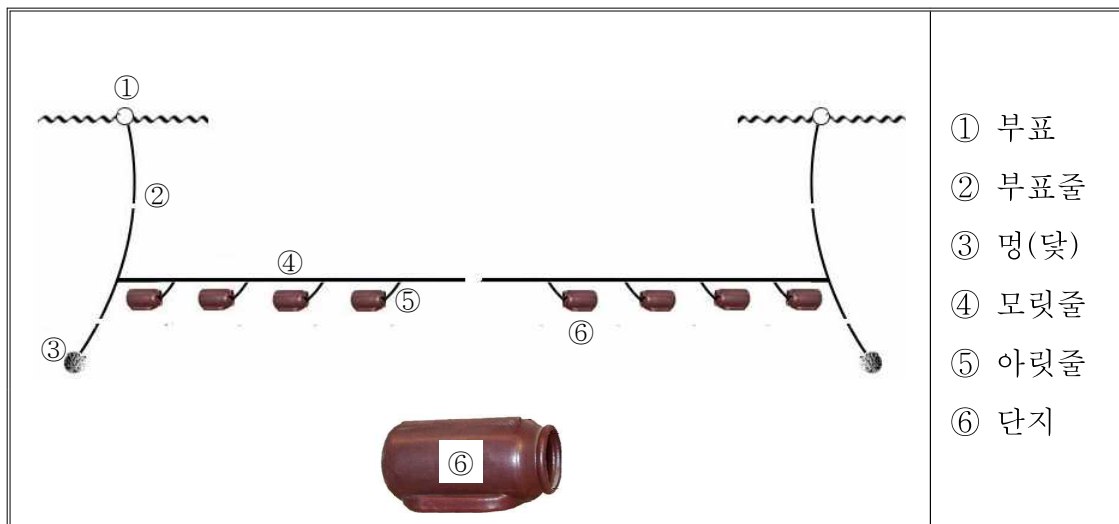
어선 규모 (총톤수)	어구량
8톤 이상	○ 단지의 개수는 2만 4천개 ○ 단지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단지 속으로 들어간 대상 문어류를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6-2와 같다.

- 1) 여러 개의 단지를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 부설한다.
- 2) 부표, 닻(명), 단지가 달린 모릿줄, 닻(명), 부표 순서로 투승한다.
- 3)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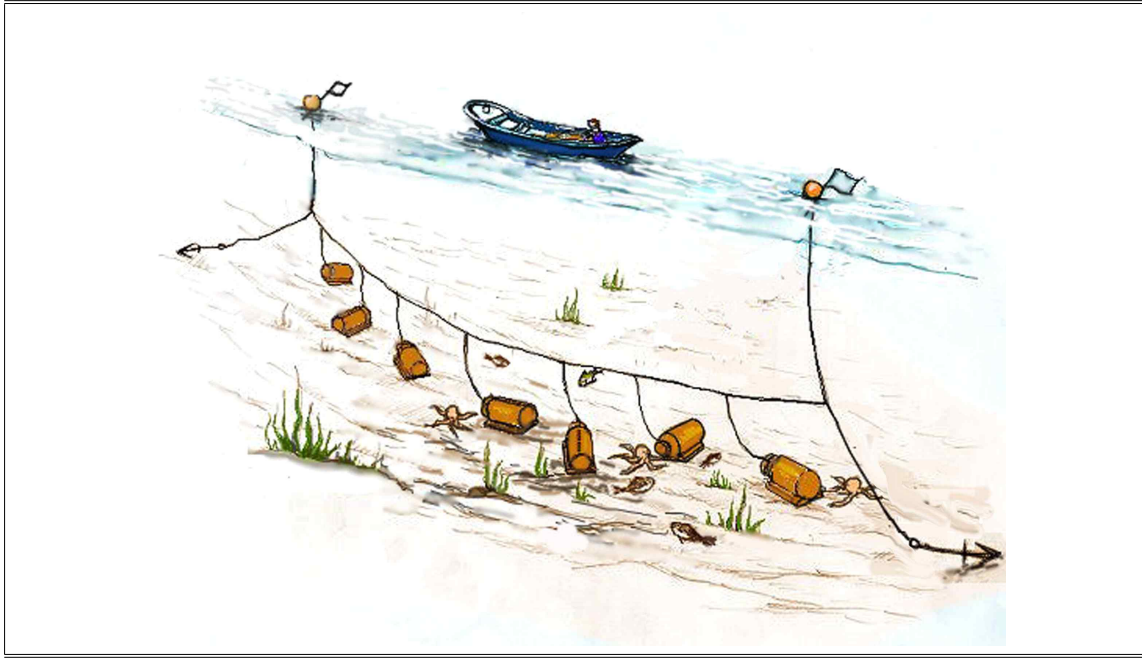
[부도 16-1]

근해문어단지 어구 겨냥도



[부도 16-2]

근해문어단지 조업모식도



17. 근해통발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와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7-1 및 부도 17-2와 같다.

- 1) 일정한 형태의 고정된 테 위에 그물 등을 씌운 것으로서 윗면 또는 옆면에 입구가 있는 어구
- 2) 합성수지·철사·나무 등으로 제작된 통발인 경우에는 그물코의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제작된 어구
- 3) 가로·세로·높이(원통형인 경우 지름)의 길이를 각각 120센티미터 이하로 제작한 어구
- 4) 허가받은 어선의 규모별로 다음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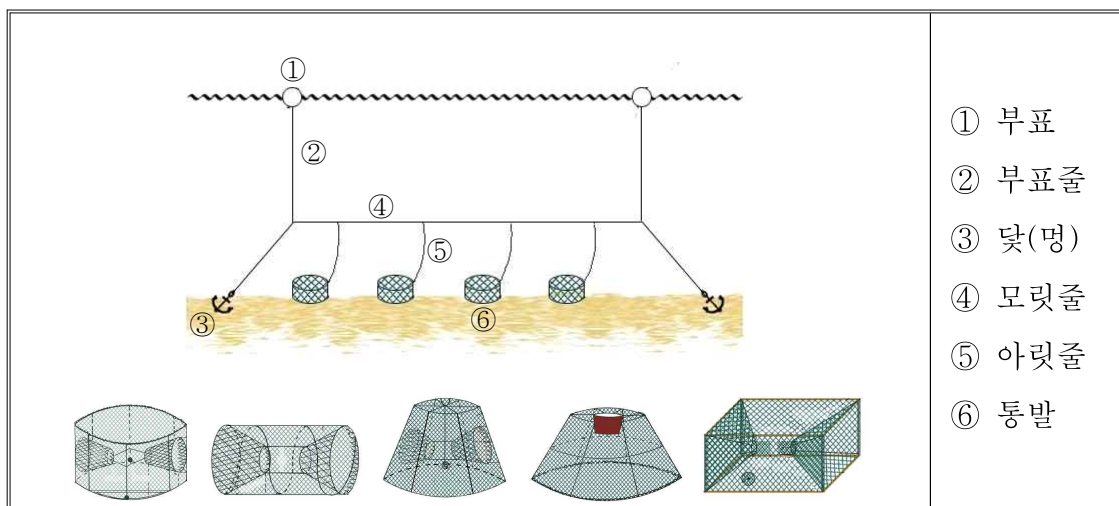
어선 규모 (총톤수)	어구량
8톤 이상 20톤 미만	○ 통발의 개수는 2,500개. 다만, 동해안은 4천개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미터 이내
20톤 이상 40톤 미만	○ 통발의 개수는 3,500개. 다만, 동해안은 5,500개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미터 이내
40톤 이상	○ 통발의 개수는 5천개. 다만, 동해안은 7천개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미터 이내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발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7-3과 같다.

- 1) 여러 개의 통발을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 부설한다.
- 2) 부표, 닻(명), 통발이 달린 모릿줄, 닻(명), 부표 순서로 투승한다.
- 3)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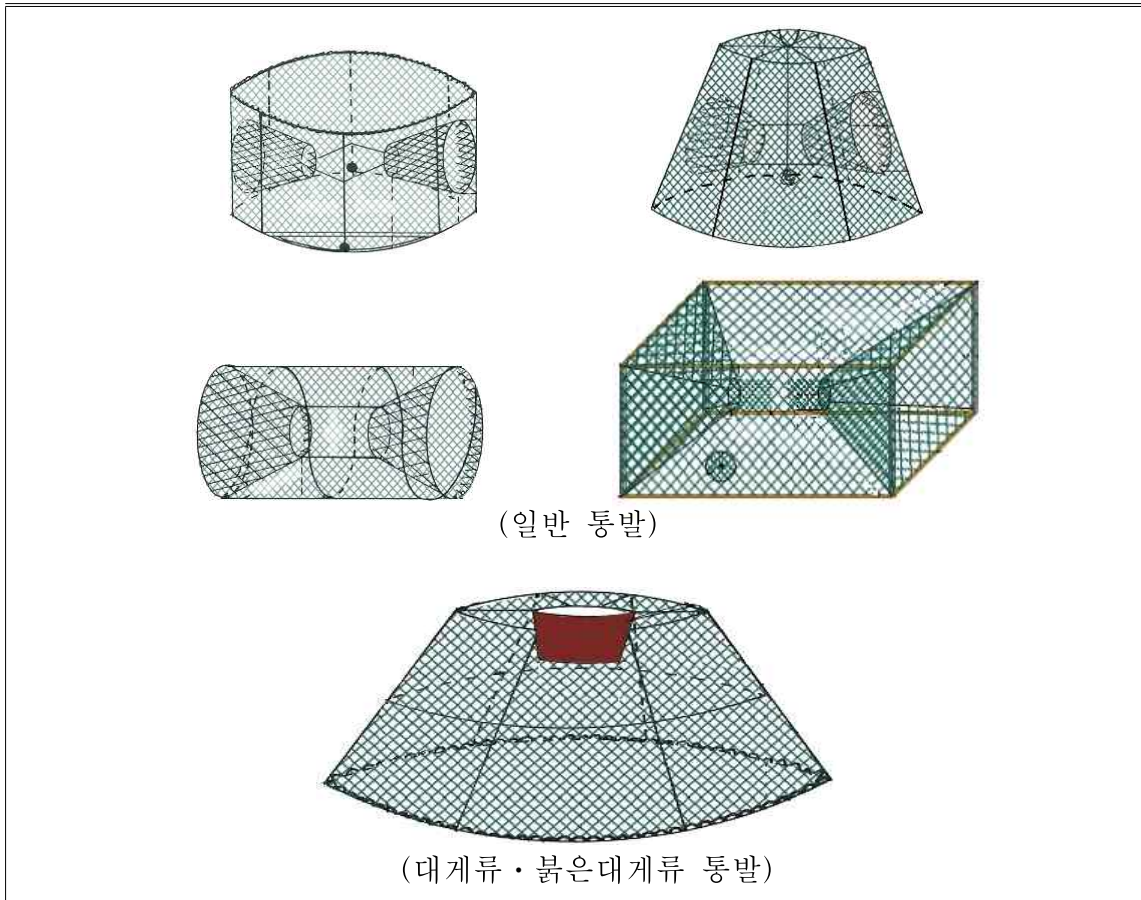
[부도 17-1]

근해통발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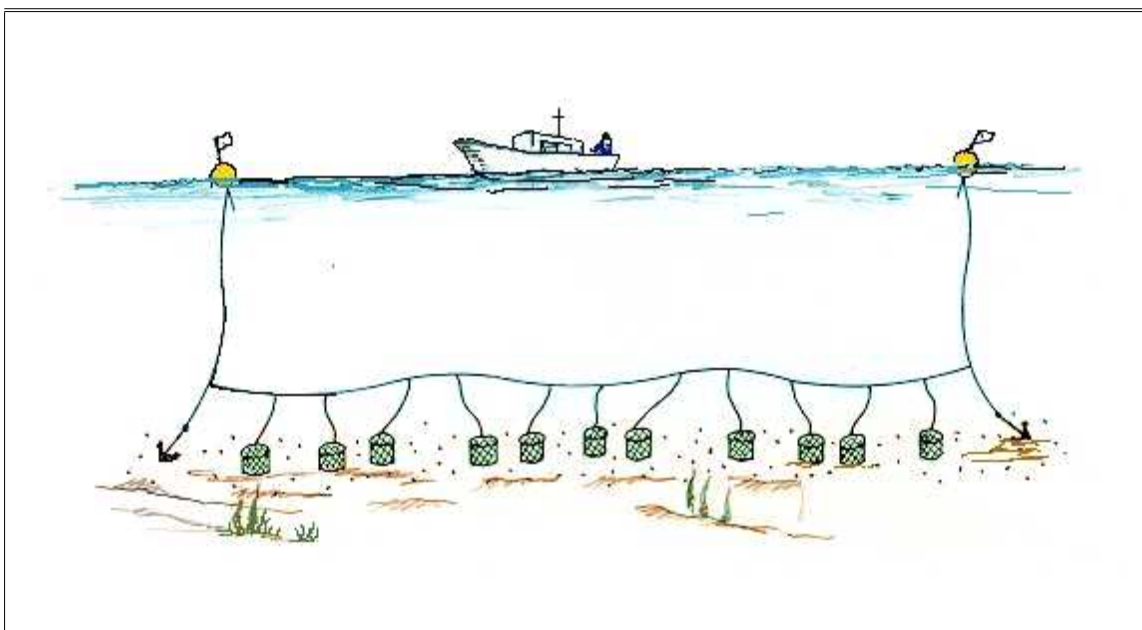
[부도 17-2]

근해통발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17-3]

근해통발 조업모식도



18. 근해연승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8-1 및 부도 18-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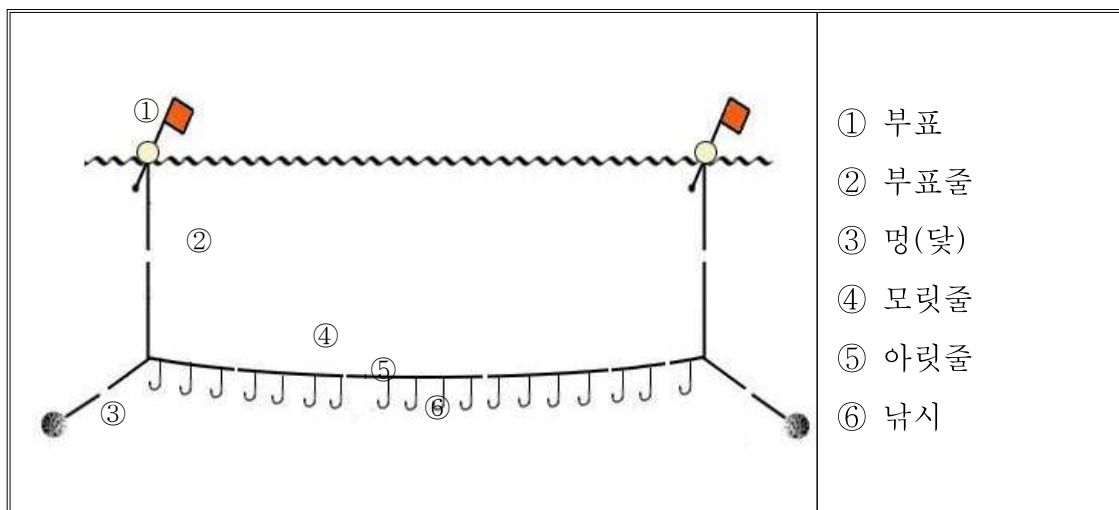
- 1) 낚시, 아릿줄, 모릿줄 등으로 구성된 어구
- 2) 모릿줄에 여러 개의 아릿줄을 달고, 아릿줄 끝에 낚시를 단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낚아서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8-3과 같다.

- 1) 여러 개의 낚시를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 부설한다.
- 2) 부표, 닻(명), 낚시가 달린 모릿줄, 닻(명), 부표 순서로 투승한다.
- 3)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승한다.
- 4) 수산동물의 분포 수층(水層)에 따라 모릿줄에 뜸을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 부표줄의 길이로 어구의 부설 수층을 조절할 수 있다.

[부도 18-1]

근해연승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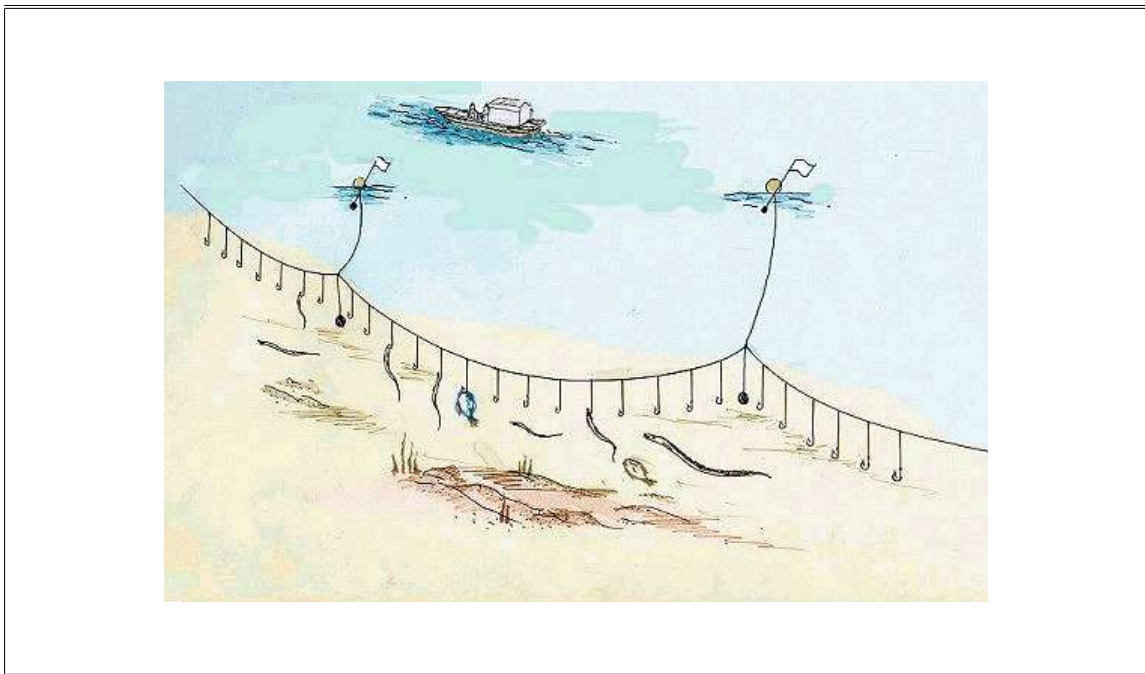
[부도 18-2]

근해연승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18-3]

근해연승 조업모식도



19. 기선권현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9-1 및 부도 19-2와 같다.

- 1) 날개그물(오비기·수비)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자루그물은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으로 된 어망을 부착한 어구
- 3)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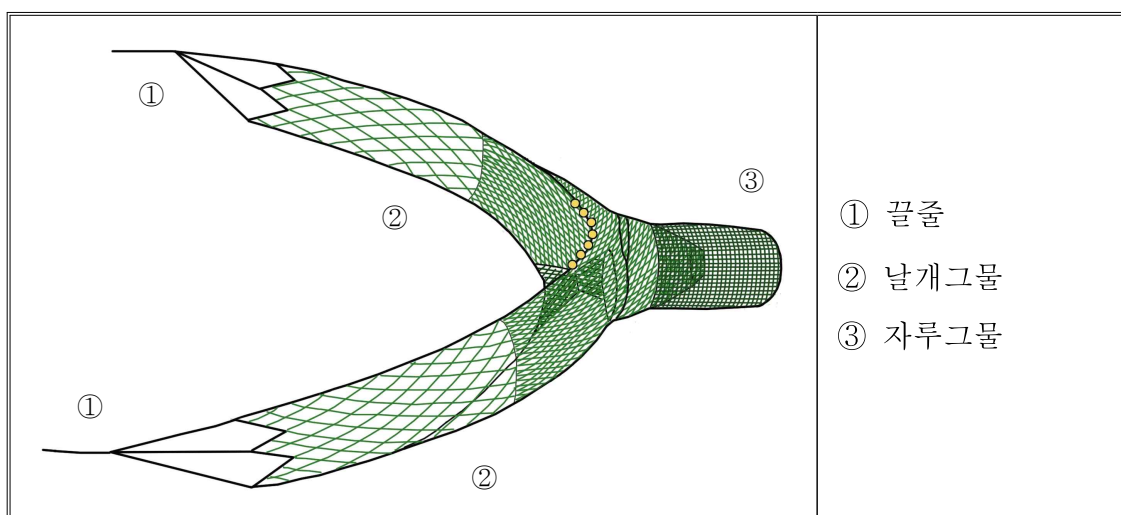
* 오비기·수비: 어군을 위협하여 자루그물 속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하며 그 물코가 큰 것을 사용한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 어로보조선, 가공 및 운반 겸용선이 선단을 이루어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멸치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9-3과 같다.

- 1) 본선 2척이 그물을 나누어 싣고 향해하다가 자루그물부터 투망한다.
- 2) 본선 간의 간격을 벌리면서 날개그물을 투망한 후 끌줄 1가닥씩을 잡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층 또는 표층을 예망(저층을 예망해서는 안 된다)한다.
- 3) 예망이 끝나면 본선에서는 각각 날개그물을 감아 들고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 4) 어로보조선은 어군을 탐색하거나 본선의 조업활동을 보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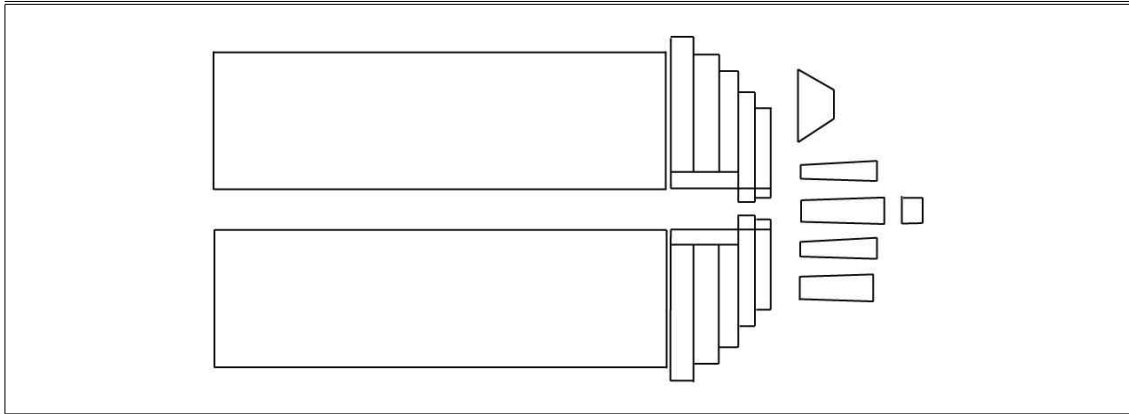
[부도 19-1]

기선권현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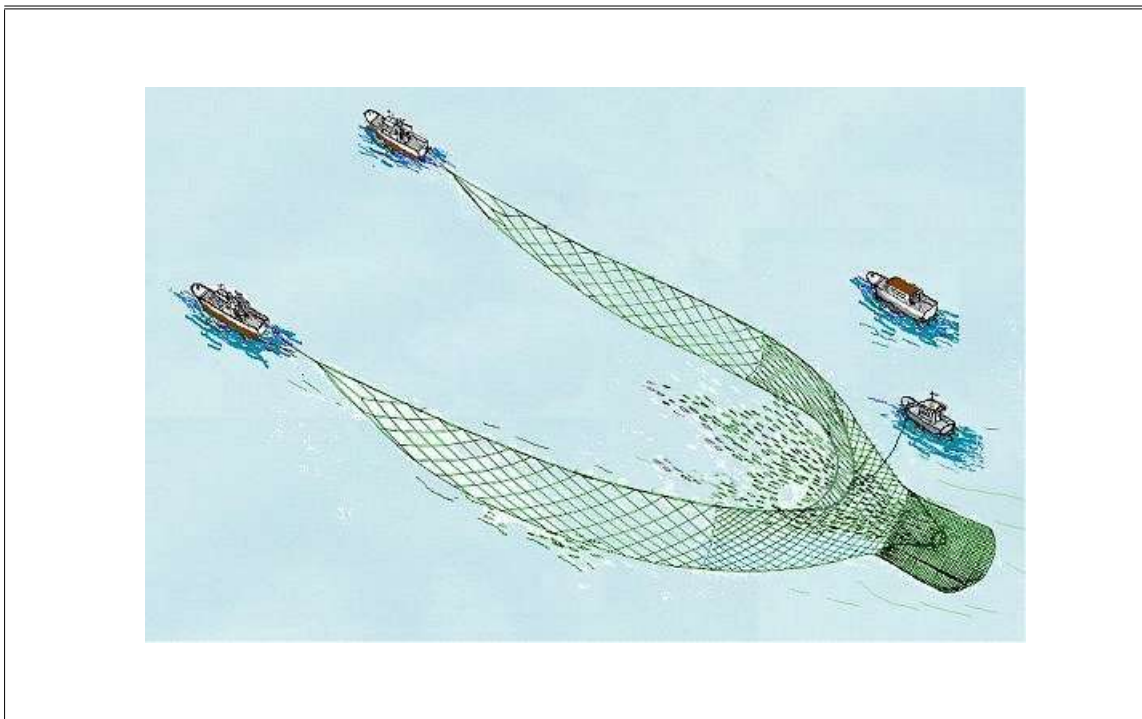
[부도 19-2]

기선권현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19-3]

기선권현망 조업모식도



20. 근해형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갈퀴형 또는 쓰레받기형 모양으로서 형망틀을 바닥에서 끌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20-1 및 부도 20-2와 같다.

- 1) 고정틀의 크기가 폭 8미터 이하, 높이 0.8미터 이하인 어구
- 2) 고정틀에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자루그물(자루그물에는 발줄, 발돌 및 체인 등을 사용할 수 없다)이 직접 부착되어 있는 어구
- 3) 그물코의 안쪽 길이가 57밀리미터 이상인 어구
- 4) 갈퀴형 어구의 경우 고정틀 밑면에 갈퀴가 4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으로 부착되어 있는 어구

* 갈퀴: 해저 속에 서식하는 패류를 채취하기 위해 고정틀의 밑면에 해저 방향으로 부착된 여러 개의 가늘고 긴 칼날 모양의 막대기

- 5) 쓰레받기형 어구의 경우 고정틀 앞에 문턱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6) 고정틀 좌·우에는 길이가 2.5미터 이하인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으며, 썰매판 사이에는 2개 이내의 체인을 부착할 수 있다.

* 썰매판: 고정틀이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틀 좌·우에 부착한 장치

- 7) 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 8) 패류 외 수산동물의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혼획저감장치를 어구에 부착해야 한다.
- 9) 고정틀의 폭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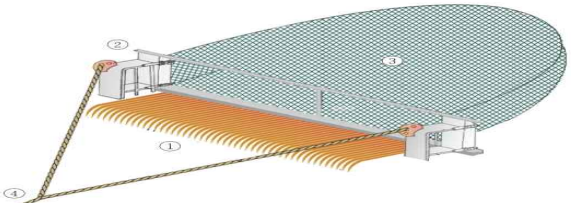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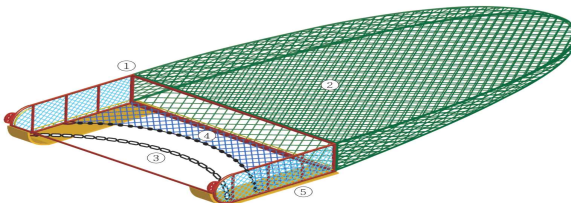
고정틀의 폭	어구량
2미터 미만	4통
2미터 이상 4미터 미만	2통
4미터 이상 8미터 이하	1통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따른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패류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20-3과 같다.

- 1) 어구를 투하하고, 끌줄을 선체에 고정시킨 후 저층을 끌면서 예망한다.
- 2)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을 감아 들어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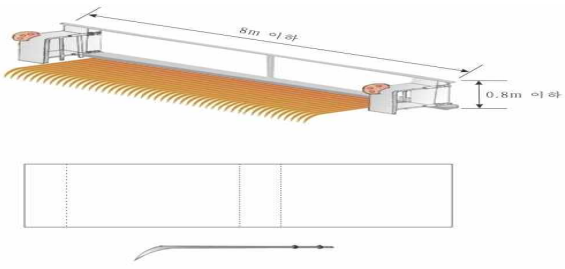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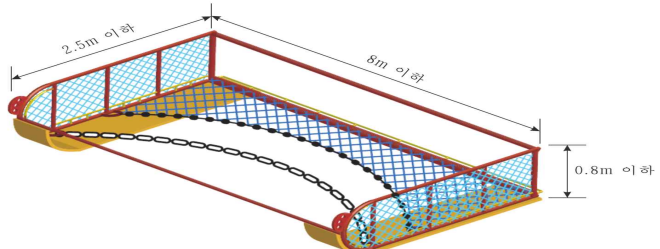
[부도 20-1]

근해형망 어구 겨냥도

갈퀴형 	① 갈퀴 ② 고정틀 ③ 자루그물 ④ 끌줄
쓰레받기형 	① 고정틀 ② 자루그물 ③ 체인 ④ 문턱 ⑤ 썰매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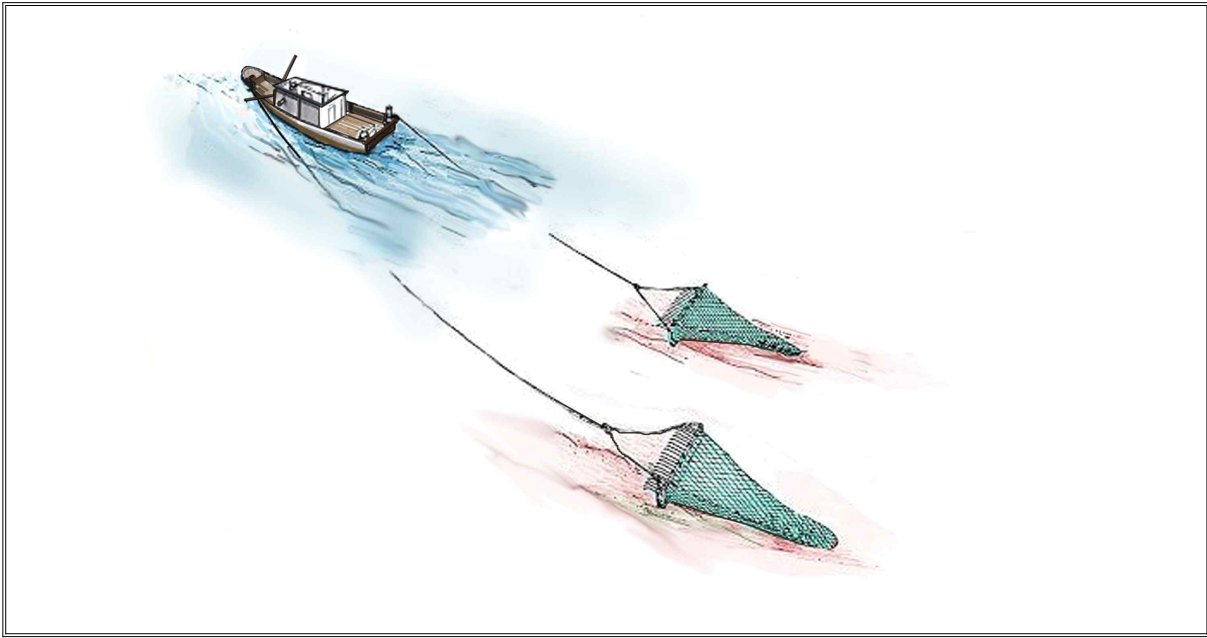
[부도 20-2]

근해형망 표준어구 구성도

갈퀴형 	
쓰레받기형 	

[부도 20-3]

근해형망 조업모식도



21. 잠수기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장비 겨냥도는 부도 21-1과 같다.

- 1) 잠수복, 투구, 마스크 또는 물안경, 낚, 신발, 공기압축기(컴프레서), 공기공급용 호스 등의 장비와 갈퀴, 칼, 망태 등으로 구성된 어구
- 2) 잠수부와 연결하는 호스의 길이는 1인당 150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 3) 배 길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선수부(船首部) 좌·우 현(舷)의 외판(外板)은 노란색으로 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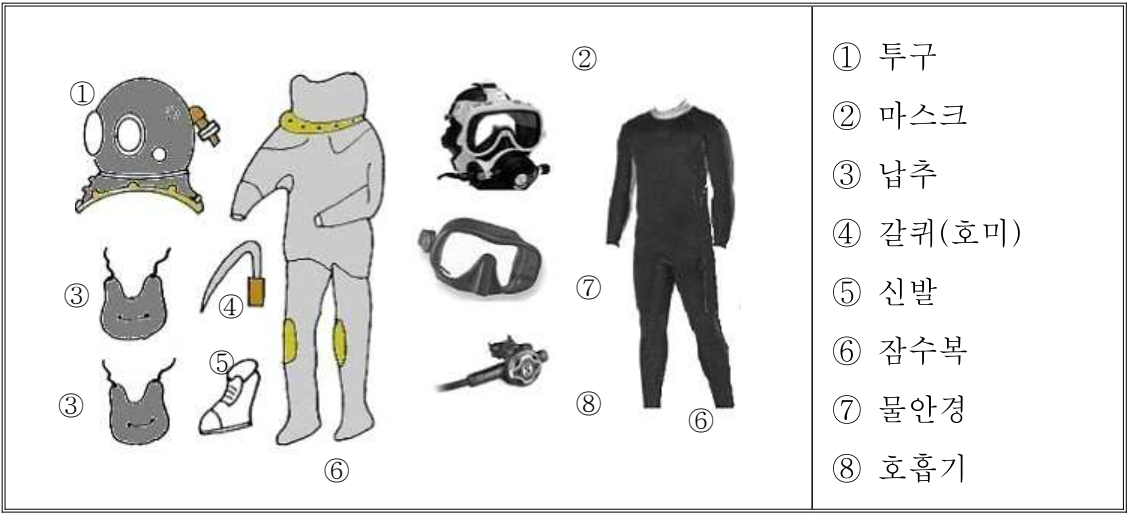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과 잠수부 1명이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패류 등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21-2와 같다.

- 1) 잠수부는 어선에서 호스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갈퀴나 칼 등을 사용하여 해저 바닥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다.
- 2) 호스가 연결된 투구, 마스크 또는 물안경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 3) 분사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도지사가 해당 관할 수역의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수역의 범위, 분사기를 사용하여

포획할 수 있는 매물성 수산동물[개조개·키조개·왕우럭·코끼리조개·바지락(「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개불로 한정한다]의 종류, 분사기의 마력(8마력 이하로 한정한다) 및 노즐 규격을 정하는 경우로서 이에 적합하게 분사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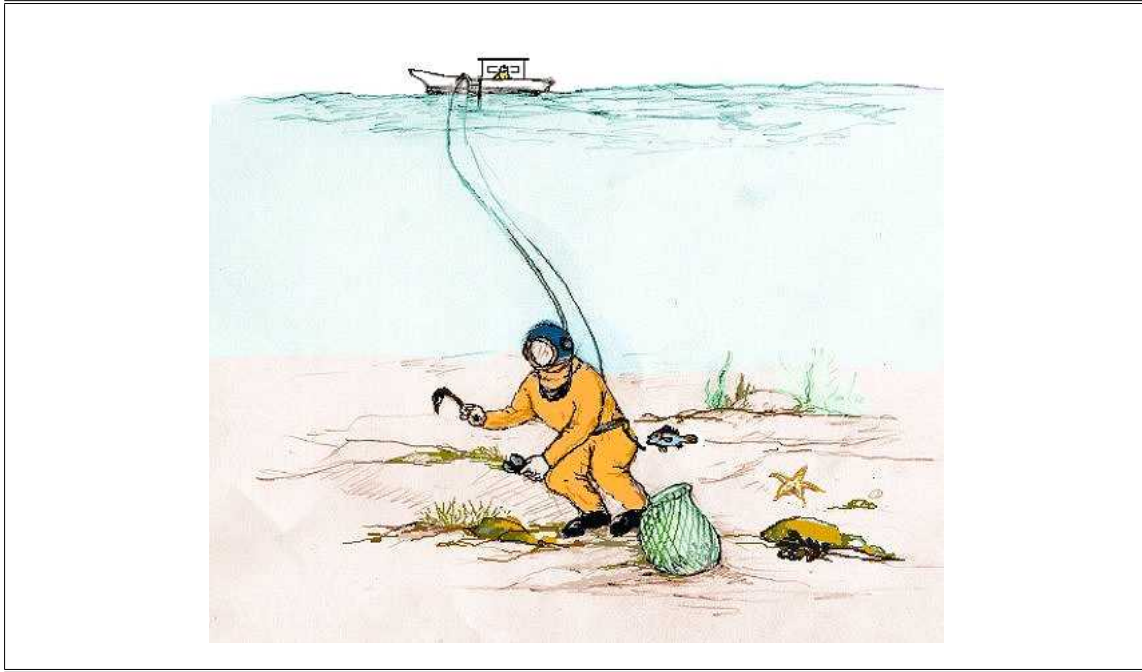
[부도 21-1]

잠수기어업 장비 겨냥도



[부도 21-2]

잠수기어업 조업모식도



Ⅲ. 연안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1. 연안개량안강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1 및 부도 1-2와 같다.

1)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2)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는 뜰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며, 양측에는 범포를 달아 그물이 수직과 좌·우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다만, 연안안강망(낭장망, 주목망)어업에서 개량안강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범포를 대신하여 말뚝 또는 뽕침대를 전개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3) 자루그물 내부에 어류를 분류하는 그물을 여러 개 부착할 경우, 부착한 어류 분류망에는 어류 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그물코의 크기는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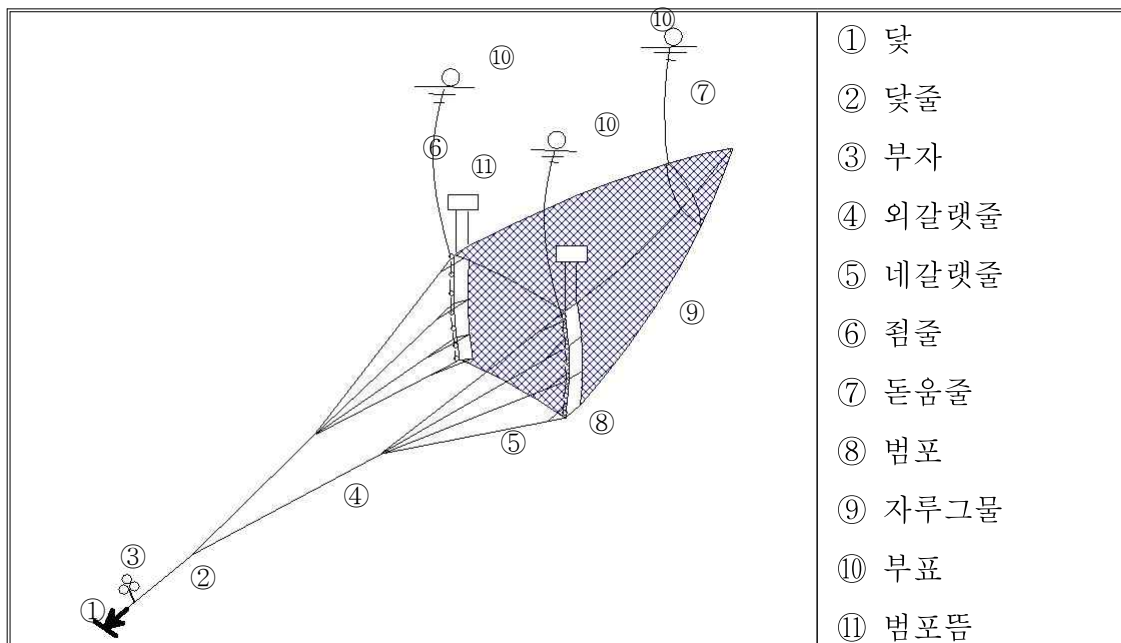
4) 5통 이내의 어구(어구용 닻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3과 같다.

- 1) 자루그물을 해저에 닻으로 고정 부설하여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다만, 연안안강망(낭장망, 주목망)어업에서 개량안강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개 이내에서 부설할 수 있다.
- 2) 어구 고정용 닻, 자루그물, 범포(쫓대 또는 뺨침대)를 투하한 뒤 줍줄,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 3)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투망의 역순으로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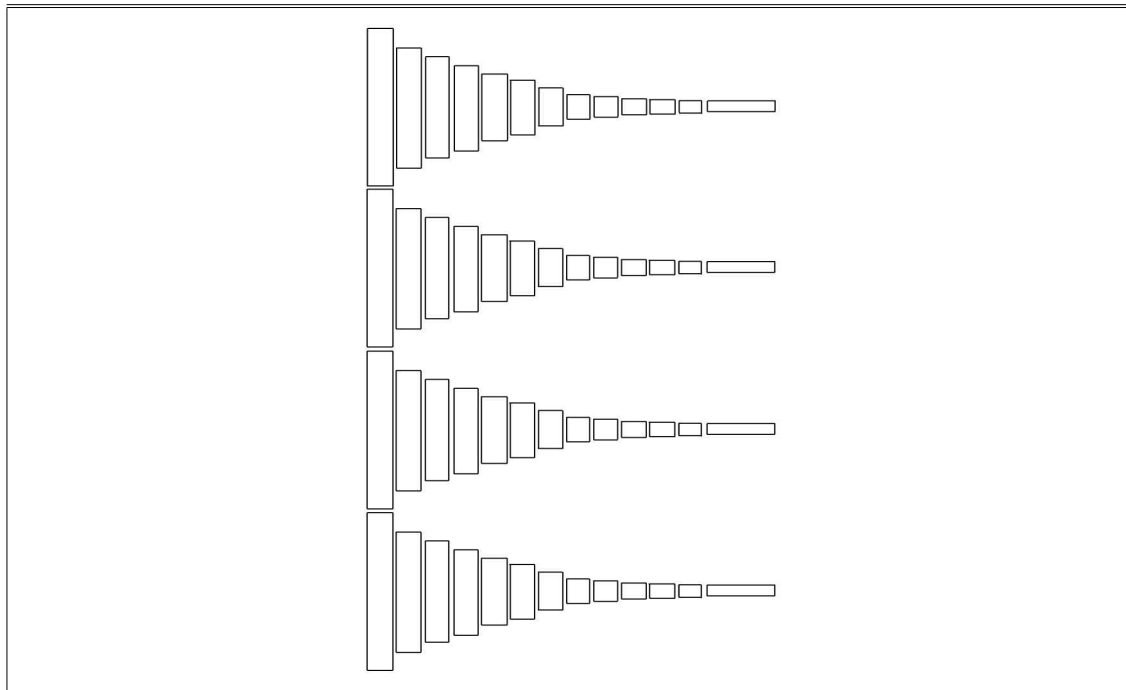
[부도 1-1]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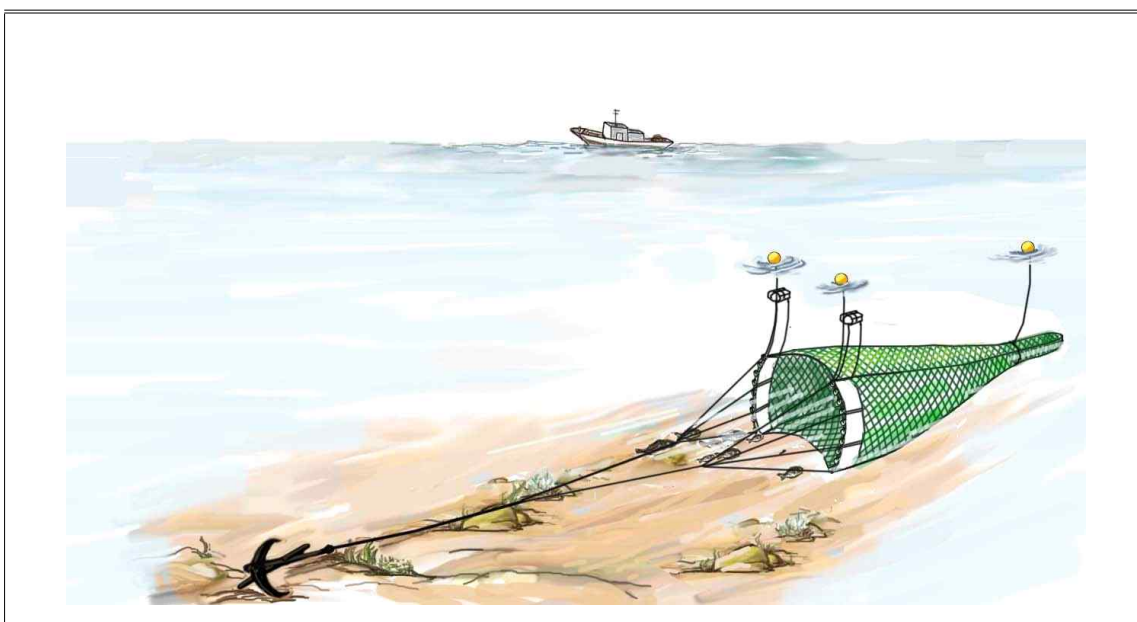
[부도 1-2]

연안개량안강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1-3]

연안개량안강망 조업모식도



2. 연안선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2-1 및 부도 2-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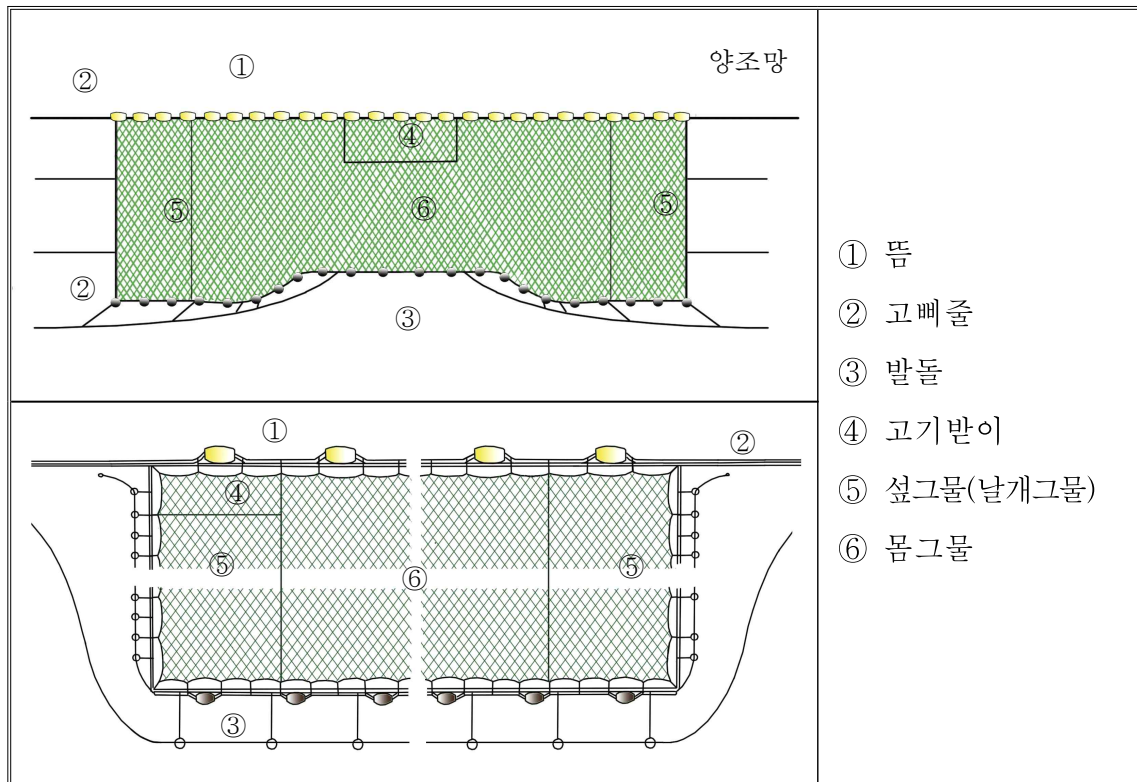
- 1)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섯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된 어구
- 2)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어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 또는 본선과 부속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쳐서 잡는 것으로서 어구를 예망해서는 안 되며, 조업모식도는 부도 2-3과 같다.

- 1) 본선에서 고삐줄과 줍줄이 연결된 부표를 투하하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표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부표를 다시 건져 올려 고삐줄과 줍줄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
- 2) 본선은 부속선에 고삐줄과 줍줄의 끝을 넘겨주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속선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고삐줄과 줍줄을 넘겨받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 이 경우 부속선은 본선에서 넘겨받은 고삐줄과 줍줄을 잡고 본선의 투망을 보조하다가 본선과 인접하게 되면 본선과 같이 어구의 일부를 양망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부속선에는 어구를 실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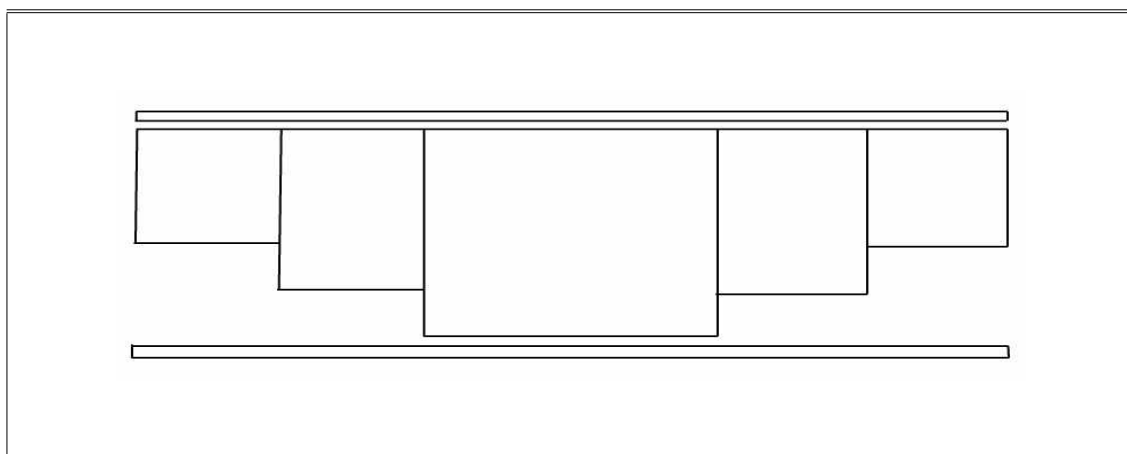
[부도 2-1]

연안선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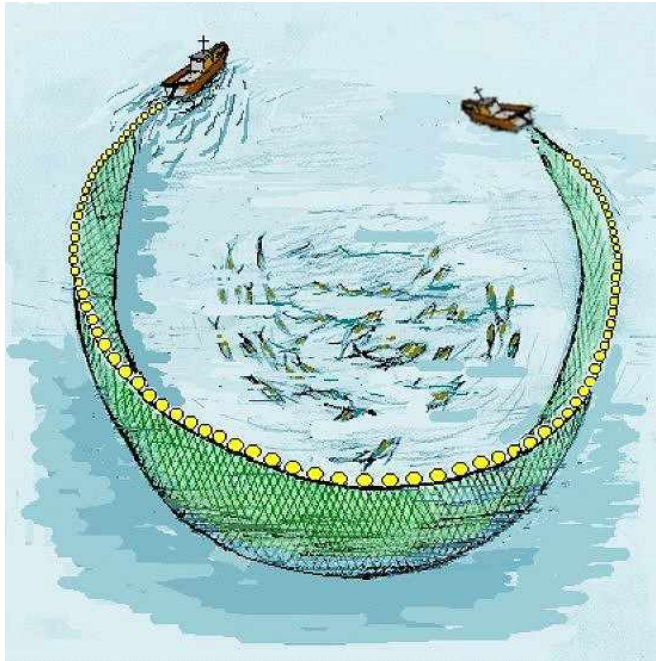
[부도 2-2]

연안선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2-3]

연안선망 조업모식도



3. 연안통발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3-1 및 부도 3-2와 같다.

- 1) 일정한 형태의 고정된 테 위에 그물 등을 씌운 것으로서 윗면 또는 옆면에 입구가 있는 어구
- 2) 합성수지·철사·나무 등으로 제작된 통발인 경우에는 그물코의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제작된 어구
- 3) 또는 합성수지로 된 긴 원통의 한쪽 또는 양쪽에 깔때기 모양의 입구가 있는 어구
- 4) 가로·세로·높이(원통형인 경우 지름)의 길이를 각각 120센티미터 이하로 제작한 어구
- 5) 허가받은 어선은 다음의 어구량을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의 보호와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다음의 어구량 및 통발 간격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량 및 통발 간격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어구량 및 통발간격 범위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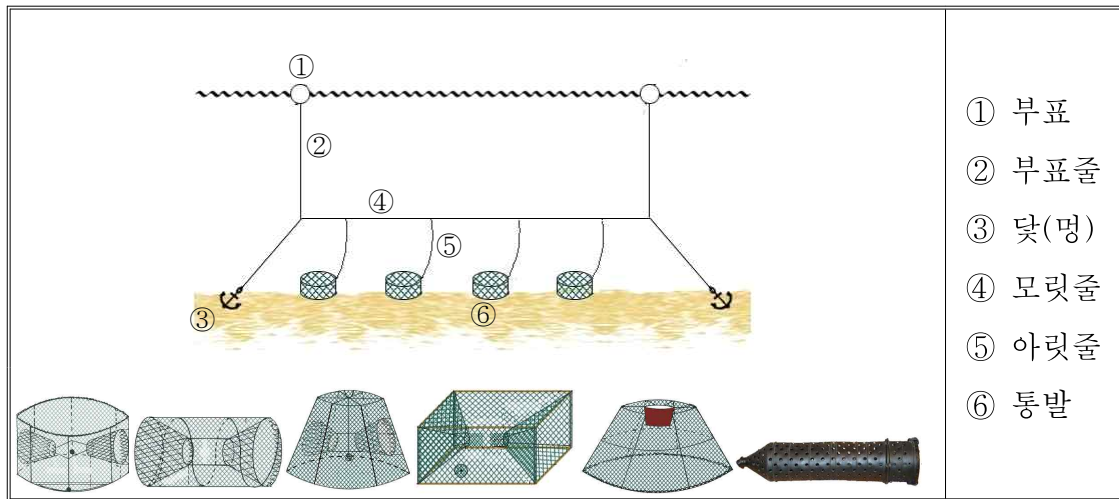
어구량 및 통발 간격
○ 통발의 개수는 2,500개. 다만, 동해안은 4천개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미터 이내 ※ 다만, 장어를 주로 포획하려는 경우 통발의 개수는 3,200개,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발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3-3과 같다.

- 1) 통발 1개씩을 부표에 직접 달아 부설하거나 여러 개의 통발을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 부설한다.
- 2) 부표, 닻(명), 통발이 달린 모릿줄, 닻(명), 부표 순서로 투승한다.
- 3)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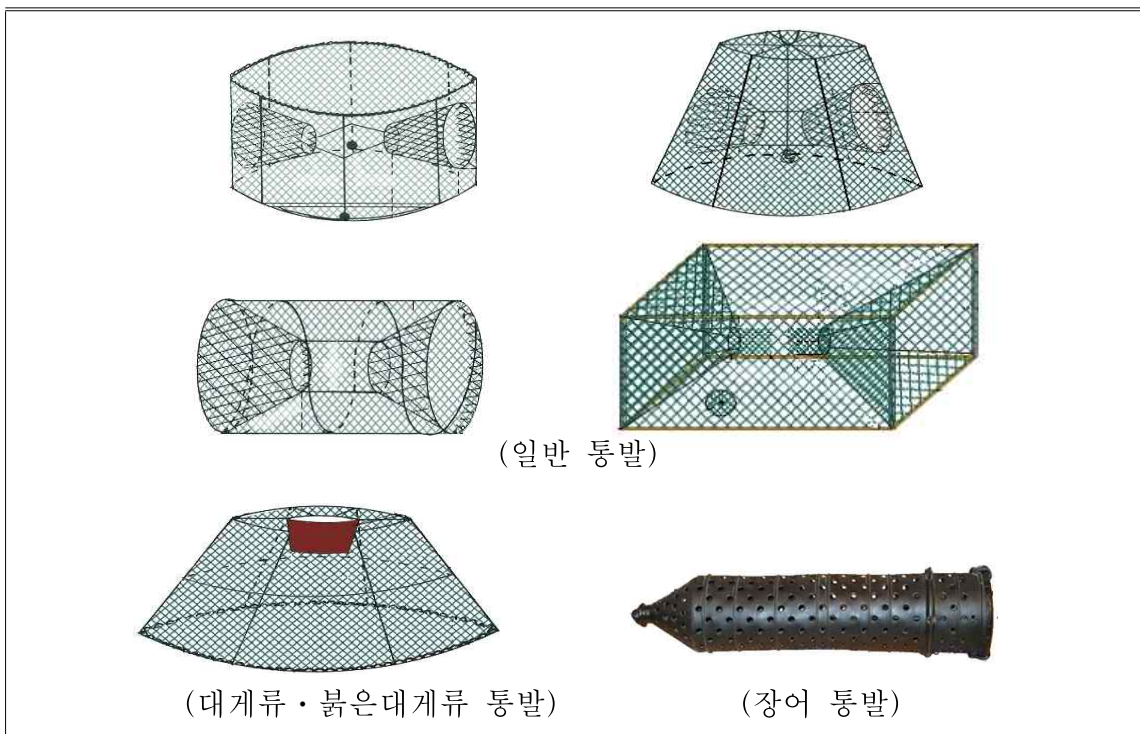
[부도 3-1]

연안통발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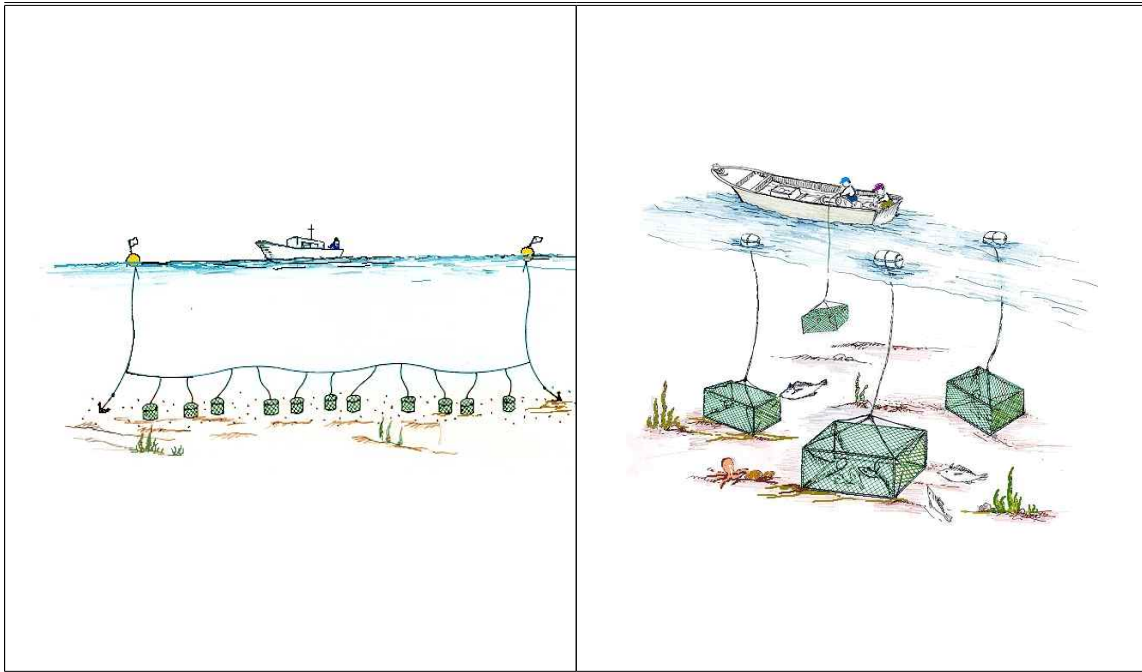
[부도 3-2]

연안통발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3-3]

연안통발 조업모식도



4. 연안조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4-1 및 부도 4-2와 같다.

-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날개그물 앞쪽 끝에 갯대를 부착하고 갯대와 갯대 사이에는 대나무나 쇠파이프 등의 막대를 부착하여 어구의 입구가 좌·우로 벌어지게 구성된 어구
- 3) 망 입구에 설치한 막대의 길이가 12미터 이하인 어구
- 4) 막대와 자루그물 입구사이에 체인을 설치하지 않은 어구
- 5) 막대의 좌·우 갯대에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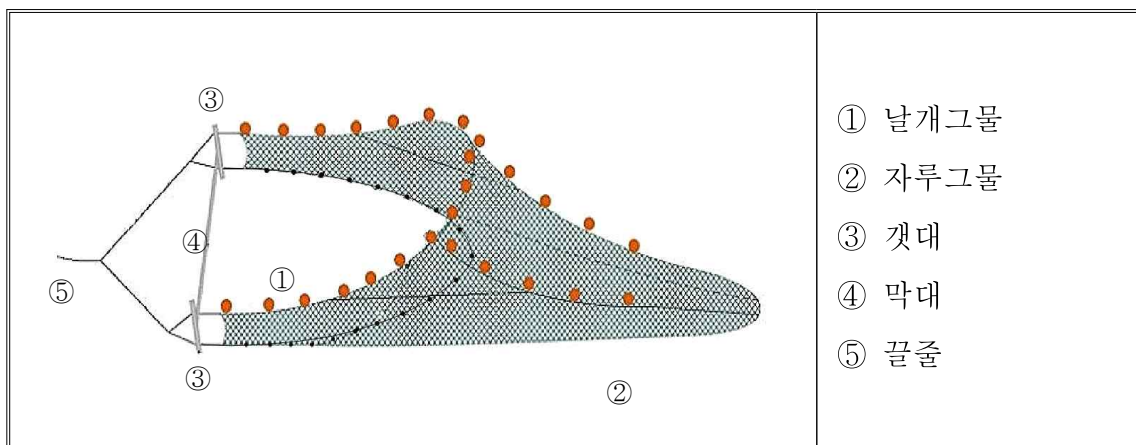
* 갯대: 날개그물의 끝을 상·하로 벌려주는 철봉이나 나무로 된 장치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새우류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4-3과 같다.

- 1) 현측 또는 선미에서 자루그물부터 투망하고, 1가닥의 끌줄을 내어 준 후 저층을 끌면서 새우류를 포획한다.
- 2)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을 감아 들어 막대를 선체에 고정시킨 후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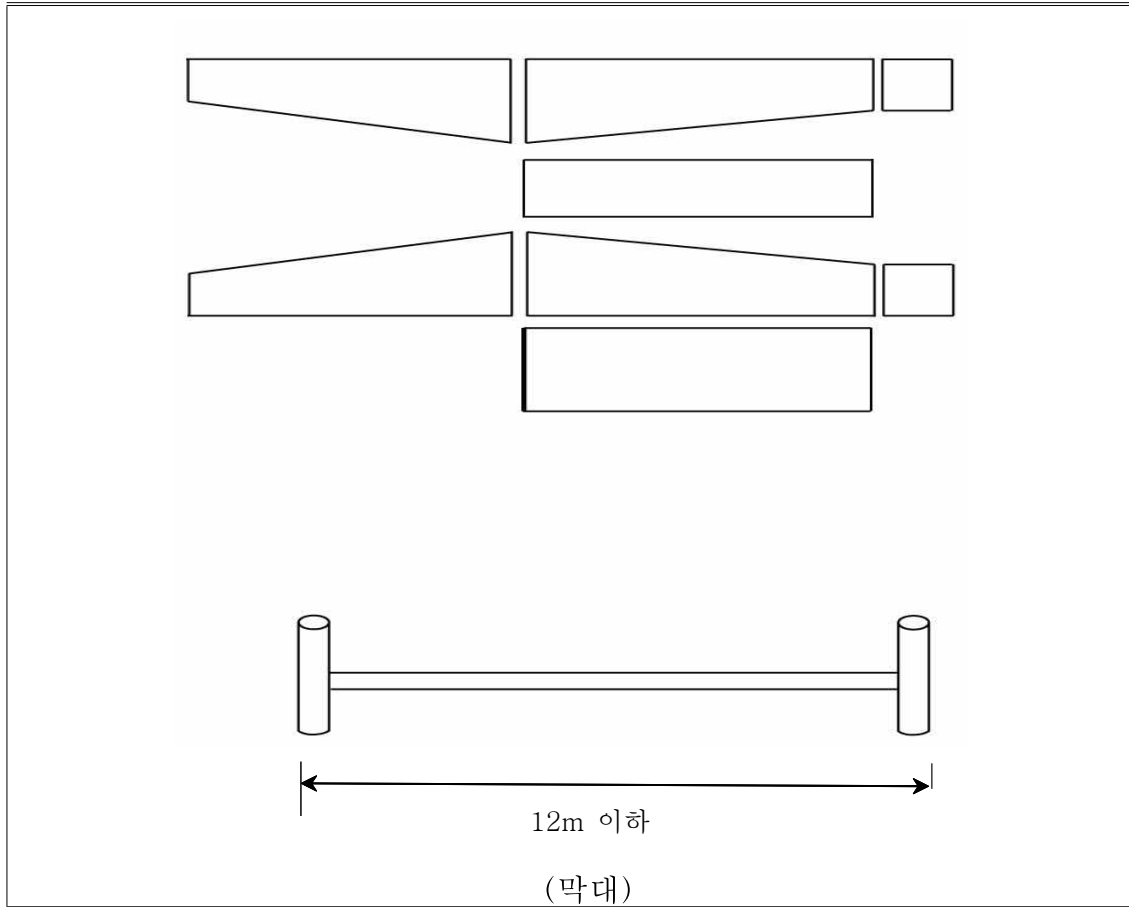
[부도 4-1]

연안조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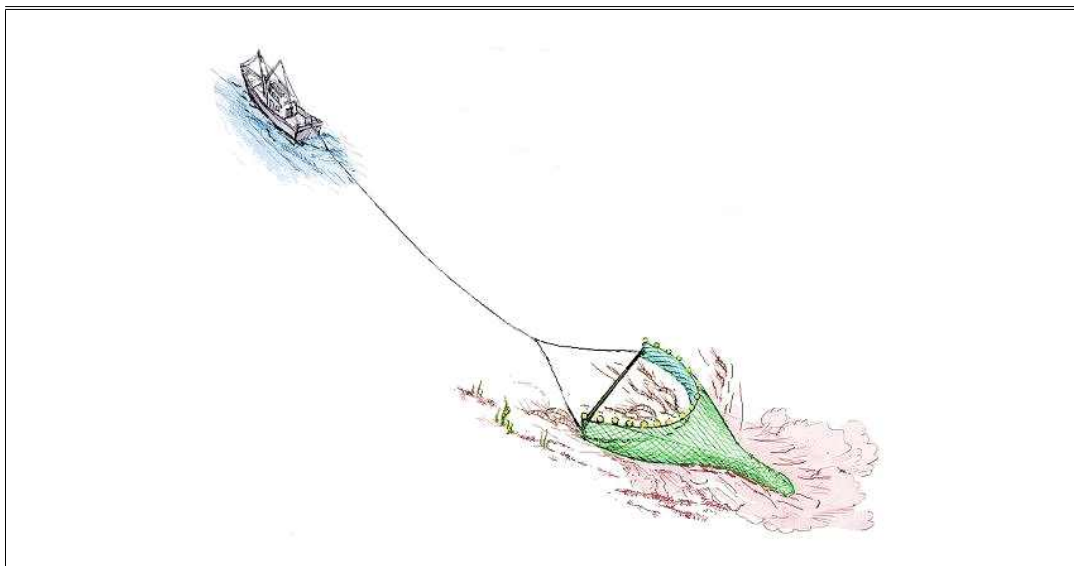
[부도 4-2]

연안조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4-3]

연안조망 조업모식도



5. 연안선인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5-1 및 부도 5-2와 같다.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2) 망구전개판을 부착하지 않은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2척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멸치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5-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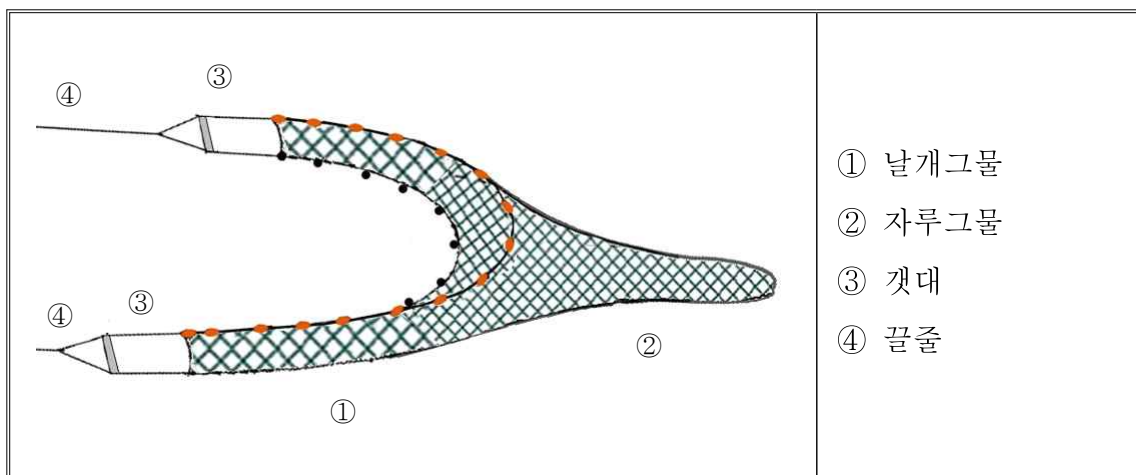
1) 주선은 선미에서 자루그물, 날개그물, 끌줄 순서로 투망한다.

2) 투망이 완료되면 종선은 주선으로부터 끌줄 1가닥을 넘겨받아 선체에 고정시키고, 주선과 종선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표층 또는 중층을 예망(저층을 예망해서는 안 된다)한다.

3) 예망이 완료되면 주선은 종선으로부터 끌줄을 넘겨받아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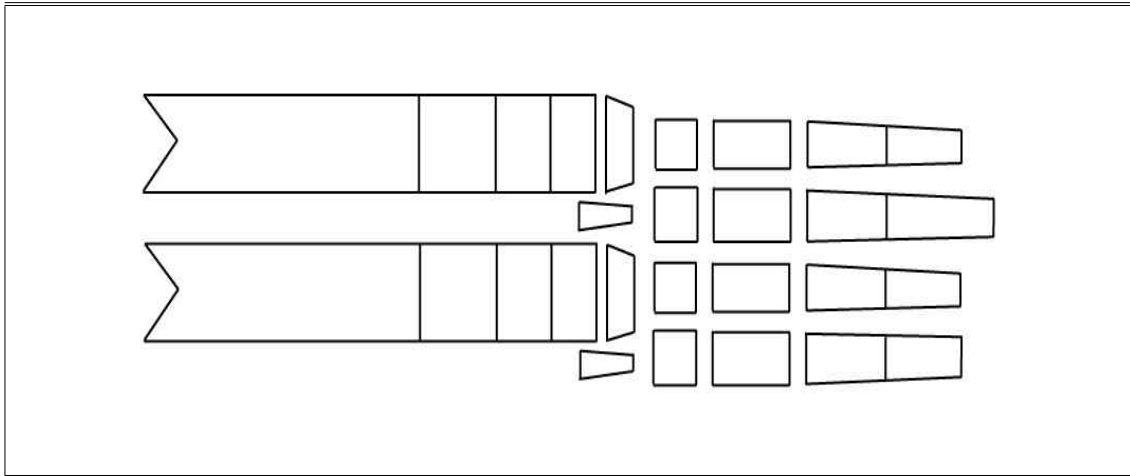
[부도 5-1]

연안선인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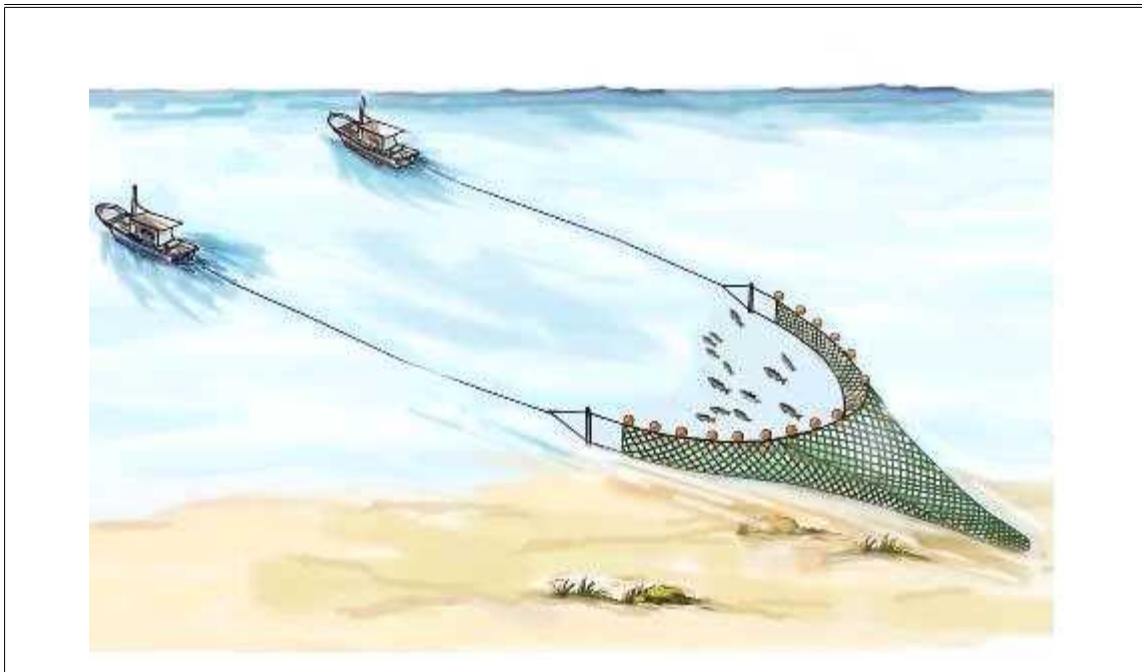
[부도 5-2]

연안선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5-3]

연안선인망 조업모식도



6. 연안자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6-1 및 부도 6-2와 같다.

- 1) 직사각형의 띠 모양의 그물에 상부에는 뜬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그물이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 2) 홑 그물로 구성된 어구
- 3) 뺨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뺨침대를 뜬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방향으로 부착한 어구
- 4) 허가받은 어선은 다음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의 보호와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위해 다음의 어구량 범위에서 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량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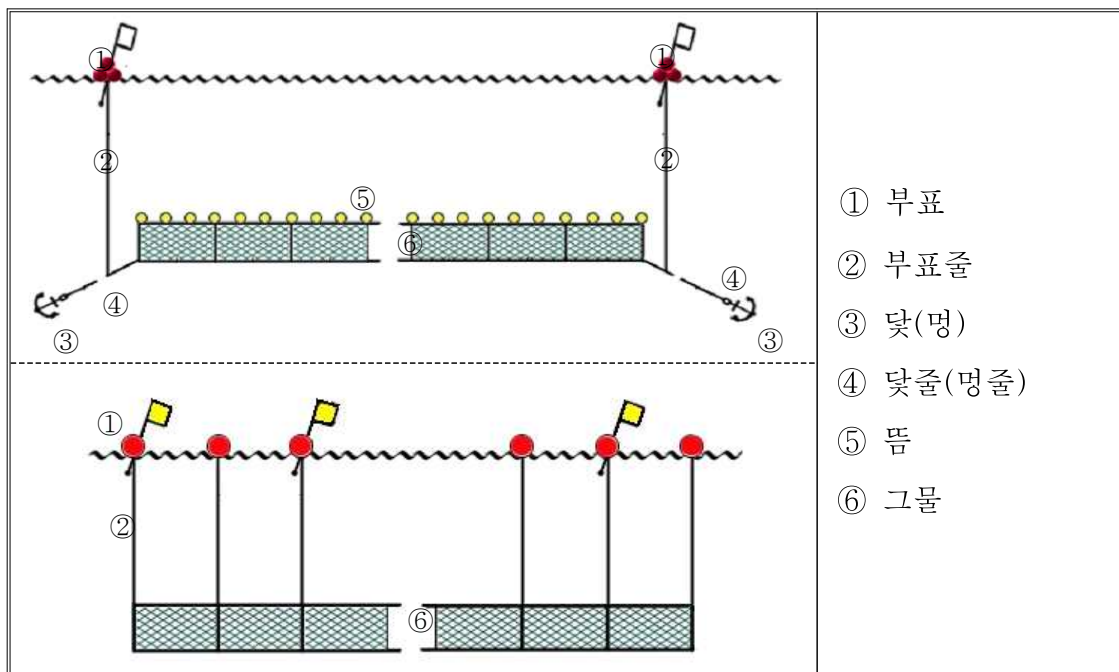
어구량
가) 뺨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천광역시·경기도 해역에서 꽃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뺨침대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1만 2천미터[동해안(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을 말한다)에서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0일까지 3만 5천미터]. 다만, 어선에는 3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다.
나) 뺨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인천광역시·경기도 해역에서 꽃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뺨침대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천 5백미터 이내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그물에 낚히거나 얹히도록 잡는 것으로 조업모식도는 부도 6-3과 같다. 다만, 수산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뺨침대를 부착한 경우에는 수산동물을 그물에 갇히도록 포획할 수 있다.

- 1) 부표, 닻(명), 그물, 닻(명),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 2)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망한다.
- 3) 표층, 중층, 저층에 고정 부설하거나 해류나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부설한다. 다만, 해류나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어구를 부설할 경우에는 닻(명)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 4) 어구를 예망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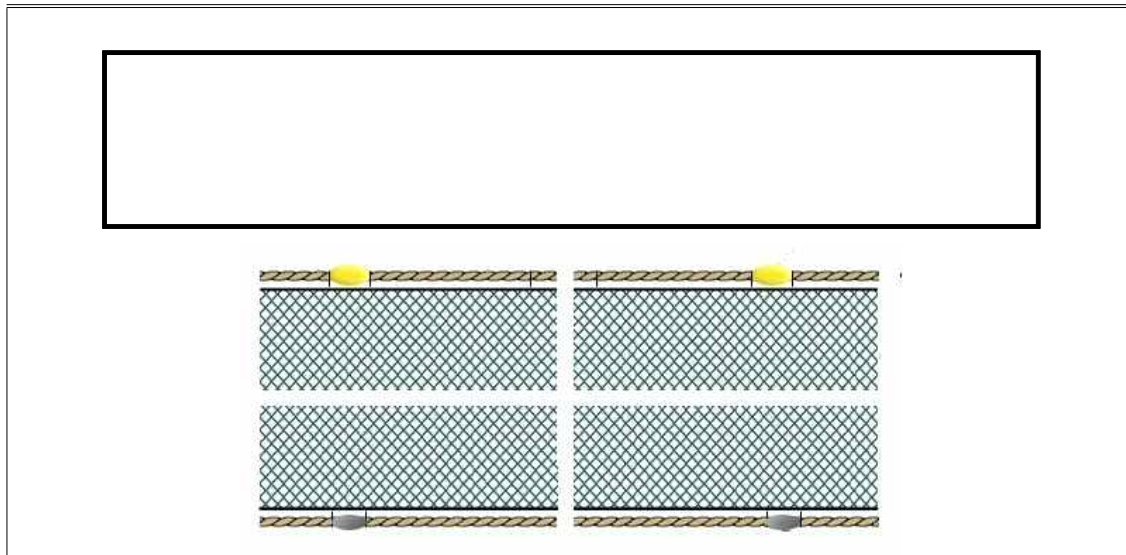
[부도 6-1]

연안자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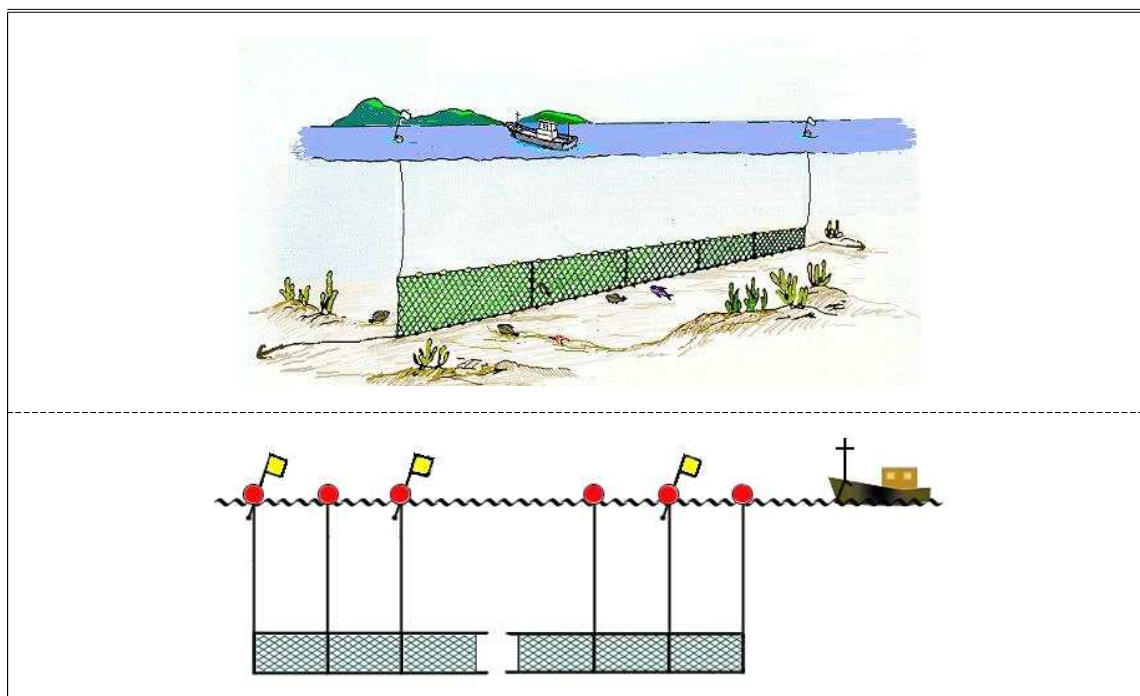
[부도 6-2]

연안자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6-3]

연안자망 조업모식도



7. 연안들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7-1 및 부도 7-2와 같다.

1) 그물에 테가 없는 사각형 모양 등의 그물과 돈움줄로 구성되거나 그물의 위 언저리에 테가 있는 형태와 돈움줄로 구성된 어구(들망)

2) 기다란 찻대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초망)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 또는 본선과 부속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들어 올려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7-3과 같다.

1) 물속에 미리 어구를 수평으로 부설하여 수산동물이 어구 위에 오면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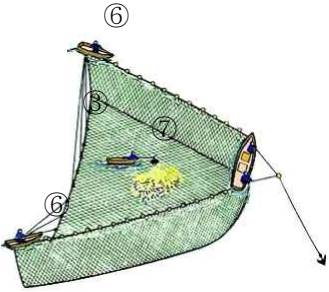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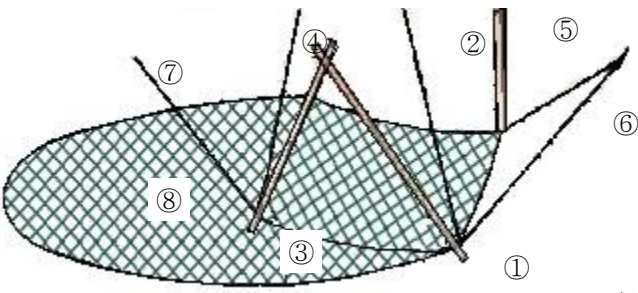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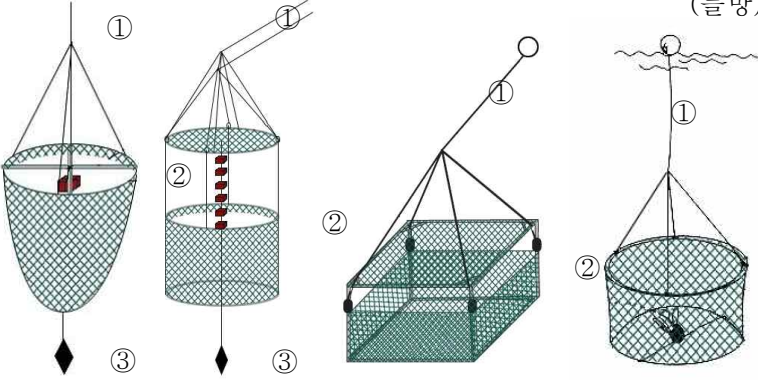
2) 1) 또는 물속에 미리 어구를 부설 해 놓고 수산동물을 어구 속으로 유도하여 어구 속으로 들어가면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3) 야간에는 집어등을 사용한 조업이 가능하다.

4) 어구를 예망해서는 안 된다.

[부도 7-1]

연안들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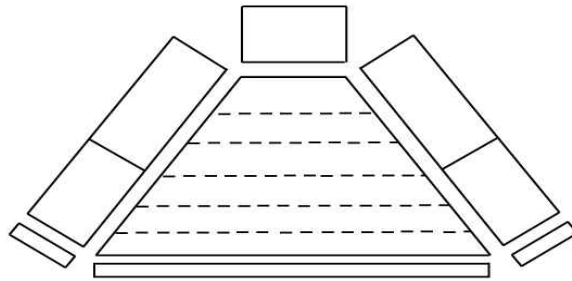
 (삼척들망)	① 닛 ② 닛줄 ③ 돈움줄 ④ 뜸 ⑤ 본선 ⑥ 부속선 ⑦ 불배
 (초망)	① 큰챗대 ② 큰챗대줄 ③ 작은챗대 ④ 작은챗대줄 ⑤ 콧대 ⑥ 앞잡이줄 ⑦ 뒷잡이줄 ⑧ 자루그물
 (들망)	① 돈움줄 ② 고정테 ③ 추

[부도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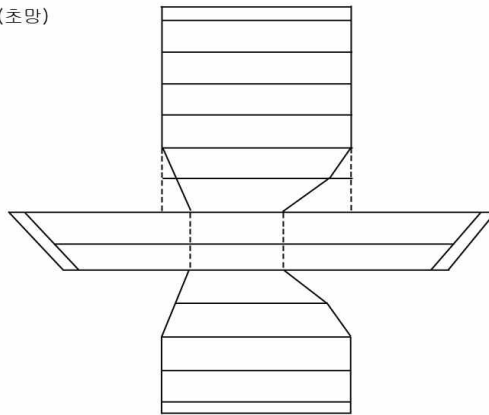
연안들망 표준어구 구성도

(삼척들망)

(초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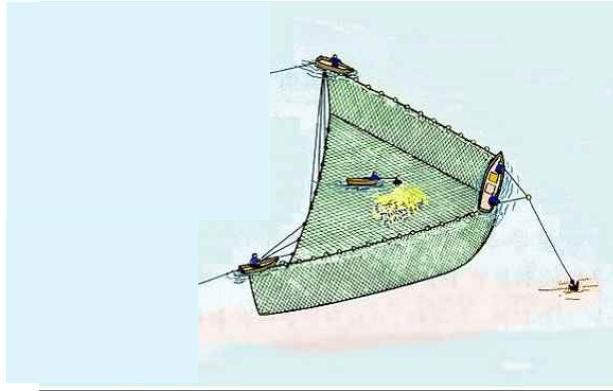
(초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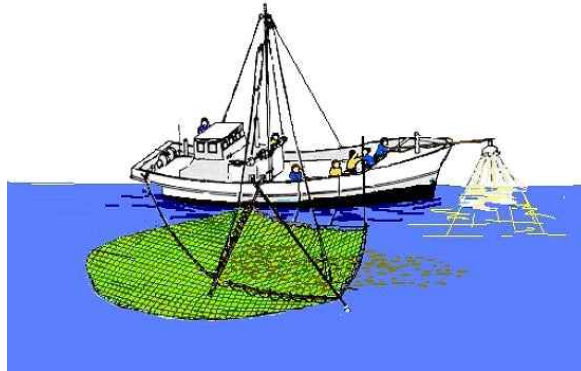
[부도 7-3]

연안들망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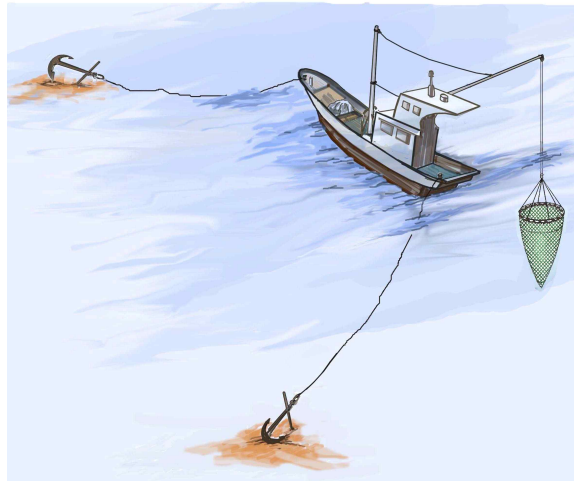
(삼척들망)



(초망)



(들망)



8. 연안복합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는 부도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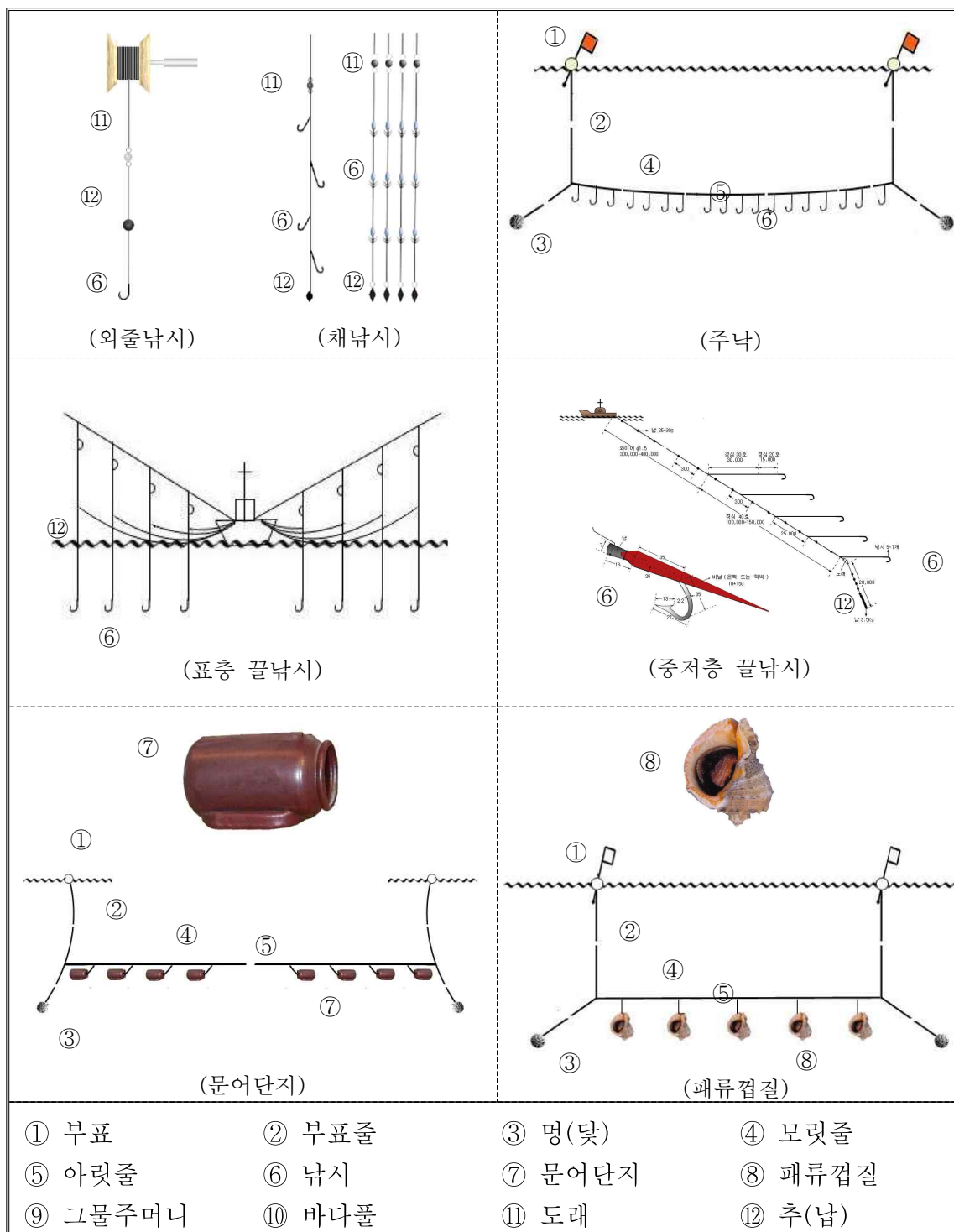
- 1) 낚시어구: 주낙, 외줄낚시, 끝낚시, 채낚시 등 낚시로 구성된 어구
- 2) 문어단지어구: 토기,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단지 형태로 제작된 어구
- 3) 패류껍질어구: 패류껍질, 토기 또는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패류껍질 형태로 제작된 어구
- 4) 패류미끼망어구: 미끼를 넣을 수 있는 그물주머니로 구성된 어구
- 5) 손꽂이어구: 바다풀 또는 대나무 등을 엮어서 구성된 어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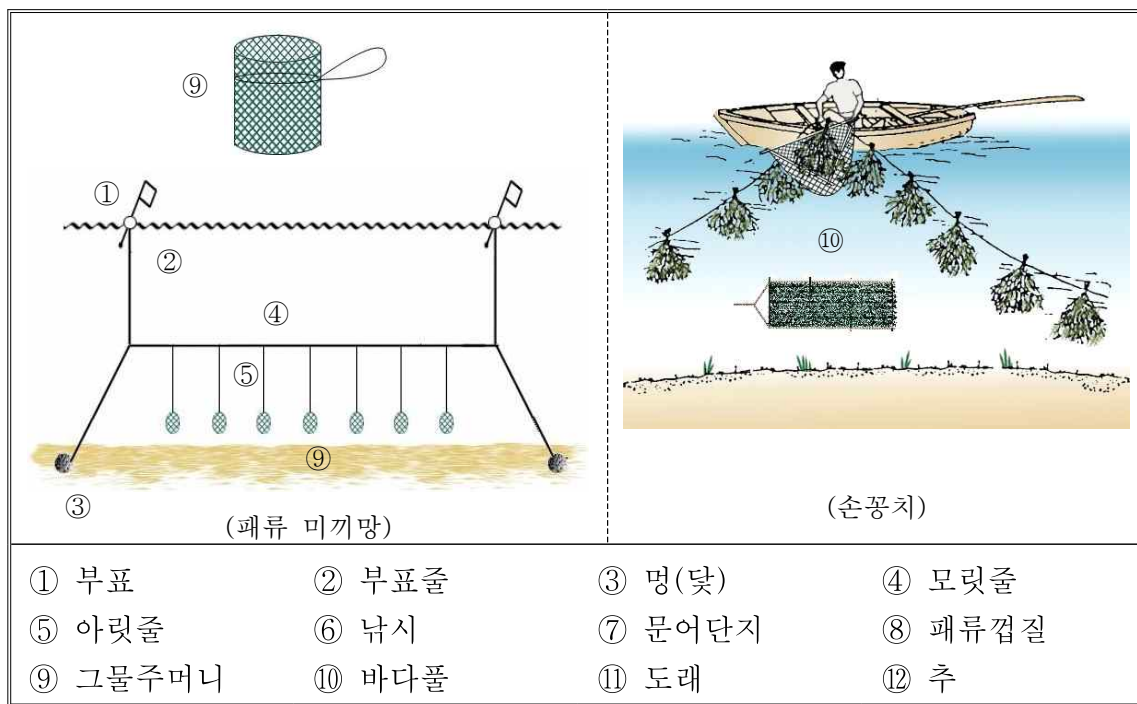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8과 같다.

- 1) 낚시어구의 사용 어법: 가목1)의 어구를 모릿줄, 낚싯대, 조획기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낚거나 채어서 포획한다.
- 2) 문어단지어구의 사용 어법: 가목2)의 어구를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를 달아 부설하여 그 속에 들어온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 3) 패류껍질어구 사용 어법: 가목3)의 어구를 긴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를 달아 물속에 부설하여 그 속에 들어온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 4) 패류미끼망어구의 사용 어법: 가목4)의 어구를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를 달아 물속에 부설하여 미끼주머니에 달라붙은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으로 미끼를 넣은 그물주머니의 입구가 닫혀진 상태에서 패류가 부착되도록 해야 한다.
- 5) 손꽂이어구의 사용 어법: 가목5)의 어구를 꽂치 산란장에 띄워 놓았다가 꽂치가 모이면 손이나 족대그물로 꽂치를 포획한다.

[부도 8]

연안복합어업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IV. 구획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1. 건간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1 및 부도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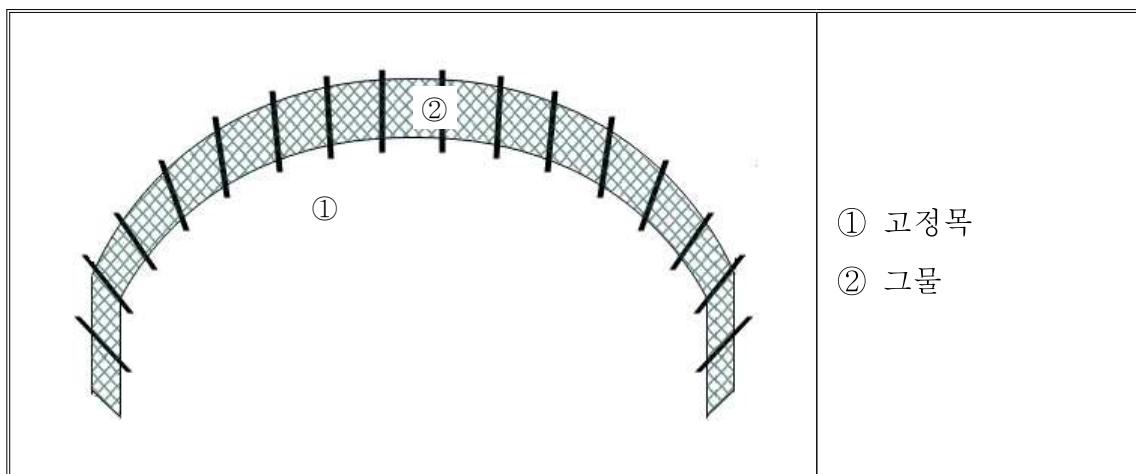
- 1) 여러 개의 고정목을 해저에 박고 그물을 병풍처럼 부착한 어구
- 2) 병풍처럼 쳐진 그물에 고깔 형태의 그물을 부착할 수 있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허가된 구획 안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1과 같다.

- 1) 간조 시 바닥이 드러나거나 수심이 얇은 곳에 활, 반원, 원 등의 모양으로 고정목을 부설하고 고정목에 그물을 설치한다.
- 2) 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수산동물이 썰물 때 그물에 갇히게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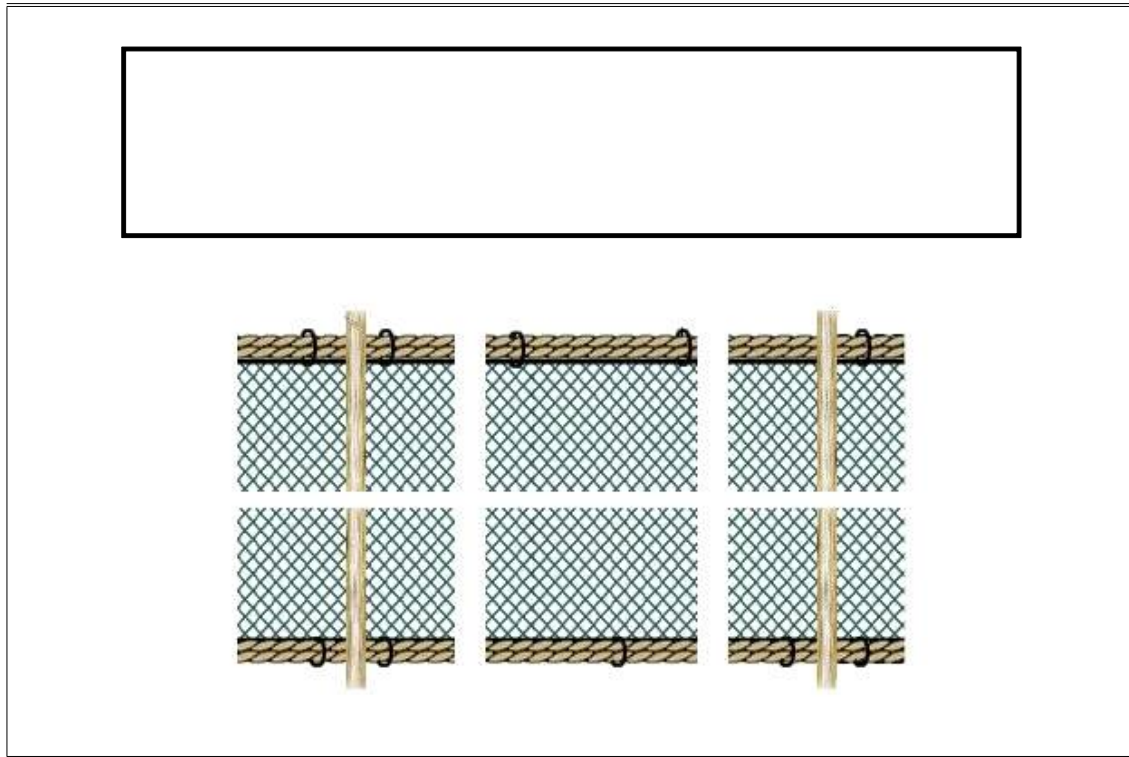
[부도 1-1]

건간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부도 1-2]

건간망 표준어구 구성도



2. 건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2-1 및 부도 2-2와 같다.

1)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된 어구

2) 통그물은 헛통과 원통으로 구성된 어구

3) 2)의 원통 입구(안)에 비탈그물을 부착할 수 있다.

* 길그물: 어군의 통로를 차단하여 어군을 통그물로 유도하기 위한 그물

* 통그물: 길그물의 바닷쪽 끝에 설치되어 어군을 가두어 두기 위한 우리. 헛통과 원통으로 구성된다.

* 원통: 어군을 최종적으로 가두어서 어획을 마무리 하는 곳

* 비탈그물: 헛통에 있는 어군을 원통으로 유도하는 경사진 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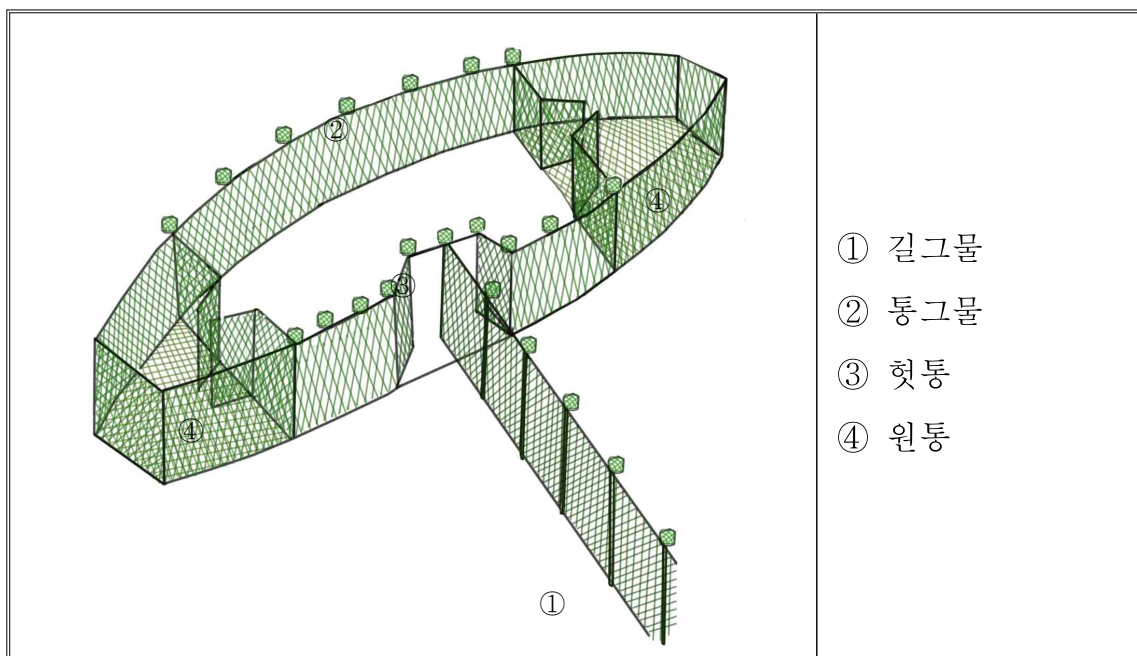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허가된 구획 안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2-1과 같다.

1)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띠 모양의 길그물을 설치하고, 길그물의 한쪽 끝에 통그물을 설치한다.

2) 통그물의 원통을 한쪽부터 들어 올려 원통의 한쪽으로 수산동물을 몰아서 포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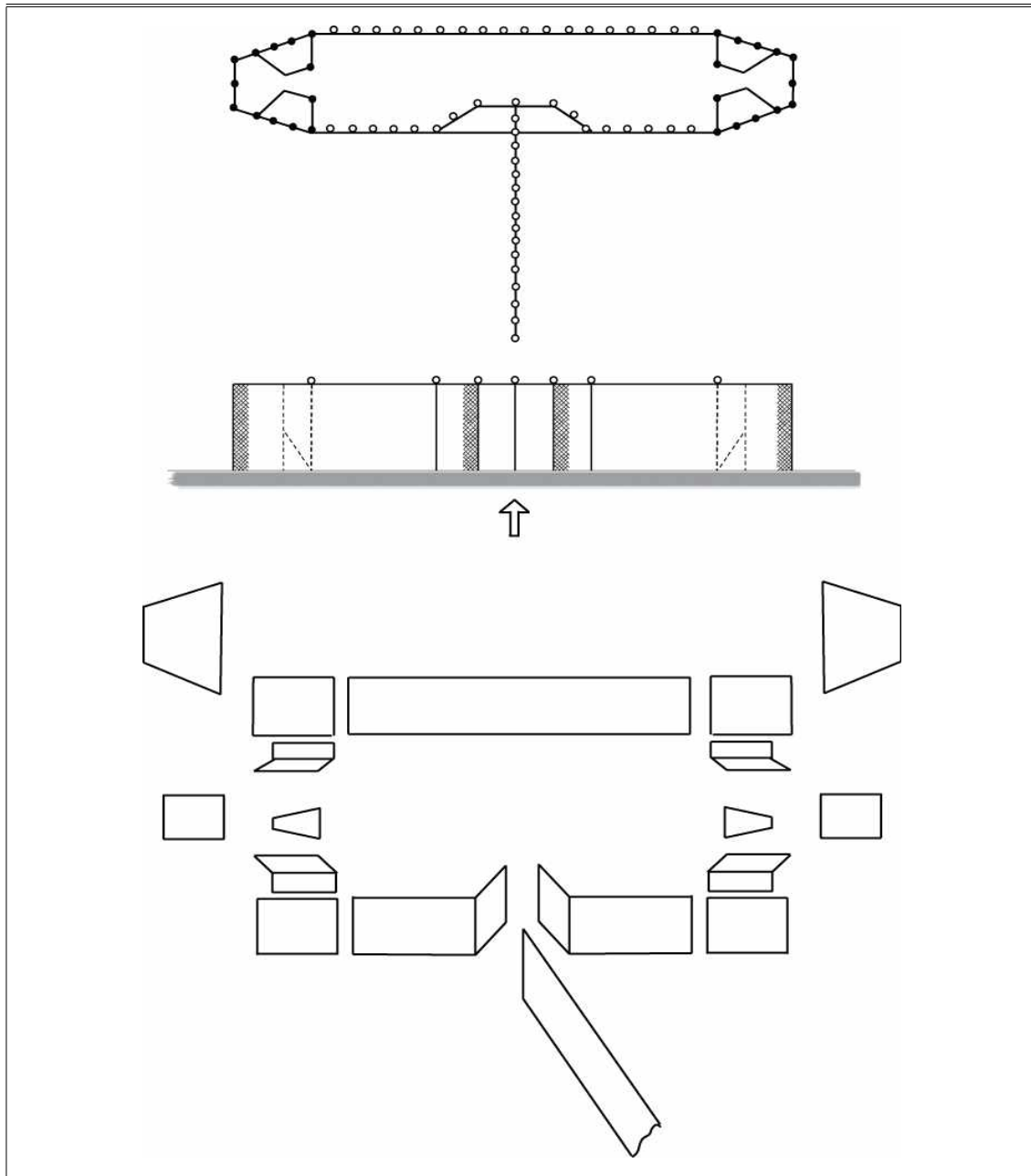
[부도 2-1]

건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부도 2-2]

건망 표준어구 구성도



3. 들망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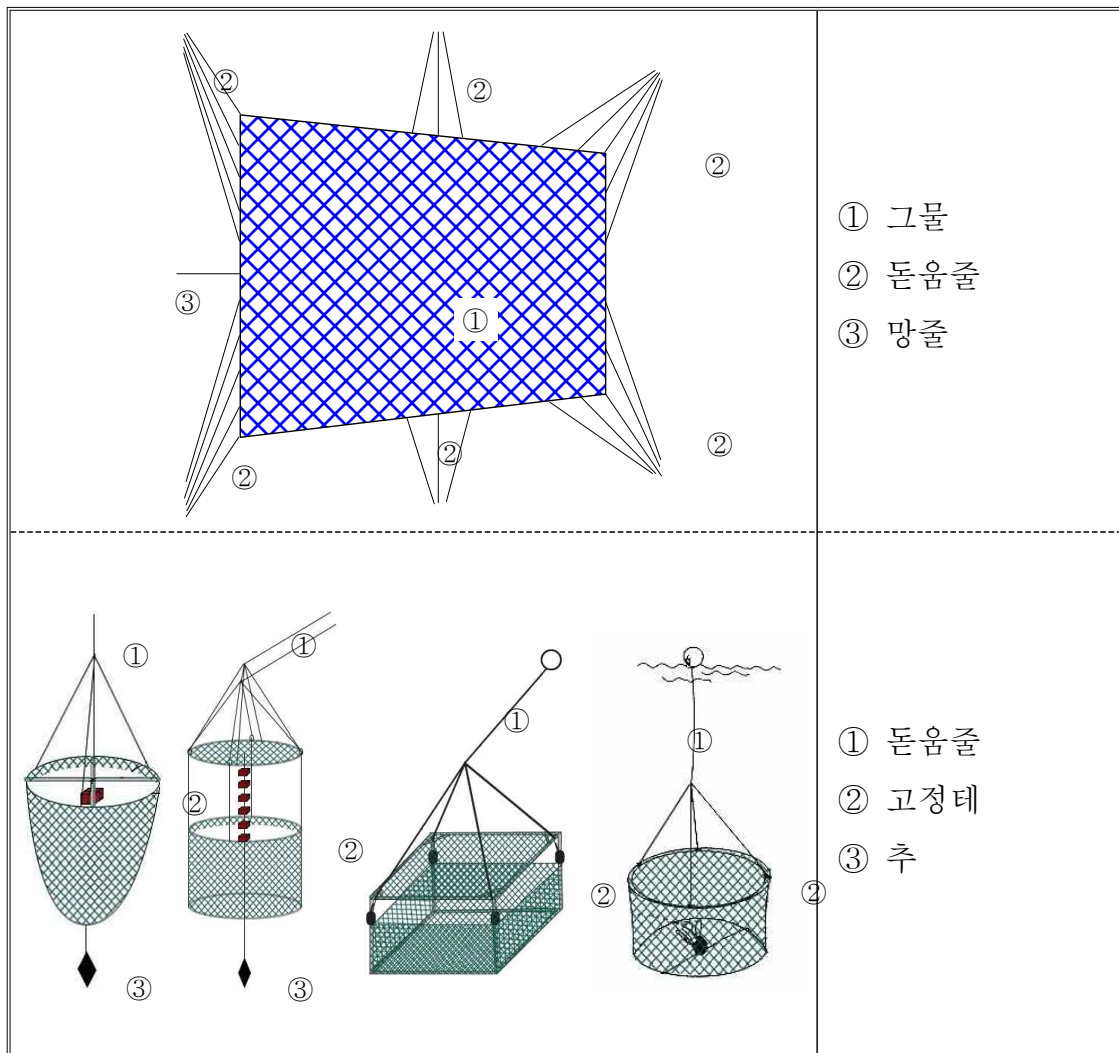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그물에 테가 없는 사각형 모양 등의 그물과 돌움줄로 구성되거나 그물의 위 언저리에 테가 있는 형태와 돌움줄로 구성된 어구

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3-1 및 부도 3-2와 같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허가된 구획 안에서 본선이나 본선 및 부속선[어업용 부유(浮遊)구조물을 포함한다]이 물속에 미리 수평으로 부설하여 수산동물이 어구 위에 오면 사람이나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어구를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3-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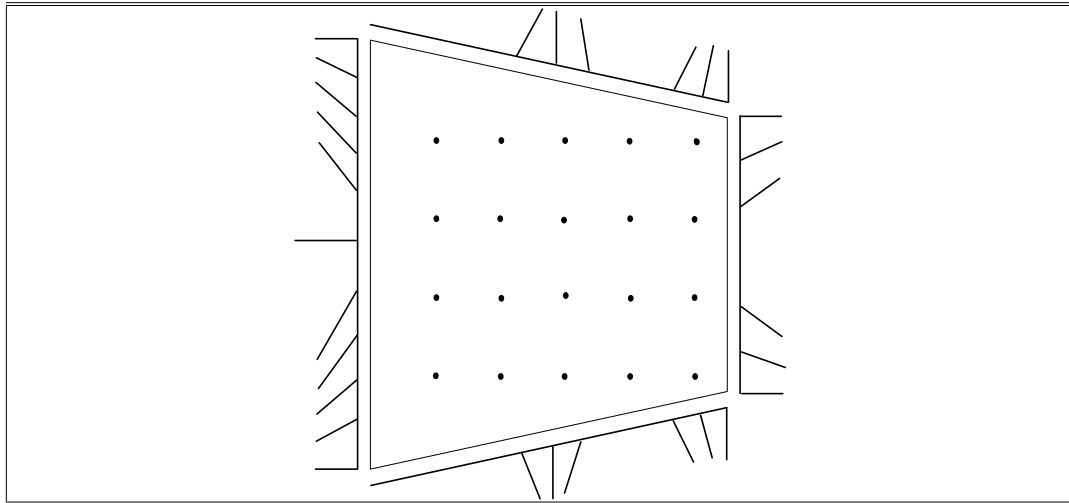
[부도 3-1]

들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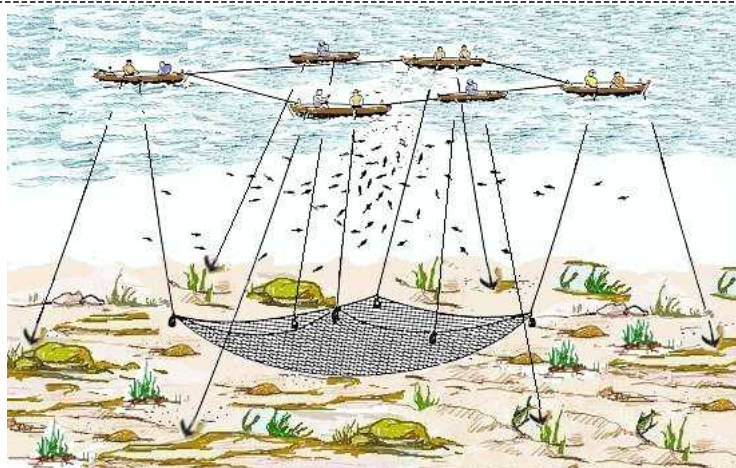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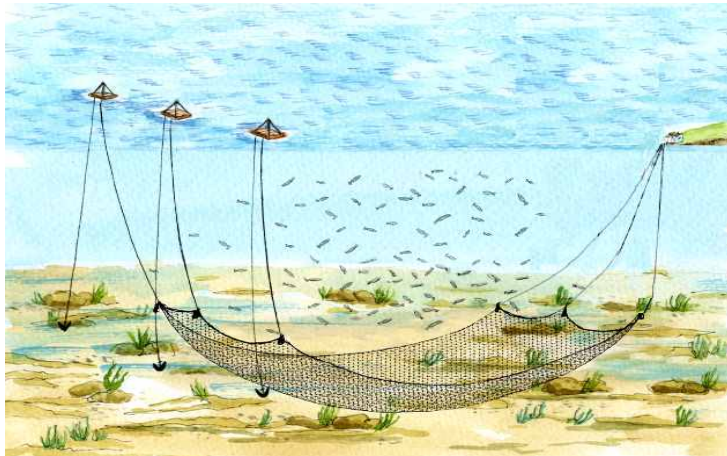
[부도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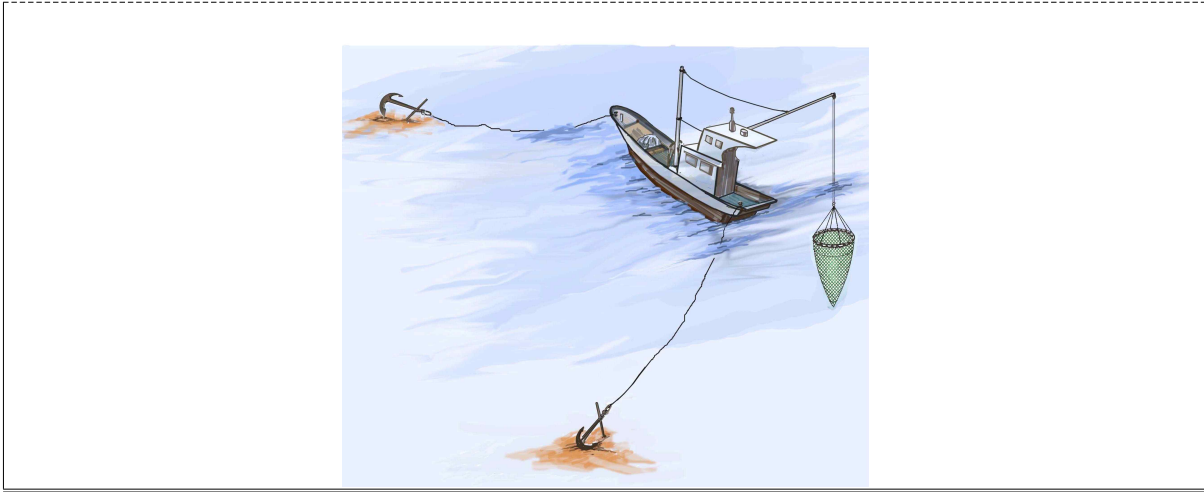
들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3-3]

들망 조업모식도





4. 선인망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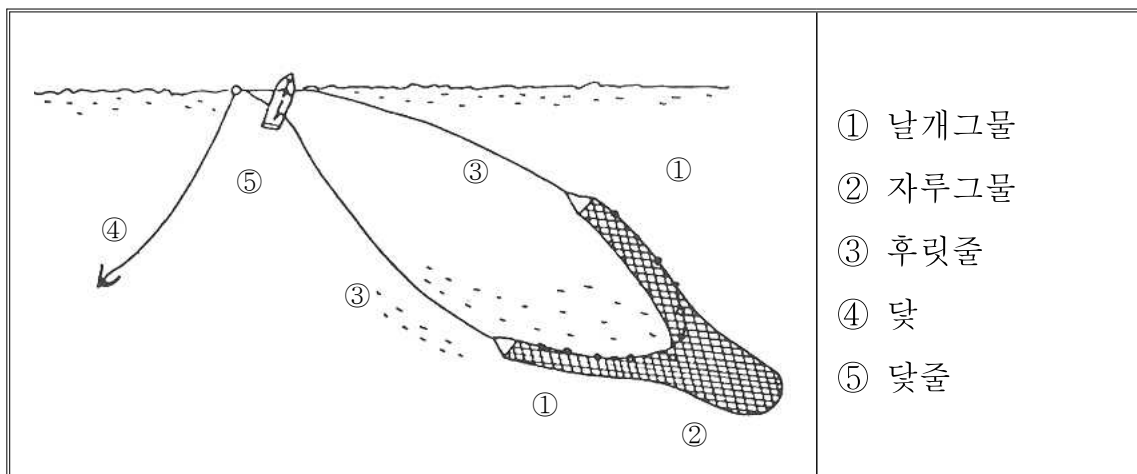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4-1 및 부도 4-2와 같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허가된 구획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4-1과 같다.

- 1) 한쪽 날개그물, 자루그물, 다른 쪽 날개그물 순서로 투망한다.
- 2) 끌줄 길이만큼 떨어진 곳에 닻을 투하하여 어선을 고정시킨 후 날개그물의 양 끝에 달린 끌줄을 어선에서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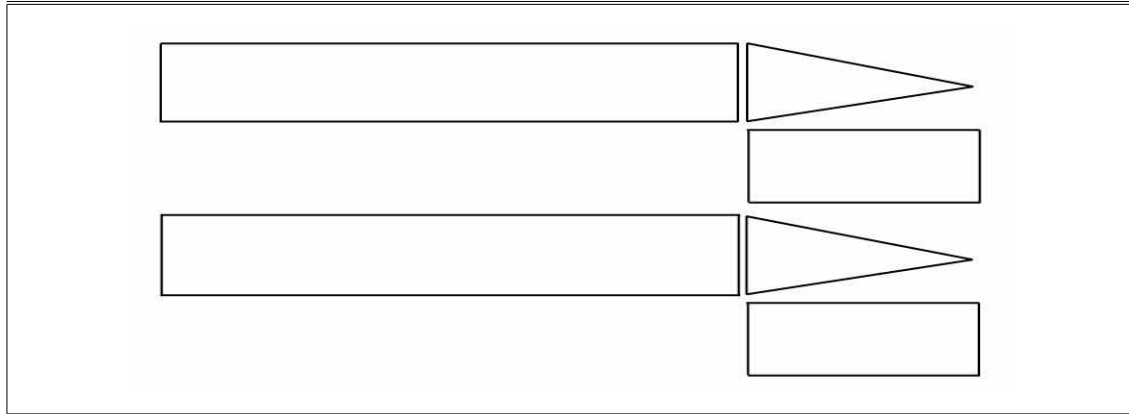
[부도 4-1]

선인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부도 4-2]

선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5. 승망류어업 (호망 · 승망 · 각망)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5-1 및 부도 5-2와 같다.

- 1)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통그물은 헛통과 고리테그물로 구성된 어구
- 3) 통그물에 고리테그물을 부착한 어구. 다만, 고리테그물 속에 깔때기를 부착할 수 있다.

* 헛통: 통그물로 유도된 어군이 1차적으로 머무르는 곳

* 고리테그물: 자루그물의 중간부분에 성형된 테(고리)를 부착한 나팔 모양의 그물(고리테그물의 개수에 따라 2각망, 3각망 등으로 구분한다)

* 깔때기: 자루그물 속에 부착되는 원추대 모양의 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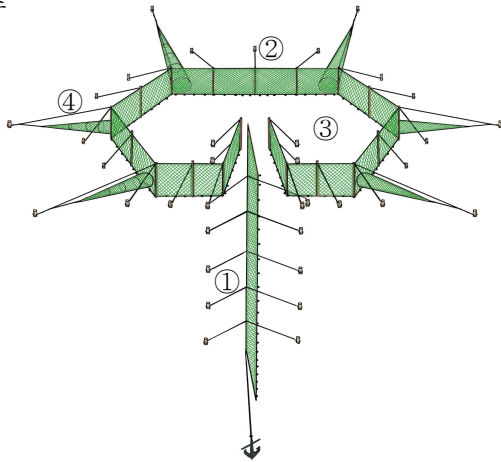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허가된 구획 안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5-1과 같다.

- 1)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띠 모양의 길그물을 설치하고, 길그물의 한쪽 끝에 삼각형 또는 사각형 모양의 통그물을 설치한다.
- 2) 통그물에 달린 고리테그물을 양망하여 어획물을 처리한 후 다시 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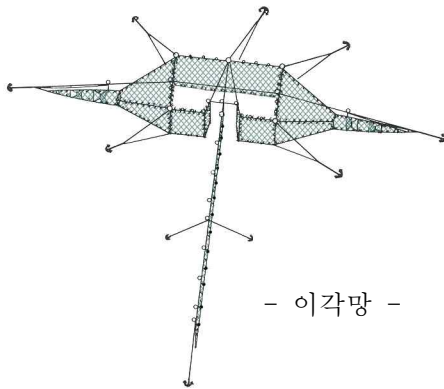
[부도 5-1]

승망류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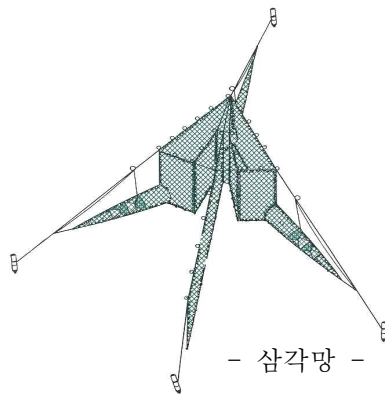
(호 망 · 승
망)



(각망)



- 이각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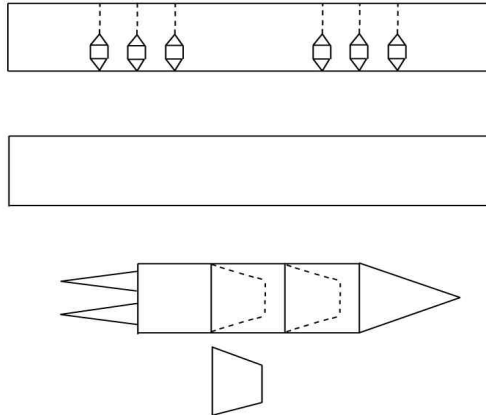
- 삼각망 -

- ① 길그물
- ② 통그물
- ③ 헛통
- ④ 고리테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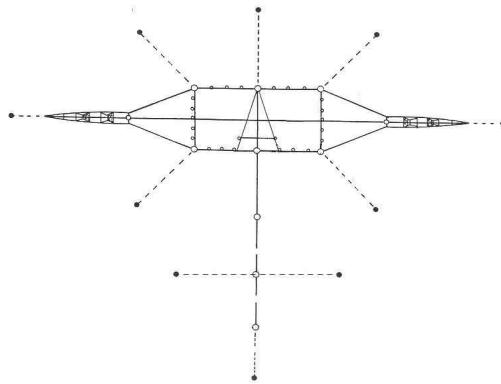
[부도 5-2]

승망류 표준어구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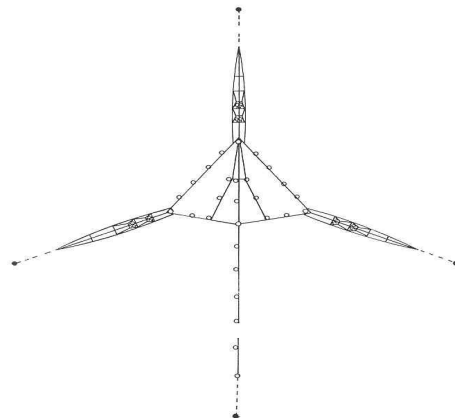
(호망 · 승망)



(각망)



- 이각망 -



- 삼각망 -

6. 안강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6-1 및 부도 6-2와 같다.

1)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2)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며, 양측에는 범포를 달아 그물이 수직과 좌·우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또는 자루그물 상부와 하부가 수해와 암해로 구성된 어구

* 수해: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 부착하는 부력이 있는 긴 나무 또는 쇠파이프

* 암해: 자루그물 입구 하부에 부착하는 침강력이 있는 긴 나무 또는 철봉

3) 자루그물 내부에 어류를 분류하는 그물을 여러 개 부착할 경우 부착한 어류 분류망에는 어류 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이때 그물코의 크기는 법적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허가된 구역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6-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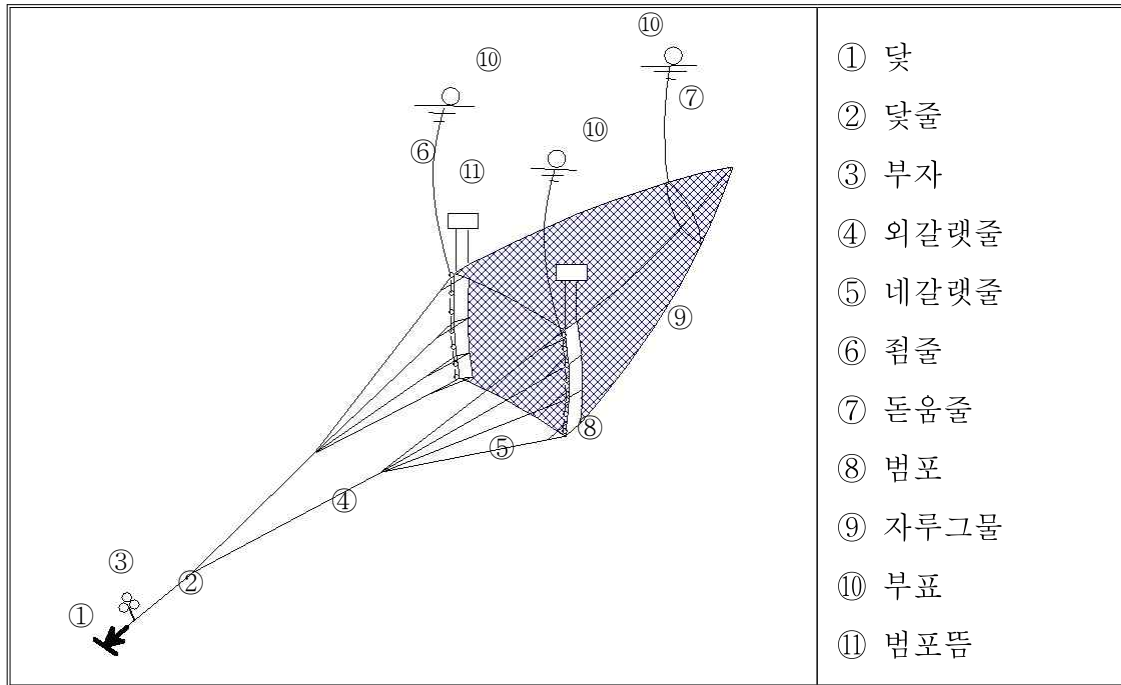
1) 자루그물을 해저에 닿으로 고정 부설하여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2) 어구 고정용 닻, 자루그물, 범포를 투하한 뒤 조임줄,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3)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투망의 역순으로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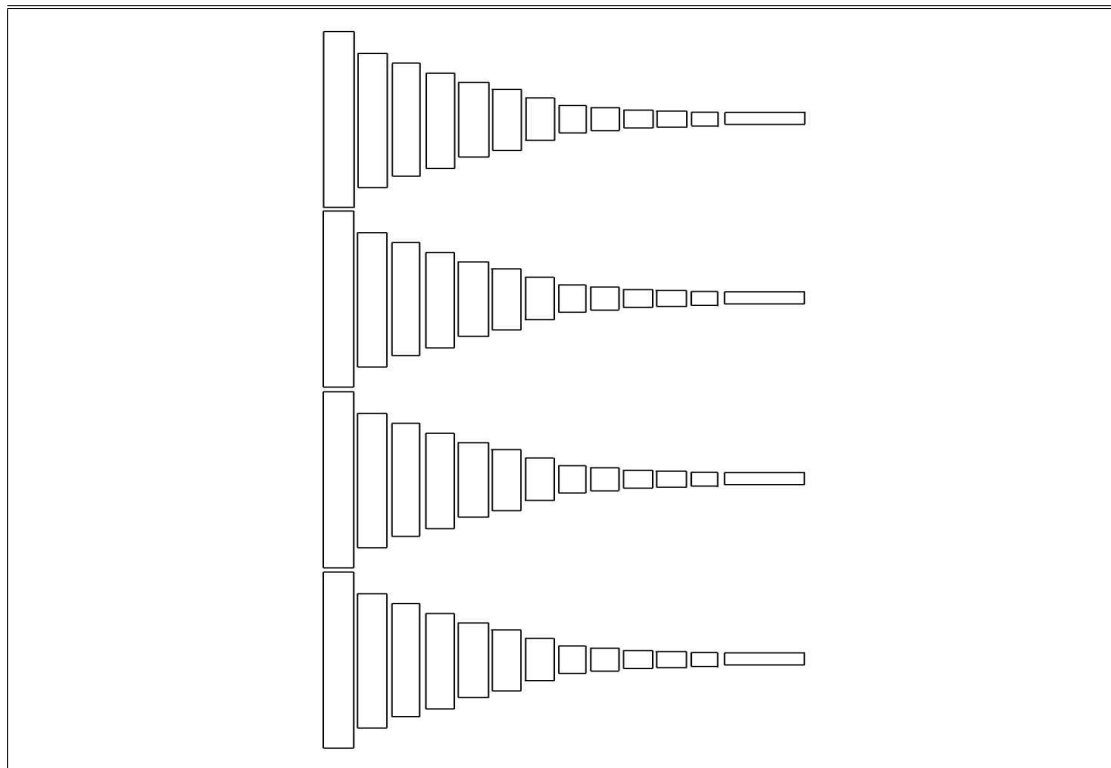
[부도 6-1]

안강망 어구 겨냥도



[부도 6-2]

안강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6-3]

안강망 조업모식도



7. 장망류어업(주목망·장망·낭장망)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7-1 및 부도 7-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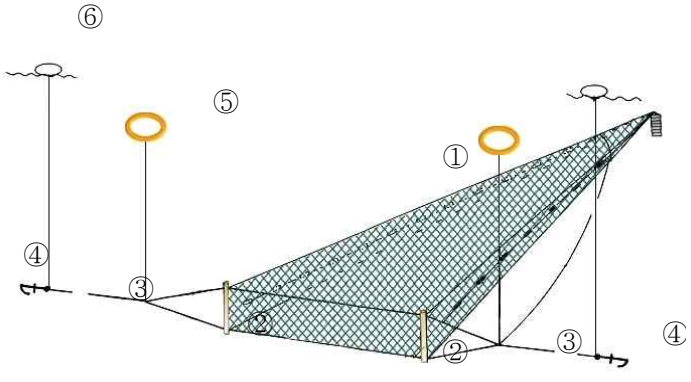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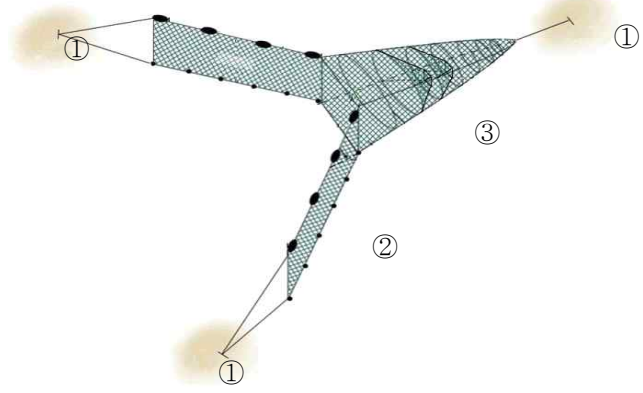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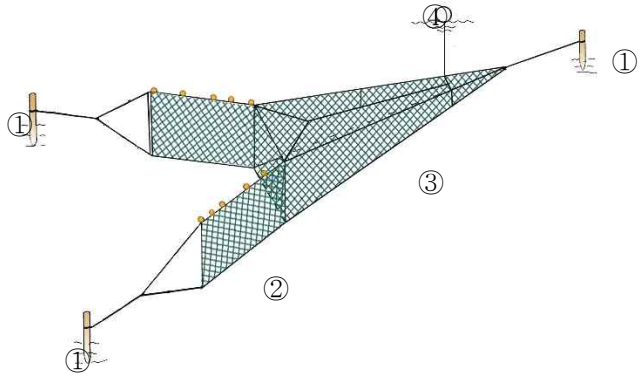
- 1) 자루그물과 날개그물로 구성된 어구로서 자루그물 속에 선택적으로 깔때기 부착이 가능하다. 다만, 주목망어업은 날개그물을 부착할 수 없다.
- 2) 자루그물 입구의 크기가 좌·우 양측에 부착되는 말뚝 또는 뺨침대에 의해 결정되는 어구(주목망)
- 3) 날개그물 앞쪽과 자루그물 끝부분을 닻(멍, 말뚝)으로 고정한 어구로서 자루그물 속에 고리테를 선택적으로 부착한 어구(장망)
- 4) 날개그물 앞쪽과 자루그물 끝부분을 닻(멍, 말뚝)으로 고정한 어구(낭장망)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허가된 구획 안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7-1과 같다.

- 1) 2개의 말뚝을 해저에 박고 거기에 그물 입구를 벌려서 고정시켜 부설하거나 그물 입구 양측에 뺨침대를 대고 닻(멍)줄을 좌·우 방향으로 내어 그물 입구가 벌어지게 부설(주목망)한다.
- 2) 날개그물 양쪽 앞쪽과 자루그물 끝을 닻(멍, 말뚝)으로 벌려서 고정하여 부설(장망, 낭장망)한다.
- 3) 수산동물이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면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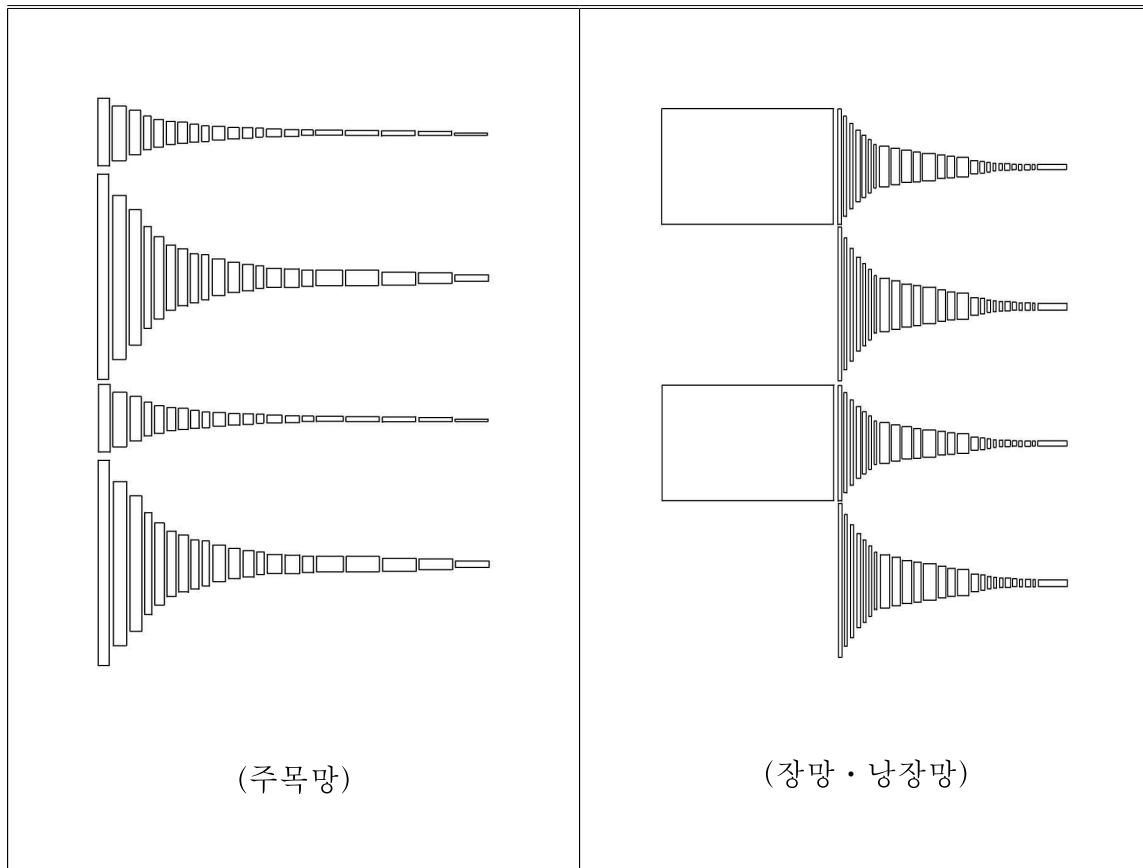
[부도 7-1]

장망류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주목망)	① 자루그물 ② 뺨침대 ③ 닻(명)줄 ④ 닻(명) ⑤ 뜸 ⑥ 부표
 (장망)	① 닻(명, 말뚝) ② 날개그물 ③ 자루그물
 (낭장망)	① 닻(명, 말뚝) ② 날개그물 ③ 자루그물 ④ 부표

[부도 7-2]

장망류 표준어구 구성도



8. 지인망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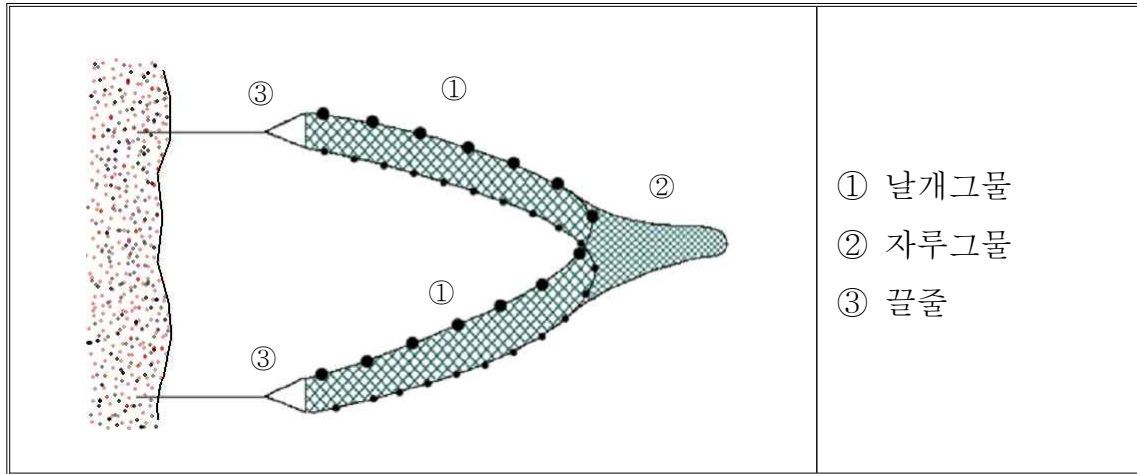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8-1 및 부도 8-2와 같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허가된 구획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8-1과 같다.

- 1) 해안에서 끌줄의 한쪽을 육지에 고정시킨 후 어선을 이용하여 그물 입구가 육지 쪽으로 향하도록 한쪽 날개그물, 자루그물, 다른 쪽 날개그물 순서로 투망한 다음 다른 쪽 끌줄을 육지로 넘겨 준다.
- 2) 날개그물의 양끝에 달린 끌줄을 육지에서 사람이나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끌어당겨 자루그물을 육지로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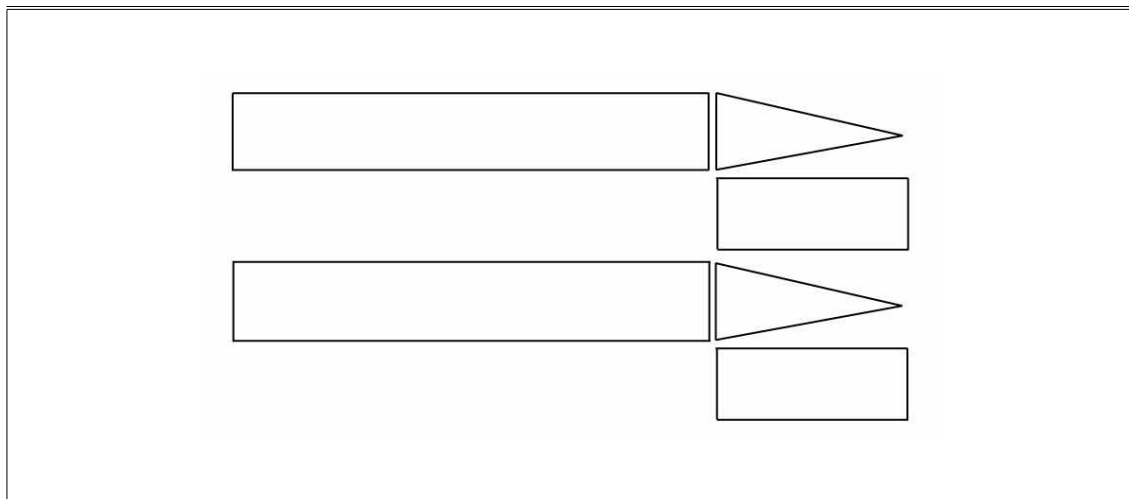
[부도 8-1]

지인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부도 8-2]

지인망 표준어구 구성도



9. 해선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부도 9-1 및 부도 9-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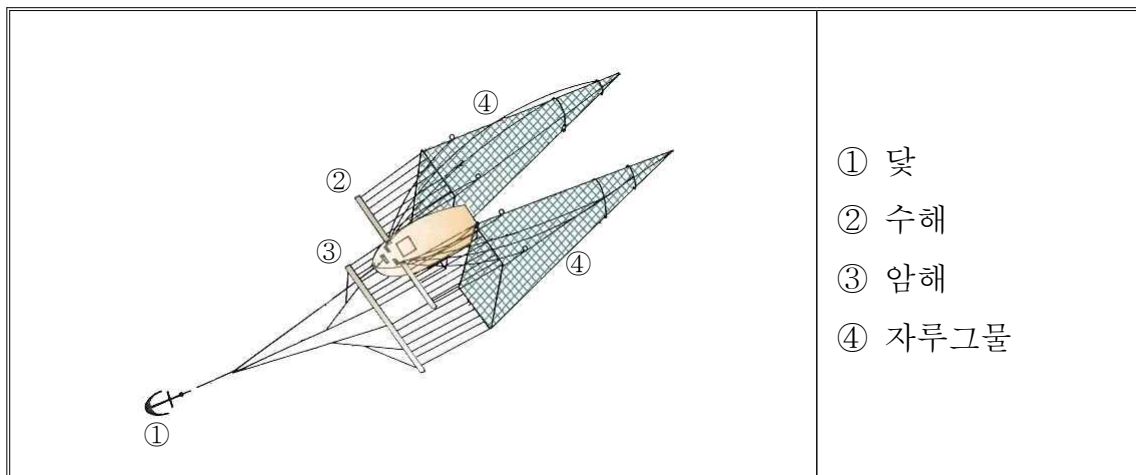
- 1)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자루그물 상부와 하부가 수해와 암해로 구성된 어구
- 3) 자루그물 속에 깔때기를 부착한 어구. 다만 자루그물 속의 깔때기는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허가된 구획 안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9-1과 같다.

- 1) 어선을 닻으로 고정시킨 후에 수해와 암해를 선미부에 매달고 자루그물을 투망한다.
- 2) 자루그물을 들어 올려 수산동물을 거두어 들인 후 다시 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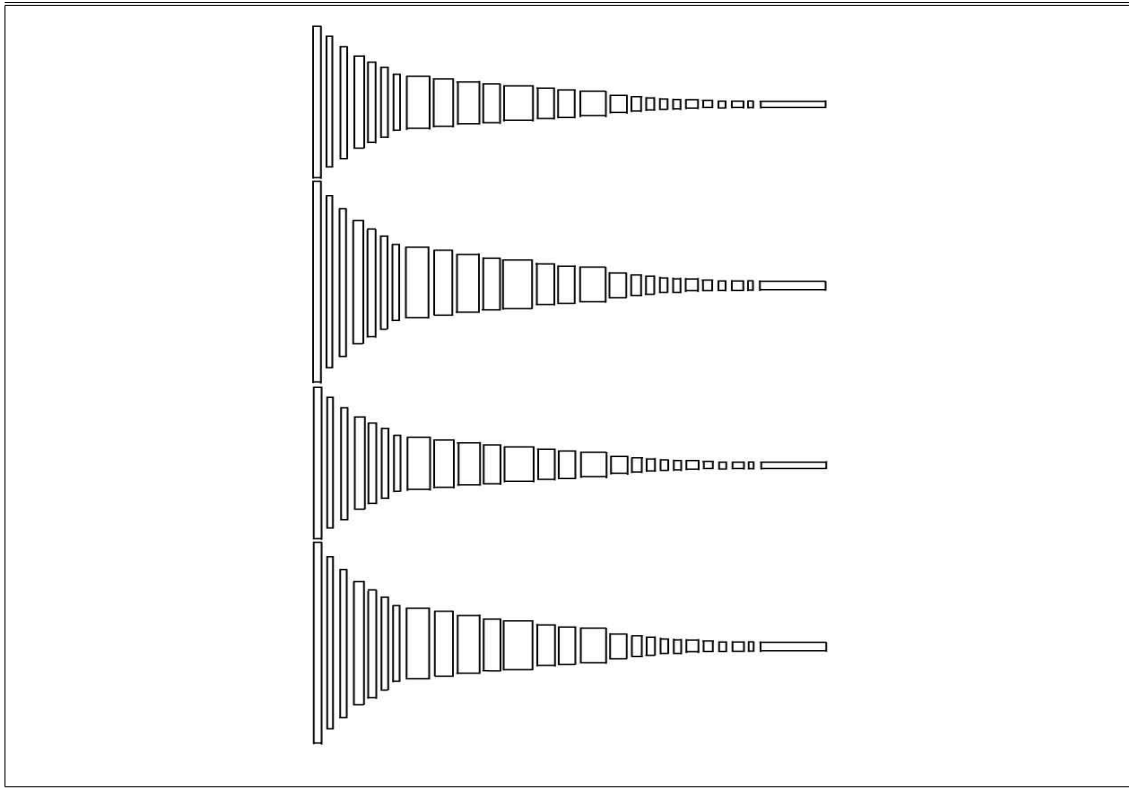
[부도 9-1]

해선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부도 9-2]

해선망 표준어구 구성도



10. 새우조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

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0-1 및 부도 10-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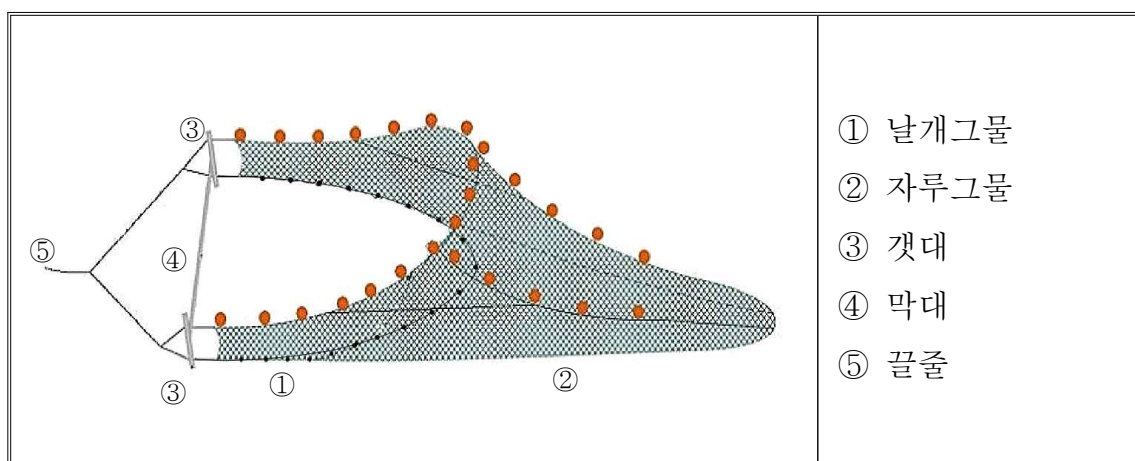
-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날개그물 앞쪽 끝에 갯대를 부착하고 갯대와 갯대 사이에는 대나무나 쇠파이프 등의 막대를 부착하여 어구의 입구가 좌·우로 벌어지게 구성된 어구
- 3) 그물코의 규격은 15밀리미터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하며, 자루그물에 허그물(누두망)을 부착하지 않은 어구
- 4) 망구에 설치한 막대의 길이가 8미터 이하인 어구
- 5) 날개그물의 길이가 7미터 이하인 어구
- 6) 막대와 자루그물 입구의 사이에 체인을 설치하지 않은 어구
- 7) 막대의 좌·우 갯대에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1척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허가된 구획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새우류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0-3과 같다.

- 1) 현측 또는 선미에서 자루그물부터 투망하고, 1가닥의 끌줄을 내어 준 후 저층을 끌면서 새우류를 포획한다.
- 2)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을 감아 들어 막대를 선체에 고정시킨 후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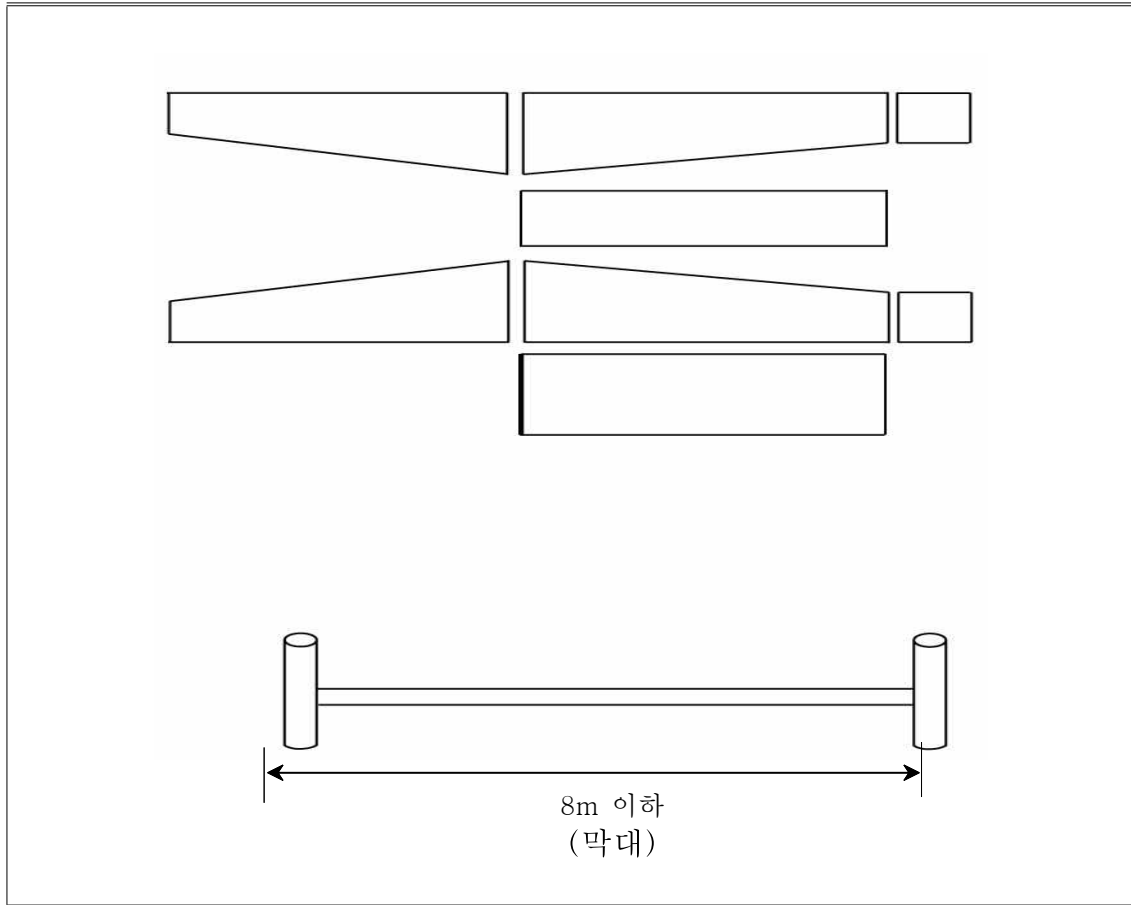
[부도 10-1]

새우조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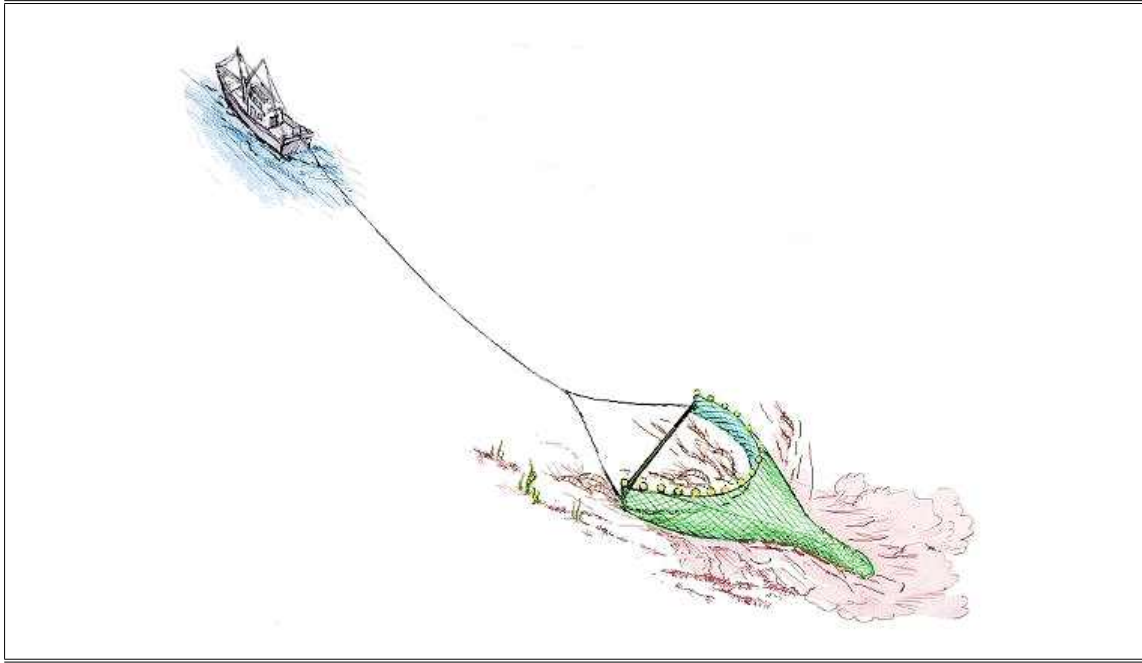
[부도 10-2]

새우조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10-3]

새우조망 조업모식도



11. 실뱀장어안강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1-1 및 부도 1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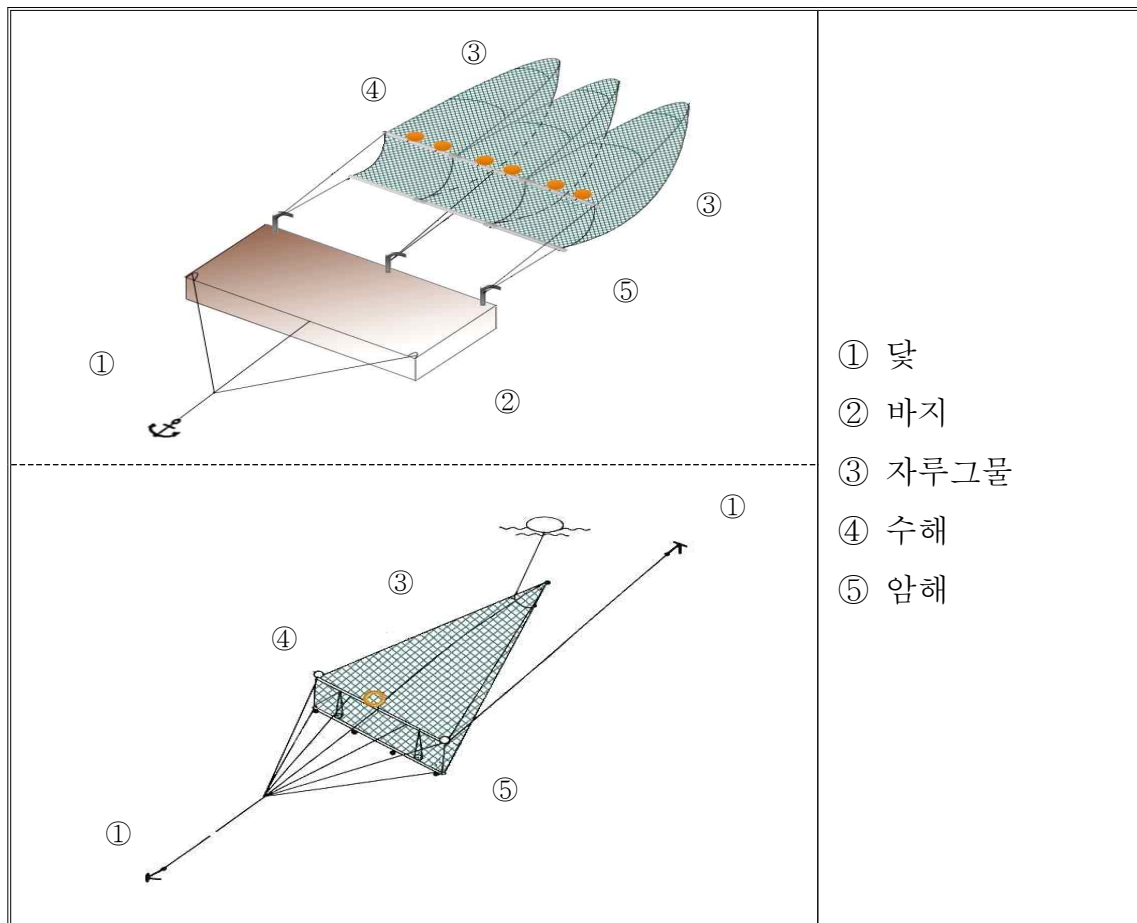
- 1) 자루그물로 또는 자루그물과 바지(barge)로 구성된 어구
- 2) 자루그물 상부와 하부가 수해와 암해로 구성된 어구(수해·암해의 길이는 각각 10미터 이하. 다만, 1통의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수해·암해의 길이는 각각 20미터 이하)
- 3) 자루그물 속에 깔때기를 부착한 어구. 다만, 자루그물 속의 깔때기는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1척으로 가목에 적합한 1통 또는 2통의 어구를 허가된 구획 안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어구 속으로 들어간 실뱀장어를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1-1과 같다.

- 1) 닻으로 고정시킨 바지에 어구를 연결하여 조업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의 선미에 직접 부착하여 조업한다.
- 2) 자루그물을 들어 올려 실뱀장어를 거두어들인 후 다시 투망한다.
- 3) 가목의 수해·암해의 길이를 각각 20미터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 1통의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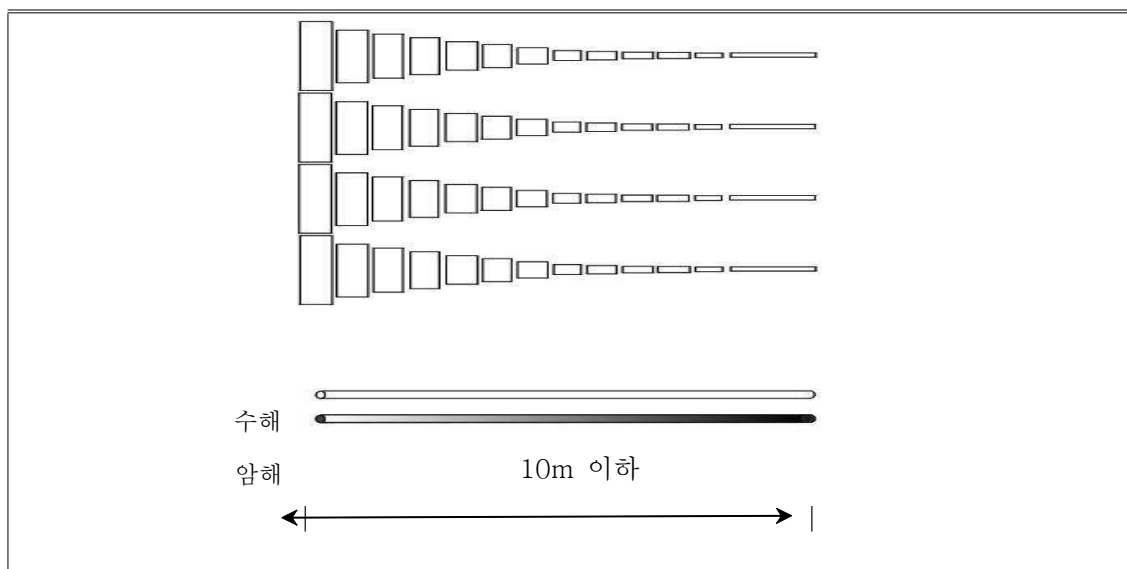
[부도 11-1]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부도 11-2]

실뱀장어안강망 표준어구 구성도



12. 패류형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2-1 및 부도 12-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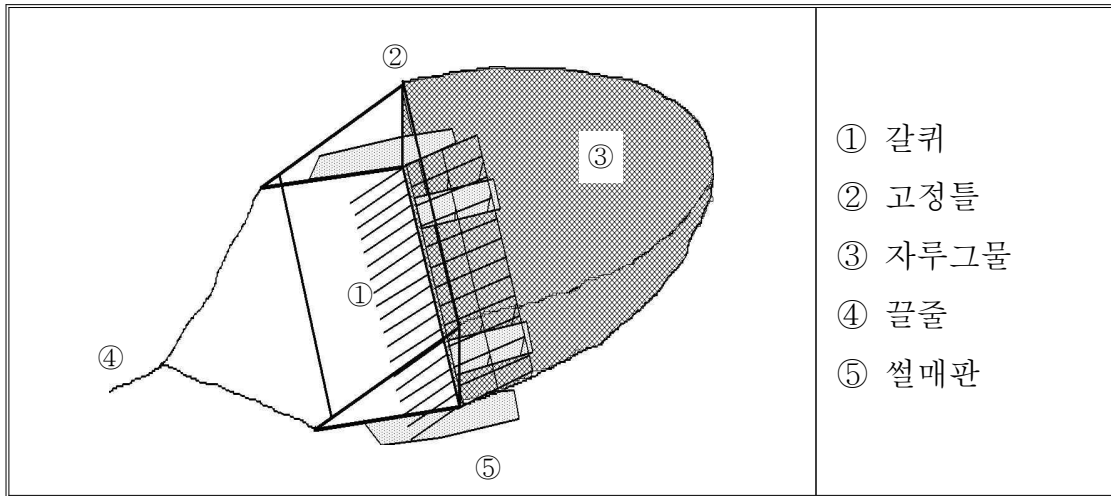
- 1) 일정한 모양의 고정틀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고정틀에 자루그물이 직접 부착되어 있고, 고정틀 밑면에는 일정 간격의 갈퀴가 부착되어 있는 어구. 다만, 키조개, 고둥류를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갈퀴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 3) 갈퀴의 간격이 3.5센티미터 이상이고, 그물코의 안쪽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어구. 다만, 시·도지사가 해역별·지역별 패류의 종류별 특성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4) 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 5) 고정틀의 크기를 가로 5미터, 세로 1미터 이하로 제작한 어구
- 6) 고정틀 좌·우에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허가된 구획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패류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12-3과 같다.

- 1) 2통 이하의 어구를 투하하고, 끌줄을 선체에 고정시킨 후 저층을 끌면서 예망한다.
- 2)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을 감아 들어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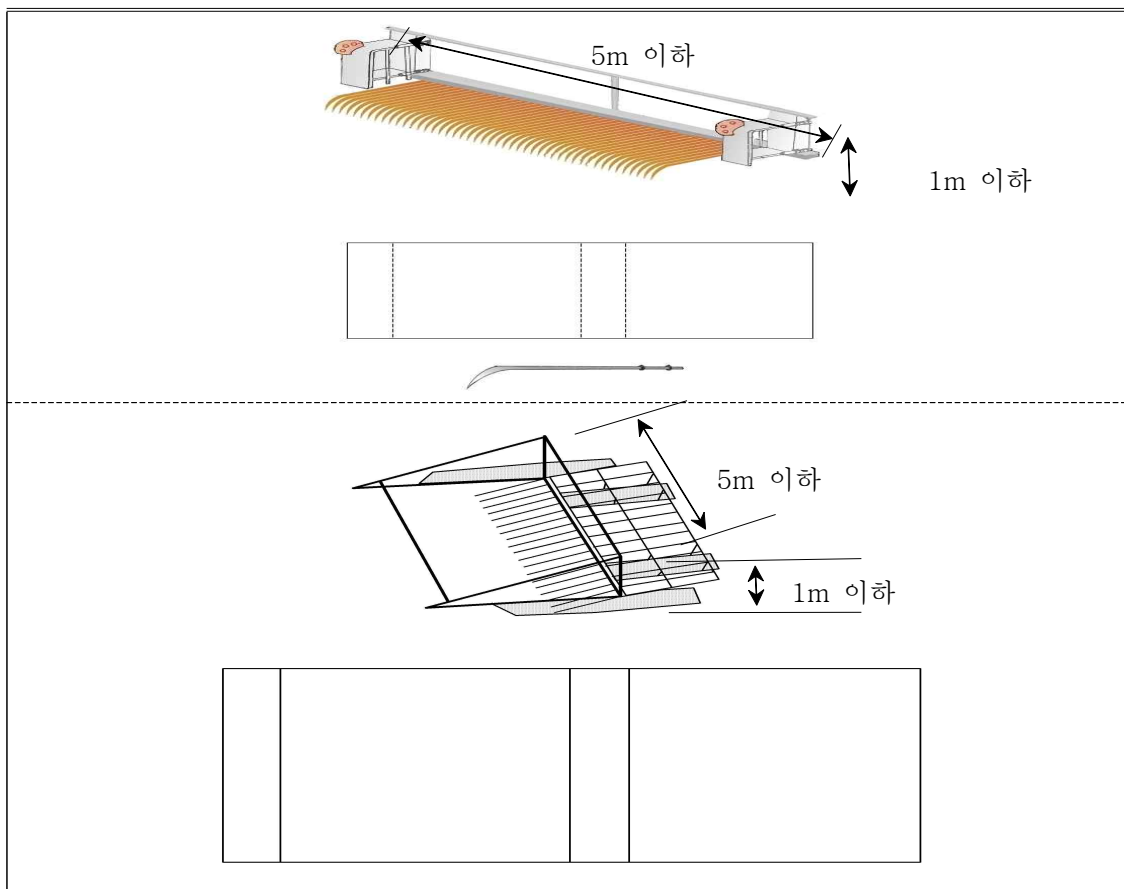
[부도 12-1]

패류형망 어구 겨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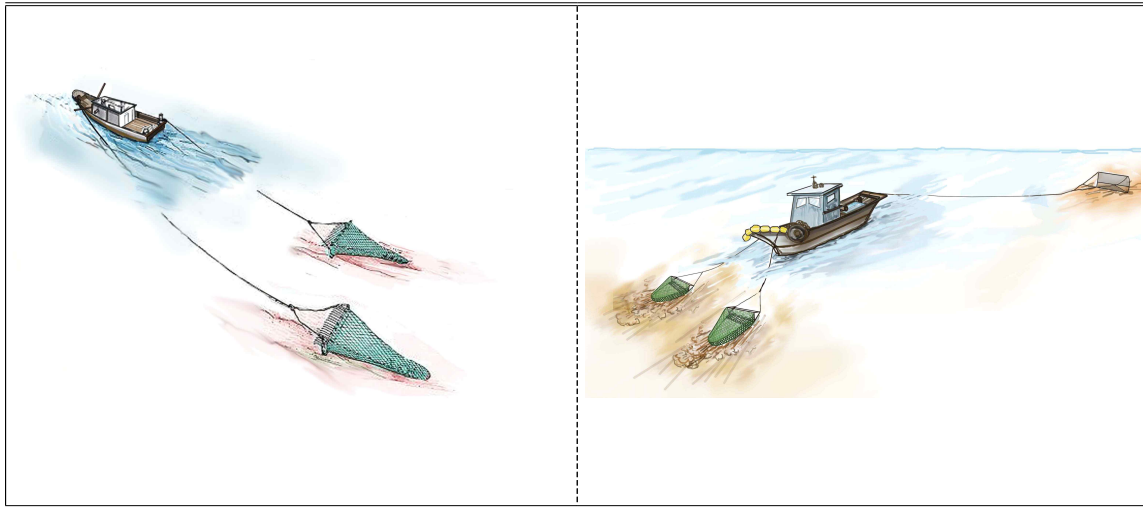
[부도 12-2]

패류형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12-3]

패류형망 조업모식도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

(제24조제1항 관련)

어업의 종류		어업의 목적이 되는 어획물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	혼획의 허용 범위
근해어업	근해형망어업	패류	기타 수산동물	총어획량의 10퍼센트 이내
연안어업	연안조망어업	새우류 (젓새우는 제외한다)	기타 수산동물	총어획량의 30퍼센트 이내
구획어업	새우조망어업	새우류	그 밖의 수산동물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총 어획량의 50퍼센트 이내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총 어획량의 45퍼센트 이내 3)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총 어획량의 40퍼센트 이내 4)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어획량의 35퍼센트 이내 5) 2020년 1월 1일부터: 총 어획량의 30퍼센트 이내
	패류형망어업	패류	기타 수산동물	총어획량의 10퍼센트 이내

비고

1. 총어획량은 어획물 총중량(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2. 혼획의 허용 범위는 어획물 총중량 중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총 중량비율을 말한다.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제28조제2항 관련)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1. 업종별수협 또는 지구별수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갖출 것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2.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수산물운반선을 갖출 것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상가공업을 신고한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갖출 것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4. 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를 취소한 후 해당 어선으로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려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갖출 것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5.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갖출 것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6. 대형선망어업 또는 기선권현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갖출 것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7.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그 어선을 임차한 자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을 갖출 것
8. 어업자로서 해당 어업의 특성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갖출 것 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나.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제35조제1항 관련)

어업의 종류	허가정수	조업구역
외끝이대형저인망어업	34건	경상남도 해안선과 동경 127도 59분 52.21초선의 교점, 북위 33도 20분 11.80초 동경 127도 59분 52.25초의 교점 및 북위 33도 30분 11.77초 동경 129도 49분 51.68초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와 동중국해
쌍끝이대형저인망어업	37건	경상남도 해안선과 동경 127도 59분 52.21초선의 교점, 북위 33도 20분 11.80초 동경 127도 59분 52.25초의 교점 및 북위 33도 30분 11.77초 동경 129도 49분 51.68초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와 동중국해
동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어업	20건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
서남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어업	29건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과 이서의 해역
서남해구쌍끝이중형저인망어업	7건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과 이서의 해역
대형트롤어업	34건	전국 근해
동해구중형트롤어업	23건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
대형선망어업	25건	전국 근해
소형선망어업	35건	전국 근해
근해채낚기어업	588건	전국 근해
근해자망어업	569건	전국 근해
근해안강망어업	199건	전국 근해
근해봉수망어업	38건	전국 근해

근해자리돔들망어업	3건	제주특별자치도 연해
근해장어통발어업	36건	전국 근해
근해문어단지어업	32건	전국 근해
근해통발어업	159건	전국 근해
근해연승어업	456건	전국 근해
근해형망어업	55건	인천광역시 · 경기도 및 충청남도 연해
	17건	전라북도 연해
기선권현망어업	54건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 사이의 해역
	14건	전라남도의 해역
잠수기어업	6건	강원도 연해
	9건	경상북도 연해
	93건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연해
	39건	전라남도 연해
	28건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 연해

비고

1.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과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허가어선 중 1척이 침몰된 경우에는 어선을 복구하거나 건조할 때까지 외끌이로 조업할 수 있다.
2.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연해 및 전라남도 연해에서 조업하는 잠수기어업의 공동조업구역 지정과 공동조업구역별 조업척수의 범위는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가인포감부터 금남면 대도 서단을 거쳐 남해군 고현면 행기섬 북단과 하동군 금남면 장도 남단 및 남해군 설천면 개구리섬 북단을 거쳐 남해대교 남단에 이르는 선, 경상

남도 남해군 남면 홍현리 가천 최남단으로부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동 동단과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등대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과 오동도 등대부터 여수시 낙포동 사포리 낙포각 등대 동단에 이르는 해안선을 거쳐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염해 서단에 이르는 직선의 중간점을 거쳐 섬진강 하구의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을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에서 허가받은 잠수기어선의 공동조업구역(부도와 같다)으로 하되, 구역별 조업척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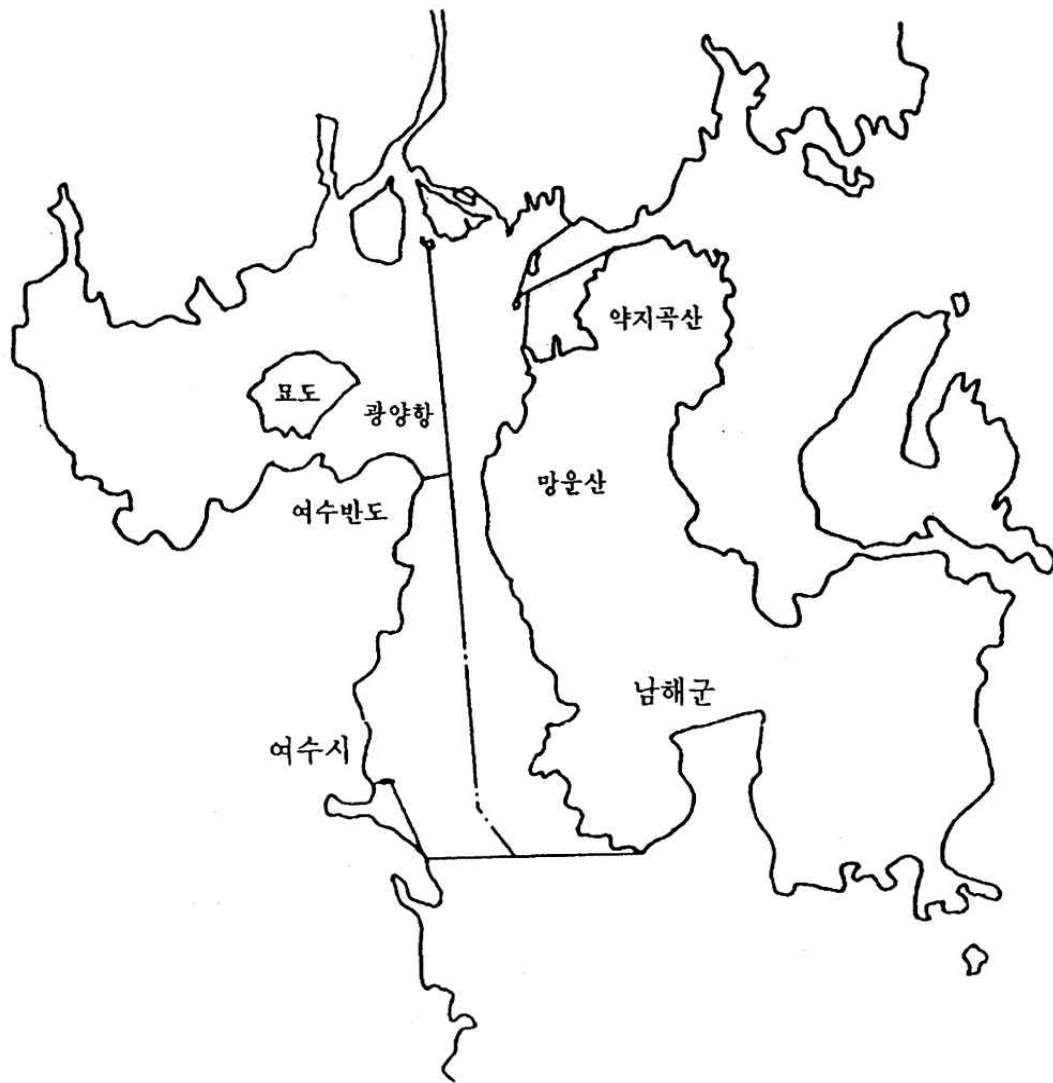
가. 경상남도 남해대교 남단으로부터 남해군 설천면 개구리섬 북단과 하동군 금남면 장도 남단 및 남해군 고현면 행기섬 북단을 거쳐 남해군 고현면 덕산말을 차례대로 연결한 구역에서는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하는 30척 범위와 경상남도지사가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30척 범위에서 조업할 수 있다.

나.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홍현리 가천 최남단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동 동단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중간점으로부터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동 동단과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 등대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과 오동도 등대로부터 여수시 낙포동 사포리 낙포각 등대 동단에 이르는 해안선을 거쳐 낙포각 등대 동단으로부터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염해 서단에 이르는 직선의 중간점에 이르는 전라남도 해역에서는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하는 52척과 경상남도지사가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17척까지만 조업할 수 있다.

다. 가목과 나목의 조업구역을 제외한 공동조업구역선 안의 해역에서는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하는 30척과 경상남도지사가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17척까지만 조업할 수 있다.

[부도]

잠수기어선의 공동조업구역도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6]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복량 한계(제37조제1항 관련)

1. 근해어업

어업의 종류	선복량의 한계(총톤수)
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60톤 이상 140톤 미만
나.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60톤 이상 140톤 미만
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20톤 이상 60톤 미만
라.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20톤 이상 60톤 미만
마.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20톤 이상 60톤 미만
바. 대형트롤어업	60톤 이상 140톤 미만
사. 동해구중형트롤어업	20톤 이상 60톤 미만
아. 대형선망어업	50톤 이상 140톤 미만
자. 소형선망어업	10톤 이상 30톤 미만
차. 근해채낚기어업	10톤 이상 90톤 미만
카. 근해자망어업	10톤 이상 90톤 미만
타. 근해안강망어업	10톤 이상 90톤 미만
파. 근해붕수망어업	10톤 이상 90톤 미만
하. 근해자리돔들망어업	10톤 이상 90톤 미만
거. 근해장어통발어업	10톤 이상 90톤 미만
너. 근해문어단지어업	10톤 이상 90톤 미만
더. 근해통발어업	10톤 이상 90톤 미만
러. 근해연승어업	10톤 이상 90톤 미만
머. 근해형망어업	20톤 미만
버. 기선권현망어업	40톤 미만
서. 잠수기어업	10톤 미만

2. 연안어업

어업의 종류	선복량의 한계(총톤수)
가. 연안개량안강망어업	10톤 미만
나. 연안선망어업	10톤 미만

다. 연안통발어업	10톤 미만
라. 연안조망어업	10톤 미만
마. 연안선인망어업	10톤 미만
바. 연안자망어업	10톤 미만
사. 연안들망어업	10톤 미만
아. 연안복합어업	10톤 미만

3. 구획어업

어업의 종류	선복량의 한계(총톤수)
가. 새우조망어업	5톤 미만
나. 실뱀장어안강망어업	5톤 미만
다. 패류형망어업	5톤(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관리하는 경우에는 8톤) 미만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기간(제38조제2항 관련)

어업의 종류			금지사항	금지기간	사용 금지구역
1.	가.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
				연중	주1)의 해역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	연중	주1)의 해역
	나.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	연중	주1)의 해역
		대형선망어업	불빛 이용 금지	연중	1. 주2)의 해역 2.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도와 전라남도 거문도의 주위 7천4백미터 이내의 해역
			삼치포획금지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주3)의 해역
			멸치포획금지	연중	1. 주4)의 해역 2. 주5)의 해역 3. 주6)의 해역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7)의 해역
			조업금지	연중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주위 7천4백미터 이내의 해역. 다만, 주15)를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로부터 2천7백미터 외측해역에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빛을 이용하지 않고 전갱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조업하는 경우와 같은 해역에서 9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불빛을 이용하지 않고 고등어를 포획할 목

			적으로 조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도 3 참조). 2. 주15)의 해역 3. 주16)의 해역
소형선망어업	불빛 이용 금지	연중	1. 주2)의 해역 2.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도와 전라남도 거문도의 주위 7천4백미터 이내의 해역
	삼치포획금지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주3)의 해역
	멸치포획금지	연중	1. 주4)의 해역 2. 주5)의 해역 3. 주6)의 해역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7)의 해역
	조업금지	연중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주위 7천4백미터 이내의 해역. 다만, 주15)를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로부터 2천7백미터 외측 해역에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빛을 이용하지 않고 전갱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조업하는 경우와 같은 해역에서 9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불빛을 이용하지 않고 고등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조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도 3 참조). 2. 주15)의 해역 3. 주16)의 해역
	세목망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	

			라북도,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근해채낚기어업	조업금지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육지로부터 5천5백미터 이내의 해역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육지로부터 2천7백미터 이내의 해역	
라. 근해자망어업	멸치포획금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8)의 해역	
	살오징어포획금지	연중	동해 전 해역과 동경 128도30분선 기준 동쪽의 남해 해역. 다만,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근해자망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해 전 해역과 동경 129도선 기준 동쪽의 남해 해역으로 한다.	
	뺨침대를 붙인 자망 사용금지	연중	인천광역시·경기도 해역 중 주17) 바깥 쪽 해역과 전라남도 해역을 제외한 전국 해역	
	뺨침대를 붙인 자망에 세목망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경기도 해역 중 주17) 바깥 쪽 해역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라남도 해역	
	세목망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고, 전라남		

			도 해역에서 뺄침대를 붙인 어구에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근해안강망어업	세목망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2월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및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바. 근해자리돔들망어업	멸치포획금지	연중	주6)의 해역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9)의 해역을 제외한 주7)의 해역	
사.	1)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통발어업	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통발 사용금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10)의 해역
		대게포획금지,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	연중	주11)의 해역
	2) 근해문어단지어업	조업금지	연중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의 주위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구역 이내의 해역
아. 기선권현망어업	멸치포획금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7)의 해역	
	기선권현망 사용금지	연중 21시 30분부터 다음날 04시 30분까지	주7)의 해역	
자. 근해형망어업	형망 사용금지. 다만, 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패류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거나 승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인을 받은 어선에 의해 해당 어장에서 사용되는 형망은 제외한다.		
	차. 모든 근해어업	멸치를 포획할 목적의 어망 사용금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6)의 해역
		새우를 포획할 목적의 어망 사용금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 주12)의 해역 2. 주13)의 해역 3. 주14)의 해역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목적의 어구 사용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기간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구역
2.	가.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조업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연안어업	나. 연안선망어업	멸치를 포획할 목적의 어망사용금지(충청남도 연안선망에 한정한다)	연중	충청남도 태안군 육지로부터 5.5킬로미터 이내의 해역. 다만, 천수만 내측 외의 수역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제외한다.
		불빛 이용 금지	연중	1. 주2)의 해역 2.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추자도와 전라남도 거문도의 주위 7천4백미터 이내의 해역
		세목망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삼치포획금지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주3)의 해역
	멸치포획금지	연중	1. 주5)의 해역 2. 주6)의 해역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7)의 해역
다. 연안통발어업	게를 포획할 목적의 통발 사용금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10)의 해역
	대게포획금지,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	연중	주11)의 해역
라. 연안조망어업	조업금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마. 연안선인망어업	조업금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바. 연안자망어업	뺨침대를 붙인 자망 사용금지	연중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해역을 제외한 전국 해역
	세목망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고, 전라남도 해역에서 뺨침대를 붙인 어구에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3. 구획어업			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멸치포획금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8)의 해역
	사. 연안들망어업	멸치포획금지	연중	주6)의 해역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9)의 해역을 제외한 주7)의 해역
	아. 모든 연안어업	새우를 포획할 목적의 어망 사용금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 주12)의 해역 2. 주13)의 해역 3. 주14)의 해역
		멸치를 포획할 목적의 어망사용금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6)의 해역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목적의 어구 사용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기간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구역
	가. 장망류어업(장망을 사용하는 어업은 제외한다)	조업금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해선망어업	조업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영광군·신안군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새우조망어업	새우조망으로 새우포획을 허용한 경우 외 사용금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립수산물과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사천시·남해군 연안해역

		학원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 10개월 이내의 조업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립수산물학원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 10개월 이내의 조업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라남도 여수시·장흥군·강진군·고흥군·완도군·진도군·해남군 연안해역
라. 패류형망어업	형망 사용금지. 다만, 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패류양식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어선에 의해 해당 어장에서 사용되는 형망은 제외한다.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마. 모든 어업	멸치를 포획할 목적의 어망사용금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6)의 해역
	새우를 포획할 목적의 어망사용금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 주12)의 해역 2. 주13)의 해역 3. 주14)의 해역

주1) 동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끝이중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별도 1 참조)

가.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의 도 경계와 해안선의 교차점에서 정남 7해리의 수계, 함경남도 북청면 마양도등대 남동 15해리의 수계, 함경남도 영흥군 호도면 성황치단에서 동 10도 북 24해리의 수계를 거쳐 성황치에 이르는 선 안의 해역(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15일까지로 한정한다)

나. 강원도 통천군 난도 고정 북동 2해리의 수계,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 정동 3해리의 수계, 고성군 거진단 정동 4해리의 수계, 속초시 대포동 웅진단 정동 3해리의 수계, 양양군 기사문단 정동 4해리 반의 수계, 강릉시 정동진단 정동 4해리의 수계, 경상북도 울진군 용추갑 정동 10해리의 수계를 거쳐 울진군 화모말 정동 1해리의 수계에 이르는 선 안의 해역(12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다.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 서쪽 끝에서 같은 장소 서 10도 남 13해리의 수계와 황해도 송화군 숙도 서쪽 끝 서 10도 북 13해리 반의 수계를 거쳐 숙도 서쪽 끝에 이르는 선 안의 해역(5월로 한정한다)

주2) 북위38도00분09.86초 동경125도49분52.80초, 북위34도00분11.50초 동경125도49분52.90초, 북위34도00분11.54초 동경127도59분52.23초, 북위34도30분11.34초 동경127도59분52.21초, 북위34도30분11.36초 동경128도59분51.90초,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이 만나는 점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장기갑 등대 동쪽 끝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용추갑 동쪽 끝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단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말에서 정동 1만1천미터의 점과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라말 이북에서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말 이남까지의 해역 중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라말 동쪽 끝에서 정동 5천5백미터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장기갑 등대 동쪽 끝에서 정동 5천5백미터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대진말에서 정동 1만4천8백미터의 점,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축산등대 동쪽 끝에서 정동 7천4백미터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용추갑 동쪽 끝에서 정동 9천2백미터의 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에서 정동 9천2백미터의 점,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단에서 정동 9천2백미터의 점과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말에서 정동 7천4백미터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밖의 해역에서 소형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주3)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가오도 남쪽 끝,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라도 소룡단 14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동남쪽 끝 등대 160도 5천미터의 점과 완도군 소안면 당사도 등대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4) 대형선망어업 및 소형선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구역(부도 1 참조)

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만갑 동쪽 끝과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갑 서북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동북쪽 끝과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동남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차점(신명리)과 그 지점에서 100도 2천미터의 점,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울기 등대 110도 2천미터의 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말 110도 2천미터의 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경계인 광계말 90도 2천미터의 점,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등대 137도 2천미터의 점,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암각 90도 4천미터의 점, 거제시 일운면 왜구리 서이말 90도 2천미터의 점, 거제시 동부면 갈곶 서양말 160도 2천미터의 점, 거제시 동부면 대병대도 남쪽 끝, 통영시 한산면 가오도 남쪽 끝, 한산면 비진도 남쪽 끝 180도 1천미터의 점, 통영시 산양읍 외부지도 남쪽 끝, 통영시 산양읍 주도 남쪽 끝, 통영시 욕지면 두미도 북쪽 끝, 남해군 삼동면 호도 남쪽 끝 180도 2천미터의 점, 남해군 남면 가천리 최남돌단 180도 2천미터의 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도 방죽포 끝 94도 5천미터의 점, 여수시 돌산읍 소리도 최남돌각(소리도 등대) 225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추서도 최남단, 완도군 청산면 상도 남쪽 끝, 완도군 소안면 소진리 동남쪽 끝에서 180도 4천미터의 점, 완도군 소안면 당사도 등대, 완도군 노화면 보죽리 보죽각, 노화면 죽굴도 남쪽 끝,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 동북쪽 끝(등대)과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세포 서쪽 끝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라.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나리서 북쪽 끝과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외주광서돌단의 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마.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 북쪽 끝 29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송말 277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둥굴서 끝 225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가랭이 끝 85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동북쪽 끝각 5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북쪽 끝 0도 2천미터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바.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국화리 북쪽 끝 0도 2천미터의 점, 완도군 청산면 국산리 동북쪽 끝 50도 2천미터의 점, 청산면 동촌리 향도 90도 2천미터의 점, 청산면 동촌리 향도 매봉산 동남돌각 130도 2천미터의 점, 청산면 당탁리 최남

돌각 220도 2천미터의 점, 청산면 당탁리 장도 서쪽 끝 300도 2천미터의 점, 청산면 국화리 북쪽 끝 0도 2천미터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사.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횡간도 북쪽 끝 돌각 0도 2천미터의 점, 완도군 소안면 소안도 청벽각 90도 2천미터의 점, 소안면 소안도 서쪽 끝 돌각 90도 2천미터의 점, 완도군 소안면 소안도 남쪽 끝 돌각 125도 2천미터의 점, 완도군 소안면 당사도 등대 180도 2천미터의 점, 완도군 노화면 보길도 보죽각 220도 2천미터의 점, 노화면 마삭도 북쪽 끝 돌각 0도 2천미터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직구도 남쪽 끝에서 추자면 흑검도 동남각, 추자면 하추자도 동쪽 끝 돌각 90도 2천미터의 점, 추자면 청도 동북돌각 직구도 남쪽 끝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5)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금오도, 남면 안도, 남면 연도 및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의 주위 550미터 이내의 해역

주6)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 동남쪽 돌출부 끝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가덕도 미돌말을 연결하는 선, 가덕도 동두말과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양지암 돌출부 끝을 연결한 선과 경상남도 통영시 장평리 전유마을 동쪽 끝 및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전내량마을 선착장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7) 주6)의 해역을 제외한 경상남도의 해역과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해역

주8) 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구역(부도 1 참조)

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만갑 동쪽 끝과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갑 서북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동북쪽 끝과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동남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차점(신명리)과 그 지점에서 100도 2천미터의 점,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울기 등대 110도 2천미터의 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말 110도 2천미터의 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경계인 광계말 90도 3천미터의 점, 영도구 영도 등대 160도 3천미터

의 점, 사하구 목도 남쪽 끝,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양지 암자 90도 4천미터의 점, 거제시 일운면 왜구리 서이말 90도 2천미터의 점,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서량말 160도 2천미터의 점, 거제시 남부면 대병대도 남쪽 끝, 통영시 한산면 가도 남단, 한산면 비진도 남쪽 끝 180도 1천미터의 점, 통영시 산양읍 외부지도 남쪽 끝, 산양읍 추도 남쪽 끝, 통영시 옥지면 두미도 북쪽 끝, 남해군 삼동면 호도 남쪽 끝 180도 2천미터의 점, 남해군 남면 가천리 남쪽 끝 180도 2천미터의 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면 돌산도 방죽포 끝 94도 5천미터의 점, 여수시 남면 배다서 동쪽 끝 90도 3천미터의 점, 여수시 남면 소리도 소룡단 14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남면 소리도 죽암각 25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남면 금오도 원포 남쪽 끝 235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육고서 남쪽 끝 180도 2천미터의 점, 고흥군 점안면 남열리 종지미 끝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면 봉암리 쌍층사돌각, 장흥군 대덕면 노력도 남쪽 끝, 완도군 약산면 당목리 한박금 끝 90도 1천5백미터의 점, 완도군 약산면 당목리 한박금 끝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마.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남쪽 끝 돌단과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끝을 연결한 선, 완도군 신지면 산동 남쪽 끝 돌각과 완도군 완도읍 대두 끝을 연결한 선 및 완도군 군외면 원동 남쪽 끝과 완도군 군외면 달도리 남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바.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 북단 290도 2천5백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송말 277도 3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둥굴서 끝 22.5도 5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등대 끝 160도 5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매랭이 끝 85도 5천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면 서도 동북쪽 끝각 50도 2천5백미터의 점 및 여수시 삼산면 서도 북쪽 끝 0도 1천5백미터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9)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웅남 마을 서쪽 끝, 여수시 웅천동 두력도 남쪽 끝,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소경도 북쪽 끝,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안정마을 동쪽 끝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과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의 동도리 북쪽 끝과 서도리 북쪽 끝을 연결한 선과 서도리 남쪽 끝 동도리 남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10)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단과 그 지점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단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 동쪽 끝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도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정동 3만7천미터의 점,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도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11)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2 참조)

- 가. 북위37도08분37초 동경129도21분52초
- 나. 북위37도08분37초 동경129도45분12초
- 다. 북위37도06분12초 동경129도45분12초
- 라. 북위36도41분27초 동경129도51분24초
- 마. 북위36도28분18초 동경129도53분 08초
- 바. 북위36도19분30초 동경129도51분06초
- 사. 북위36도11분13초 동경129도48분48초
- 아. 북위36도06분57초 동경129도45분44초
- 자. 북위35도58분46초 동경129도44분 01초
- 차. 북위35도55분37초 동경129도43분14초
- 카. 북위35도49분04초 동경129도44분27초
- 타. 북위35도46분01초 동경129도46분21초
- 파. 북위35도39분00초 동경130도00분15초
- 하. 북위35도39분00초 동경129도26분52초

주12)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읍 대운두도 남쪽 끝과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내 백일도 남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13)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북쪽 용동 끝과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과 보성군 회천면의 면 경계를 연결하는 선 안의 해역

주14)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편리 가음도 북쪽 끝,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 북쪽 끝,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 남쪽 끝과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흑어도 북쪽 끝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15)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가. 북위33도24분40초 동경126도12분15초
- 나. 북위33도25분09초 동경126도12분23초
- 다. 북위33도25분37초 동경 126도13분00초
- 라. 북위33도25분38초 동경126도13분47초
- 마. 북위33도10분23초 동경126도15분27초
- 바. 북위33도09분36초 동경126도15분18초
- 사. 북위33도09분05초 동경126도16분17초
- 아. 북위33도09분38초 동경126도16분50초
- 자. 북위33도09분45초 동경126도17분24초
- 차. 북위33도10분18초 동경126도17분49초
- 카. 북위33도31분17초 동경126도56분09초
- 타. 북위33도31분50초 동경126도57분18초
- 파. 북위33도30분55초 동경126도58분35초
- 하. 북위33도29분53초 동경126도58분53초
- 거. 북위33도28분59초 동경126도57분47초

주16)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4를 참조)

- 가. 북위37도36분00초 동경126도12분20초
- 나. 북위37도23분30초 동경126도20분40초
- 다. 북위37도20분00초 동경126도23분30초
- 라. 북위37도12분20초 동경126도23분30초
- 마. 북위37도10분05초 동경126도30분00초
- 바. 북위37도07분15초 동경126도30분00초
- 사. 북위37도05분30초 동경126도22분00초
- 아. 북위36도55분00초 동경126도06분30초
- 자. 북위36도48분00초 동경126도03분50초
- 차. 북위36도41분10초 동경126도05분35초
- 카. 북위36도38분00초 동경126도05분30초
- 타. 북위36도33분30초 동경126도14분30초
- 파. 북위36도19분20초 동경126도19분50초
- 하. 북위36도18분05초 동경126도26분50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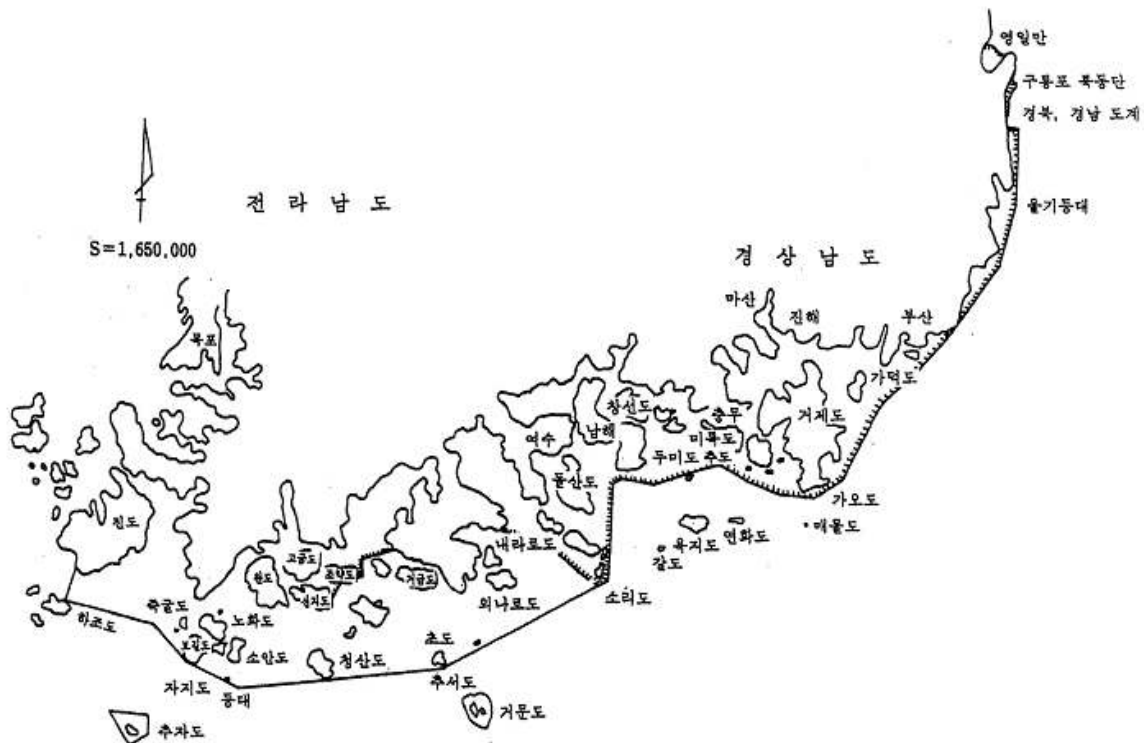
거. 북위35도51분00초 동경126도28분00초
너. 북위35도49분40초 동경126도21분30초
더. 북위35도48분10초 동경126도21분50초
러. 북위35도47분10초 동경126도25분00초
머. 북위35도39분20초 동경126도24분20초
버. 북위35도23분30초 동경126도20분50초
서. 북위35도16분20초 동경126도15분00초
어. 북위35도12분50초 동경126도10분00초

주17)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5를 참조)

가. 북위37도30분00초 동경126도00분00초
나. 북위37도31분20초 동경126도03분02초
다. 북위37도30분00초 동경126도03분02초
라. 북위37도30분00초 동경126도16분21초
마. 북위37도23분30초 동경126도20분40초
바. 북위37도19분38초 동경126도13분22초
사. 북위37도18분15초 동경126도03분55초
아. 북위37도09분40초 동경126도04분25초
자. 북위37도06분50초 동경126도07분45초
카. 북위37도05분30초 동경126도22분00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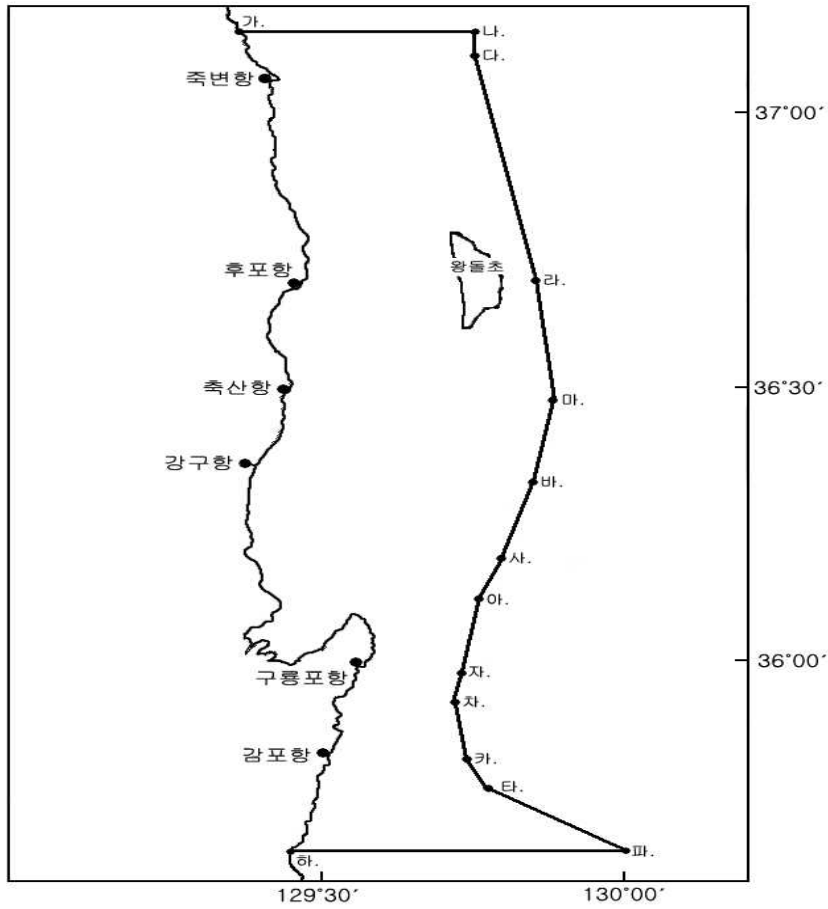
대형선망어업 · 소형선망어업 · 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구역도

구 분	범 례	비 고
대형선망어업 및 소형선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구역	_____	주4) 관련
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구역	┃┃┃┃┃┃┃┃┃┃	주8)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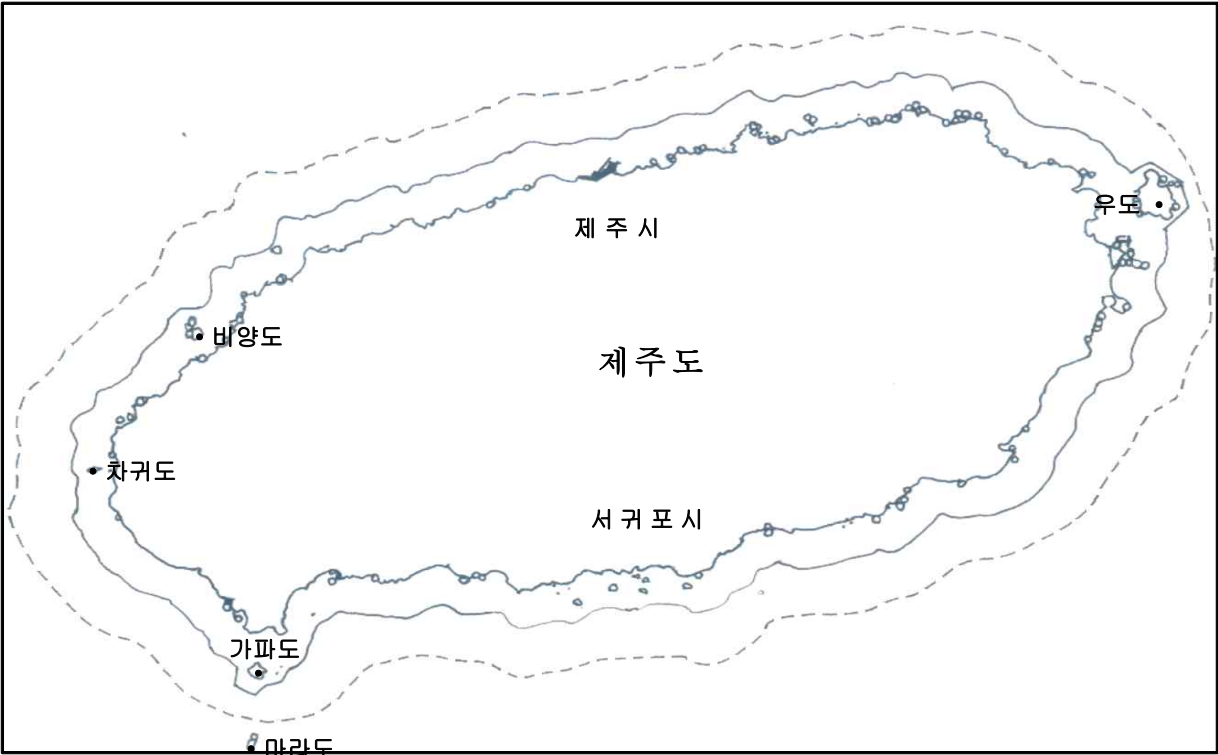
[부도 2] <개정 2020. 4. 14.>

근해장어통발어업 · 근해통발어업 및 연안통발어업의 대게 포획금지, 대게류 ·
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 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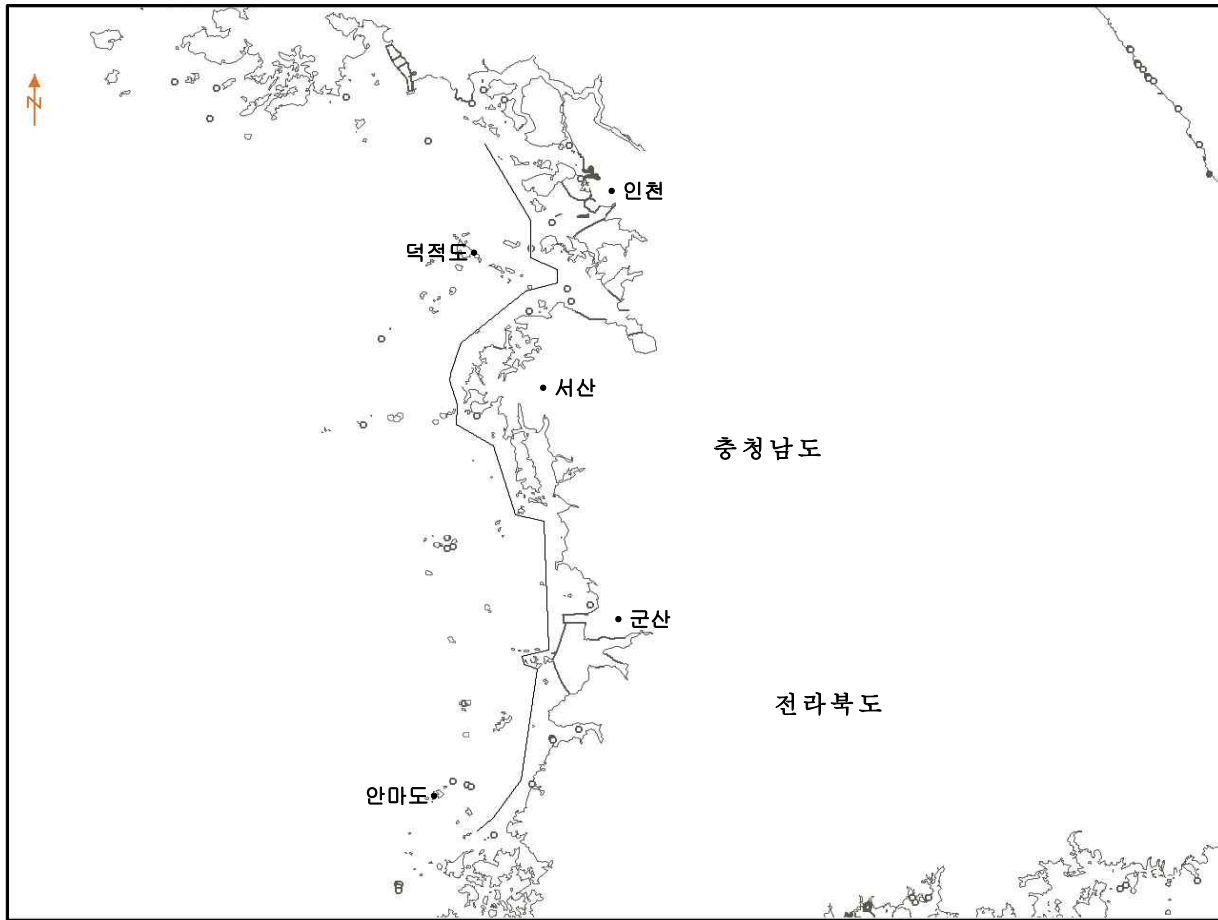


[부도 3] <신설 2014.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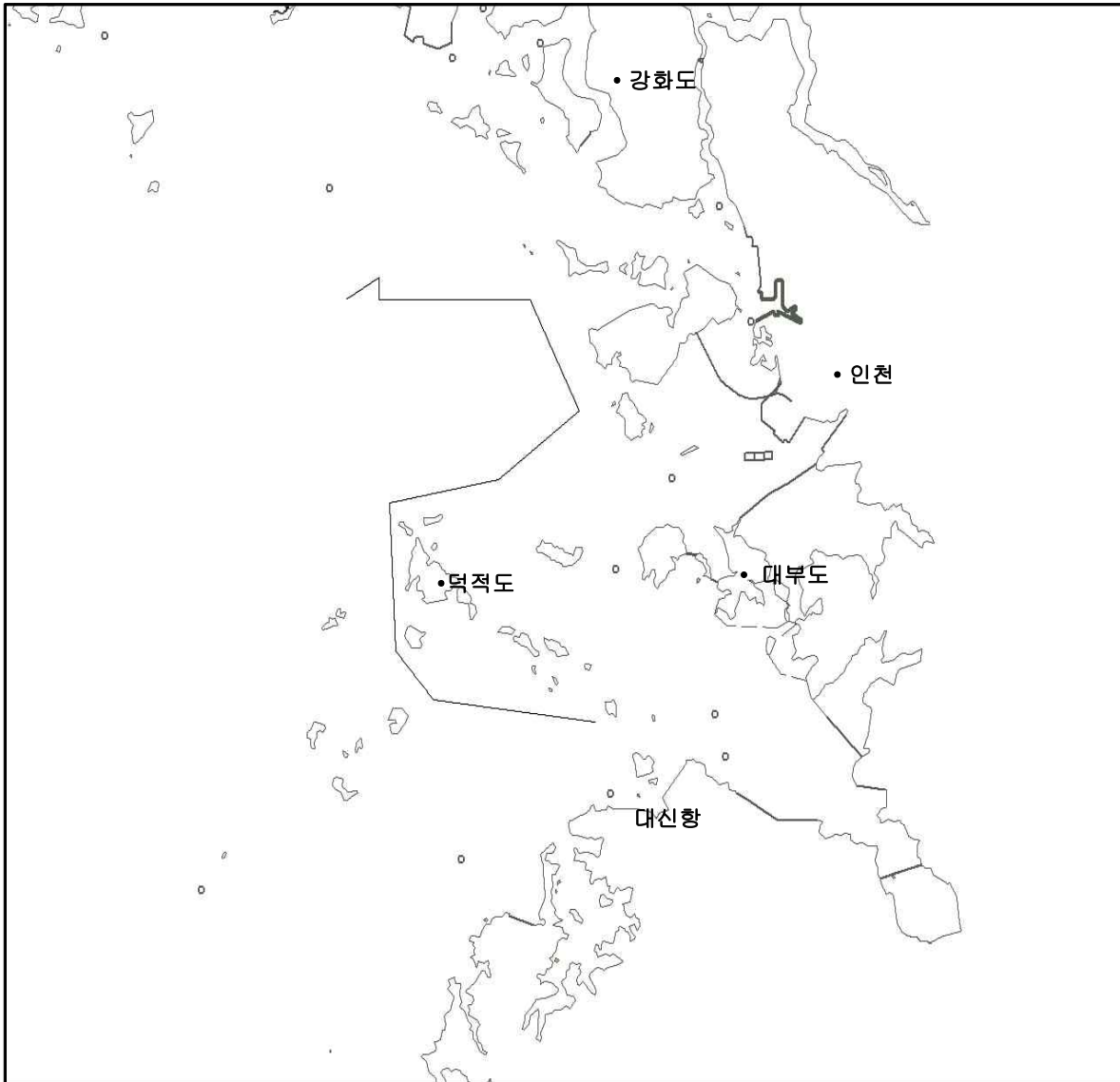
구 분	범 례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주위 2천7백미터 이내 및 주15)의 해역	_____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주위 7천4백미터 이내 해역	_____



[부도 4] <신설 2014.3.24>



[부도 5] <신설 2014.3.24>



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제38조제3항 관련)

어업의 종류		주로 포획하는 어종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비고
1. 근해어업	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33밀리미터 이하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나.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54밀리미터 이하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33밀리미터 이하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라. 대형트롤어업		54밀리미터 이하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마. 동해구중형트롤어업		43밀리미터 이하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바. 대형선망어업		30밀리미터 이하	
	사. 소형선망어업		30밀리미터 이하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아. 근해자망어업	삼치	100밀리미터 이하	1. 2중 이상의 자망 중 내망의 그물코의 규격은 40밀리미터 이하 사용금지 2. 멸치, 젓새우,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조기류	50밀리미터 이하	
		대게	240밀리미터 이하	

2. 연 안 어 업	자. 근해안강망어업		35밀리미터 이하	1.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2. 멸치, 반지, 뱀뱀이, 뱀장어, 곤쟁이, 까나리, 베도라치, 새우류, 꿀뚜기, 주꾸미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차. 근해장어통발어업		35밀리미터 이하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한 그물코가 없는 통발은 제외함.
	카. 근해통발어업	대게	150밀리미터 이하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붉은 대게	125밀리미터 이하	1.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선 이북의 동해로 한정함. 2.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그 밖의 어종	35밀리미터 이하	1.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2.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해서 그물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타. 삭제 <2017. 11. 28.>			
	가. 연안개량안강망어업		25밀리미터 이하	1. 연안안강망 및 연안낭망은 제외함. 2.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나. 연안선망어업		15밀리미터 이하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다. 연안통발어업	붕장어, 낙지, 새우류	22밀리미터 이하	1. 통발 입구에 부착된 깔때기 모양의 그물의 입구 중 가장 작은 것의 둘레 길이는 140밀리미터 이상 사용금지 2.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3.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해서 그물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4.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한 그물코가 없는 통발은 제외함.
	대게	150밀리미터 이하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붉은 대게	125밀리미터 이하	1.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선이북의 동해로 한정함. 2.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그 밖의 어종	35밀리미터 이하	1.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2.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해서 그물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라. 연안조망어업		25밀리미터 이하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마. 연안선인망어업		15밀리미터 이하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바. 연안자망어업	삼치	100밀리미터 이하	1. 2중 이상의 자망 중 내망의 그물코의 규격은 40밀리미터 이하 사용금지 2. 멸치, 젓새우,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조기류	50밀리미터 이하	
		대게	240밀리미터 이하	
3. 구획어업	가. 장망류어업(영광군에서 주목망을 사용하는 어업)		25밀리미터 이하	
	나. 장망류어업(영광군에서 주목망을 사용하는 어업), 패류형망어업 외의 구획어업		15밀리미터 이하	멸치, 빙어, 보리멸, 문절망둑, 상어, 반지, 뱀뱀이, 황강달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젓새우 및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음.

비고

1. 그물코의 규격은 그물코를 잡아당겨서 켜 안쪽 지름의 길이로 한다.
2. 어업의 특성으로 해파리 배출망 및 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부착(설치)이 필요한 어업에 대해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어구의 그물코 규격과 사용 시기를 정해서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 표에 따른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는다.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
(제39조제1항 관련)

어업의 종류	주로 포획하 는 어 종	어구 사용량	어구의 규모 및 형태	비고
연 안 통 발	낙지	5,000개, 간격 10 미터 이하	- 가로·세로·높이·지름 각각 120센티미터 이하 - 깔때기 모양의 그물입구 중 가장 작은 것의 둘레길이는 140밀리미터로 제한 -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 깔때기 그물은 적용하지 않음 - 플라스틱 재질 사용, 그물형태로 제작한 통발은 포함	1. 낙지 외의 어종은 방류해야 한다. 2. 해당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자는 제38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통발어구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포획된 수산동물은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위판장에서 판매 또는 교환해야 한다.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

(제53조 관련)

1.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

가. 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경우로서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4조제6호(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었거나 그 사유로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 1) 어업권이 취소되었거나 어업권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평년수익액 ÷ 연리(12퍼센트)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 2)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 평년수익액 × 어업의 정지기간 + 시설물 등 또는 양식물의 이전·수거 등에 드는 손실액 + 어업의 정지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 다만, 1)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 3) 어업권이 제한된 경우: 평년수익액과 제한기간이나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손실액. 다만, 1)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의 경우로서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법 제34조제6호(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다만, 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제한된 경우는 제외한다.

- 1)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 3년분 평년수익액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 2)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이 정지된 경우(어선의 계류를 포함한다): 평년수익액 × 어업의 정지기간 또는 어선의 계류기간 + 어업의 정지기간 또는 어선의 계류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 다만, 1)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 3)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제한되는 경우: 어업의 제한기간 또는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손실액. 다만, 1)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69조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전 또는 제거 명령에 따른 경우로서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 또는 제거 명령을 받고 이전 또는 제거를 한 경우와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한 제거명령을 받고 제거 공사를 한 경우: 물건의 이전 또는 제거 공사에 드는 비용과 이전 또는 제거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2.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 및 산출기준

가.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손실액 산출방법에서 "평년수익액"이란 평균 연간어획량을 평균 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 연간어획량, 평균 연간판매단가 및 평년어업경비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평균 연간어획량의 산출기준

가) 3년 이상의 어획실적이 있는 경우: 법 제104조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보고된 어획실적, 양륙량(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긴 양을 말한다) 또는 판매실적(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받은 자가 보고된 실적 이상의 어획실적 등이 있었음을 증거서류로 증명한 경우에는 그 증명된 실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출한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어획량으로 하되, 최근 3년 동안의 어획량은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소급 기산(起算)한 3년 동안(소급 기산한 3년의 기간 동안 일시적인 해양환경의 변화로 연평균어획실적의 변동폭이 전년도에 비하여 1.5배 이상이 되거나 휴업·어장정비 등으로 어획실적이 없어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의 평균어획량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만큼 소급 기산한 3년 동안을 말한다)의 어획량을 연평균한 어획량으로 한다.

나) 어획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추정 평균 어획량

(1) 면허어업: 해당 어장의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 × 인근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장(통상 2개소)의 3년 평균어획량 ÷ 인근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장의 해당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

(2)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 해당 어업의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 × 같은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통상 2건)의 3년 평균어획량 ÷ 같은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의 해당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 다만, 같은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획량이 없으면 비슷한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획량을 기준으로 3년 평균어획량을 계산한다.

※ (1) 및 (2)의 계산식에서 실적기간은 실제 어획실적이 있는 기간으로 하되, 같은 규모 또는 비슷한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의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의 실제 어획실적이 있는 기간과 같은 기간의 실제 어획실적을 말한다.

※ 어획량의 기본단위는 킬로그램을 원칙으로 하고, 어획물의 특성에 따라 생물(生物)_중량 또는 건중량(乾重量)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김은 마른 김 1속을 기준으로 하고, 어획물을 내용물 중량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산물가공업에 관한 생산고 조사요령의 수산물 중량환산 및 수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 평균 연간판매단가의 산출기준

가) 평균 연간판매단가는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로 하여 소급 기산한 1년 동안의 수산물별 평균 판매단가[해당 수산물이 계통출하(系統出荷)된 주된 위판장의 수산물별·품질등급별 판매량을 수산물별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평균 판매단가를 말한다]로 한다.

나) 계통출하된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등의 평균 연간판매단가는 가)의 평균 연간판매단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계통출하된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평균 연간판매단가를 계산해 낸다.

(가) 해당 지역 인근의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판가격

(나) 해당 지역 인근의 수산물도매시장의 경락가격

(2) 소급 기산한 1년의 기간 동안 어획물의 일시적인 흥작·풍작 등으로 어가(魚價)의 연평균 변동폭이 전년도에 비하여 1.5배 이상이 되어 가)의 평균 연간판매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소급 기산한 최초의 1년이 되는 날부터 다시 소급하여 기산한 1년 동안의 평균 판매단가에 소급하여 기산한 최초의 1년 동안의 수산물 계통출하 판매가격의 전국 평균 변동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평년어업경비의 산출기준

평년어업경비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 동안 소급하여 기산한 해당 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하되, 경비 항목 및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경비항목

구 분	경 비 항 목
1. 생산관리비	① 어미고기 및 수산종자 구입비 ② 미끼구입비 ③ 사료비 ④ 유지보수비 ⑤ 연료 및 유류비 ⑥ 전기료 ⑦ 약품비 ⑧ 소모품비 ⑨ 어장관리비[어장 청소, 해적생물(害敵生物) 구제(驅除) 및 표지시설 설치 등] ⑩ 자원조성비 ⑪ 용선료(傭船料)
2. 인건비	①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 ② 본인 외의 사람에 대한 인건비
3. 감가상각비	① 시설물 ② 어선 또는 관리선(선체, 기관 및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 등을 포함한다) ③ 어구 ④ 그 밖의 장비 및 도구
4. 판매관리비	① 가공비 ② 보관비 ③ 용기대 ④ 판매수수료 ⑤ 판매잡비(운반·포장 등)
5. 그 밖의 잡비	① 각종 세금과 공과금 ② 어장행사료 ③ 주식·부식비 ④ 복리후생비 ⑤ 보험료 및 공제료 ⑥ 그 밖의 경비

나) 산출방법

(1) 평년어업경비는 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항목별로 계산하되, 규정된 경비항목 외의 경비가 있으면 그 밖의 경비항목에 포함시켜 전체 평년어업경비가 산출되도록 해야 한다.

(2) 경비항목별 경비 산출은 어선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신고사항, 포획·채취물의 판매실적, 유류 사용량, 임금정산서, 보험료 및 공제료, 세금납부실적,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표준품셈 등 수집 가능한 자료를 확보·분석하고 현지 실체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다만, 인건비, 감가상각비 및 판매관리비 중 판매수수료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인건비 중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는 본인 외의 사람의 인건비의 평균단가를 적용하고, 본인 외의 사람의 인건비는 현실단가를 적용하되, 어업자가 직접 경영하여 본인 외의 자의 인건비가 없으면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포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임금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 어업에 대한 인건비는 투입된 노동시간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

(나) 감가상각비는 신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도록 계산해야 한다. 이 경우 어선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하되, 어선의 유지·관리 상태를 고려하여 이를 단축·축소할 수 있다.

선질별	내용연수(년)	잔존가치율(%)
강선		
강화플라스틱(FRP)	25	20
)선	20	10
목선	15	10

(다) 판매관리비 중 판매수수료는 해당 어선의 주된 양륙지 또는 어업장이 속한 지역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판수수료율을 적용한다.

(3) 생산관리비 중 소모품비와 감가상각비의 적용대상 구분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것은 감가상각비로, 1년 미만인 것은 소모품비로 한다.

(4) 수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종자 살포, 시설물의 철거 등 어업자의 의무사항은 어장면적 및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해야 한다.

(5) 산출된 경비가 일시적인 요인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변동폭이 1.5배 이상이 되어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인근 비슷한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같은 종류의 어업이 없는 경우에는 비슷한 어업) 2개 이상을 조사하여 평균치를 적용할 수 있다.

(6) 어업생산주기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수산종자 구입비, 사료비, 어장관리비 및 판매관리비 등 생산주기와 연계되는 경비항목에 대해서는 생산주기로 나누어 연간 평균 어업경비를 계산해야 한다. 이 경우 생산주기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관할 연구소와 협의해서 정한다.

나.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손실액 산출방법에서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이란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한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잔존가액은 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재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을 신청하지 않으면 손실액 산출에서 제외한다.

다.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손실액산출방법에서 "통상의 고정적 경비"란 어업의 정지기간 중 또는 어선의 계류기간 중에 해당 시설물 또는 어선·어구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방법 및 산출기준 등에 따른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에 대한 예외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실적이 없어 제1호 및 제2호의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방법 및 산출기준 등에 따라 어업별 손실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어업별 손실액은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신고에 든 인지세·등록세 등 모든 경비와 해당 어업의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매각이나 이전에 따른 손실액으로 한다.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4조제6호(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을 처분하여 어업실적이 없는 경우. 다만, 법 제8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태풍 피해 복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 등

가.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

- 1)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한 행정기관: 제52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로 어업별 손실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 2) 전문기관: 제52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로 어업별 손실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나. 전문기관에 의한 손실액의 산출 등

- 1) 행정관청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서류로 손실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피해의 범위와 정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손실액 산출을 위한 용역조사를 하게 한 후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에게 손실액의 평가를 의뢰하되,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보상액을 부담할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에게 용역조사 및 손실액 평가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손실액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신청이 없는 경우 등 용역조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에게 용역조사 및 손실액 평가를 함께 의뢰할 수 있다.
- 2) 1)에 따라 용역조사나 손실액 평가를 의뢰받은 자(이하 "조사평가자"라 한다)는 신뢰성 있는 어업경영에 관한 증거자료나 인근 같은 종류의 어업

의 생산실적 등을 조사하거나 평가하여 손실액을 계산해야 한다.

- 3) 조사·평가를 의뢰한 행정관청 또는 수익자는 손실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평가자에게 조사 또는 평가에 관련된 증거자료 및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평가자는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 4) 조사·평가를 의뢰한 행정관청 또는 수익자는 조사평가자의 조사 또는 평가 결과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조사 또는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면 해당 조사평가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다시 조사 또는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평가자의 조사 또는 평가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조사평가자에게 손실액의 조사 또는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다시 평가한 손실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 5) 1) 및 4)에 따른 용역조사 및 평가에 드는 경비는 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
- 6) 해양수산부장관은 1)에 따라 지정한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그 취소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손실액 산출을 위한 용역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조사를 한 경우
 - 나)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
- 7) 해양수산부장관은 1) 또는 6)에 따라 용역조사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8) 1) 및 4)에 따라 손실액 산출에 관한 조사 또는 평가를 의뢰받은 조사평가자나 조사평가를 의뢰한 수익자는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관청, 어선의 입항·출항 신고기관,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관련 서류의 열람·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9) 8)에 따라 조사평가자 또는 수익자가 행정관청에 서류의 열람·발급을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가) 의뢰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 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는 목적
 - 다)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는 내용
 - 라) 열람·발급이 필요한 서류 또는 공문서의 종류 및 수량
- 10) 1)부터 7)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용역조사 및 손실액 평가의 의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자가 처음 처분받은 날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해당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2. 개별기준

구분	업종별 또는 규모별		부과기준
근해어업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어업정지 1일: 20만원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어업정지 1일: 30만원
	동해구외끌이저인망어업 근해자망어업		어업정지 1일: 13만원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어업정지 1일: 30만원
	대형트롤어업		어업정지 1일: 36만원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총톤수 40톤 미만	어업정지 1일: 27만원
		총톤수 40톤 이상	어업정지 1일: 36만원
	대형선망어업	총톤수 100톤 미만	어업정지 1일: 52만원
		총톤수 100톤 이상	어업정지 1일: 75만원
	근해채낚기어업		어업정지 1일: 11만원

	잠수기어업		
	근해안강망어업		어업정지 1일: 21만원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어업정지 1일: 10만원
	기선권현망어업 (선단기준)	총톤수 200톤 미만	어업정지 1일: 34만원
		총톤수 200톤 이상	어업정지 1일: 37만원
	그 밖의 근해어업		어업정지 1일: 10만원
연안어업	모든 연안어업		어업정지 1일: 6만원
구획어업	모든 구획어업		어업정지 1일: 6만원
신고어업	모든 신고어업		어업정지 1일: 1만원
어획물 운반업	총톤수 70톤 이상		어획물운반업정지 1일: 20만원
	총톤수 50톤 이상 70톤 미만		어획물운반업정지 1일: 15만원
	총톤수 10톤 이상 50톤 미만		어획물운반업정지 1일: 10만원
	총톤수 10톤 미만		어획물운반업정지 1일: 5만원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서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서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2조 제3항제1호	60	90	120

나.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112조 제3항제2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60		
2)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80		
3)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00		
다. 법 제30조제1항(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해서 그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해서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둔 경우	법 제112조 제1항제1호	150	250	500
라. 어업권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어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2조 제4항제1호	30	50	70
마. 어업권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않고 어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경우와 그 특정인이 어업권을 행사한 경우	법 제112조 제3항제3호	60	90	120
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2조 제3항제4호	60	90	120
사. 법 제38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경우와 어업권자가 그 위반행위를 도운 경우	법 제112조 제3항제5호	60	90	120
아. 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해서 입어를 허용하지 않거나 입어의 제한·정지 또는 금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2조 제3항제6호	60	90	120

자.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승계 받은 날 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 다)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90일 이내에 어업허가 어선의 기준 및 어업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 우	법 제112조 제1항제2호	250	350	500
차.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112조 제3항제7호	60	90	120
카. 신고어업자가 법 제48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2조 제3항제8호	60	90	120
타. 법 제49조제1항(법 제54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어선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법 제112조 제3항제9호	70	100	150
파.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 지 않은 경우. 다만, 「어선법」 제17조 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법 제112조 제4항제2호	30	50	70
하. 법 제49조제3항(법 제54조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업신고 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2조 제1항제3호			
1)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어업허 가를 받은 경우		200		
2)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 신고를 한 경우		150		
거.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54조에서 준 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112조 제4항제3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 업을 경영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 우		30		
2)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		40		

업을 경영한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업을 경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50		
너.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않고 유어장을 운영한 경우	법 제112조 제1항제4호	150	250	500
더. 법 제65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해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2조 제4항제4호	50	70	100
러. 법 제66조를 위반해서 어장이나 어구에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어장·어선 및 어구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법 제112조 제4항제5호	50	70	100
머.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법 제112조 제3항제10호	70	100	150
버.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와 장애물의 이전·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112조 제3항제11호	70	100	150
서. 법 제96조제5항에 따른 질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법 제112조 제4항제10호	50	70	100
어.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12조 제4항제11호	30	50	70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

(앞쪽)

어업감독 공무원증 (KOREA FISHERY OFFICER)

사 진

3cm × 4cm

(모자를 쓰지 않은 상
반신으로 뒤 그림 없
이 6개월 이내에 촬영
한 것)

홍길동(한자)
HONG, G. D.

해양수산부
시·도
시·군·구

55mm × 85mm [백상지 150g/㎡]

(뒤쪽)

어업감독 공무원증(○○혈액형)

번호:

소속:

직명: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
른 어업감독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519